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22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broadcasting production)

윤성옥/권영성/이영희/송종현/천명재/최은경/진승현/김태경/김다예

2020. 12.

연구기관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윤성옥(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참여연구원: 권영성(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영희(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송종현(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천명재(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서비스팀 책임)

최은경(전남과학대학교 e스포츠과 교수)

보조연구원: 진승현(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보조원: 김태경(경기대 전자출판학 석사)

김다예(경기대 한류문화대학원 석사과정)

목 차

요약문	vi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목적	2
제 2 절 연구내용과 방법	3
1. 연구내용과 범위	3
2. 연구방법	5
제 2 장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제작 환경 실태 분석	8
제 1 절 방송 제작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근로(용역제공) 환경	8
1. 선행 연구 분석	8
2. 국내 방송사업자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17
3. 국내 방송사업자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의 취약요소	21
제 2 절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 보호 실태 및 인식 조사	27
1. 조사 대상 및 델파이 조사 방식	27
2. 델파이 조사 1차 분석 결과	31
3. 델파이 조사 2차 분석 결과	64
4. 소결: 방송 제작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 침해의 문제점	85
제 3 장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 분석	49
제 1 절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 범위	94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	94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96
3. 근로기준법과 아동·청소년 보호	96
4.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97
5. 아동복지법	97
6. 청소년기본법	97
7. 청소년보호법	98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의 아동·청소년 보호	98
제2 절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의 주요 내용	100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100
2. 근로기준법과 아동·청소년 보호	104
3. 방송법과 아동·청소년 보호	105
제3 절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지침	109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등 지침	109
2.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115
제 4 절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 현황과 특징	116
1.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제작 가이드라인	116
2.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제작 가이드라인	121
제4 장 해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현황	1
제1 절 미국의 아동·청소년의 출연자 권익 보호 현황	131
1. 미국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법	131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노동조합 가이드라인	159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 사례	167
4. 시사점	170
제2 절 영국의 아동·청소년의 출연자 권익 보호 현황	175
1.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175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타율·자율 규제	185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 사례	202

4. 시사점	204
제3절 일본의 아동·청소년의 출연자 권익보호 현황	209
1.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법적규제	209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218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 사례	230
4. 시사점	235
제5장 결론	238
제1절 연구 결과와 주요함의	238
1.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환경 실태조사	238
2.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 분석	241
3. 해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현황과 특징	245
제2절 정책적 제언	254
1.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	254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257
참고문헌	279
부 록	286

표 목 차

<표 1-1> 연구체계도	6
<표 2-1>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보장에 관한 기존 연구	8
<표 2-2>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 관련 가이드라인의 요소들	21
<표 2-3>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기준 제안	15
<표 2-4> 국내 방송사업자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항목 유무	91
<표 2-5> 국내 방송사업자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항목별 개수	22
<표 2-6> 선행연구에서의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필요 조항	32
<표 2-7> 선행연구에서의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필요 조항	42
<표 2-8> 방송사업자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항목	52
<표 2-9> 인터뷰 조사 대상	72
<표 2-10> 델파이 조사 1차 질문지 구성 내용	03
<표 2-11> 항목별 중요도 표시 예시	46
<표 2-12>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56
<표 2-13> 아동·청소년 출연하는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의견	07
<표 2-14>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67
<표 2-1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58
<표 2-16>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동의수준 및 중요도 평균 상위 의견	88
<표 3-1>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의 정의와 범위(제2조)	5 9
<표 3-2> 주요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	99
<표 3-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청소년 용역제공 시간(제22조~제23조)	401
<표 3-4> 방송에 관한 심의 규정에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108
<표 3-5>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의 청소년 및 여성 인권보호 조항	1
<표 3-6>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의 금지행위	1
<표 3-7> 연령대별 근로시간 권장사항	3

<표 4-1> 주별 아동·청소년 출연자 노동 관련 조항 현황표	132
<표 4-2> 주별 아동·청소년 출연자 노동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135
<표 4-3>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출연 허가 관련 의무사항 ·	140
<표 4-4>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별 근로시간 관련 법	142
<표 4-5>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 보장권	152
<표 4-6>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성 보호법	154
<표 4-7>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기타 보장법	157
<표 4-8>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가이드라인	167
<표 4-9> 공장법의 전개와 주요 내용(아동·청소년 노동 관련 법안 중심)	16
<표 4-10>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타율·자율 규제	182
<표 4-11> BBC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 목차 구성	581
<표 4-12> BBC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Work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the BBC)> 보고서의 체크리스트	9
<표 4-13> 온라인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상호작용 지도 목차	9
<표 4-14> 노동기준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노동 가능 범위	208
<표 4-15> 청소년위원회의 견해·제언·성명	230

그림 목 차

[그림 4-1] BBC의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 업무 절차 흐름	41
--	----

요 약 문

1. 제 목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

2. 연구배경

그 동안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부족했다. 특히 미디어 분야의 방송 정책 연구 가운데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논의는 ‘시청자’로서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출연자’ 또는 ‘용역제공자’로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한 조건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손쉽게 권익 침해가 발생해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국내에서는 주요 방송사조차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내부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아동·청소년 출연자 제작환경 실태 분석

본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방송 제작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이 어떤 과

정을 통하여 어떻게 침해되고 있으며, 제작의 구조적 행태와 제작관행상 용인되고 있는 인권 침해적 문제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 법령 및 제도 분석

본 분석에서는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과 관련된 법령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제작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현재 방송제작 실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의 항목들과 범주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제시할 예정이다.

3) 해외의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보호 현황과 제도 분석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의 근래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하고자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제작 경험이 비교적 오랫동안 축적되어 관련 법제도에 나름의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인권보호가 강력히 보장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성과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다.

해외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주요 방송사업자의 제작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차용할 가능한 항목과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4)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가이드라인(안) 도출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제작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과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안)도 도출한다.

4. 연구 결과

1)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환경 실태 조사

①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침해의 문제점
첫째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해야하는 제작자와 보호자, 출연자 당사자들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이 아동프로그램 출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으며, 다섯째는 제작비 문제로 인해 여러 날 촬영이 불가능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불가피 장시간 대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야간 촬영이나 안전조치 미비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②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장을 위한 개선점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첫 번째 개선점은 제작진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프로그램기획부터 송출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량영역을 지나치게 넓히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방송사가 범죄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을 인터뷰하는 경우, 화면 모자이크나 오디오 변조 등 신변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다섯째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온라인 악성 댓글 피해를 예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있는 법적 의무 사항과 윤리적 지침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일곱째는 선언적인 것이 아닌,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덟째는 실무에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최신 사례집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홉째는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열째는 연예기획사들도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수칙과 에이전시 대상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열한째는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환경 실태 조사에 대한 최종결론을 요약하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기초로, 방송 제작 현장 실무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장 교육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한 제작비 추가 지원 등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주요 법률과 특징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된 법률 현황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된 법률은 세 가지로 나눠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대중문화 예술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셋째 근로기준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도 있다. 넷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다. 다섯째 미디어 관련 법률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률에서 정작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연령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 특징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보호, 근로자로서 보호, 미디어 관련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비교적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처럼 강하게 적용하기에는 선언적 문구가 많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강한 규범력을 갖지만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미디어법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된 조항이 대단히 빈약하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결국 여러 법률에 걸쳐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조항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느 법률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습생의 불공정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노력은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 모범거래기준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특수성에 기반한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는데 방송출연료, 촬영시간, 휴식시설, 미성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 기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④ 방송사들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가이드라인

방송사들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책무가 더 강조되는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이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조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종편채널이 공영방송보다 형식과 체계를 더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용어도 아동과 어린이가 혼용되거나 유아의 개념이 없거나 유아, 아동, 청소년 연령이 방송사마다 다르거나 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셋째 방송사마다 편차가 대단히 크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잘 갖추고 있는 방송사와 거의 관련 내용이 없는 방송사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방송사 가이드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이 최소한 보장받는 법적 내용마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규칙, 지침 등의 내용조차 제작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3) 해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현황과 특징

① 미국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특징

미국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50개 주의 아동·청소년 관련 노동규정이 각각 다르며, 주별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특징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고용할 때, 고용주와 아동·청소년 고용인 당사자들에게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모든 주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각 주의 노동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보호되고, 주의 노동법이 약한 경우엔 배우 노조에 의해 이차적으로 보호된다. 셋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모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 소득의 15%를 신탁 계정에 적립해야 하고, 부모가 신탁 계정을 만들지 못한다면, 미국 배우 펀드(AFA)에 예치해야 한다. 넷째, 주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관련 노동 규제가 없거나 제정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가이드라인이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무 환경이 안전한지, 근무 조건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이 무시되거나 방해받는지 여부 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계약부터 교육, 감독, 근무 시간, 의료 및 안전 등의 조항도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몇몇 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방송 촬영 시, 정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허가받은 스튜디오 교원(Studio teacher)의 고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여섯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보호 관찰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제작현장에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며 보호자는 행동을 관찰하고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생후 15일~ 6주면, 3명 이하의 출연자당 1명의 간호사가, 아동이 생후 6주~ 6개월이면 10명 이하의 출연자당 1명의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제작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밖에 아동 출연자를 위한 휴식과 레크레이션 조항도 있으며, 촬영장 내 조명 강도에 대한 규정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은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② 영국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특징

영국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일반법 형태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연예오락 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의 지도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규제를 크게 타율규제와 자율규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먼저 타율규제를 대표하는 오프콤의 규제는 ‘18세 이하 보호’규정과 제작 지침이 있다.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이 방송프로 그램에 출연할 때에는 출연자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와 품위를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의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이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걱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제한시청시간대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출연자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마약, 흡연, 용제, 알코올, 폭력, 공격적 언어, 성적인 부분, 나체, 엑소시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 18세 미만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복지와 존엄성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과 프로그램 참여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 마지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대상 청중과 참가자 모두의 연령대에 적합해야한다는 조항만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자율규제인 공영방송 BBC의 관련 규정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방송 방송사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BBC의 아동 보호 정책의 핵심은 첫째, BBC는 오프콤의 <방송규정>과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에 참여하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작 정책은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둘째, 아동이 유해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BBC는 <아동보호 및 보호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자는 강력한 조치와 위험 상황 조치와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합의되어야 하며, 기록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상황은 직접 목격했거나 듣게 된 경우 사실 인지가 있었는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지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혹과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넷째, 아동을 직접 상대하는 누구라도 우려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아동 보호팀에게 직접 또는 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 그루밍 또는 아동과 관련된 온라인 보호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BBC 아동 보호 책임자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영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타율과 자율규제 특

정을 정리하면, 첫째 규제의 대상은 분명하고 방향은 포괄적이다. 제작현장 및 관련한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방송에서, 방송에 의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를 위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자율과 타율규제 모두 느슨하게 접근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BBC 모두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규제의 경우엔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일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특징

일본의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과 방송업계 및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적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규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일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은 방송법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아니라 노동기준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동기준법은 한국과 같이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최저 연령, 노동계약 체결 및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표현자’로 취급하는 “예능 텔런트 통달”을 공표하여 노동기준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극계에서는 공연의 완성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송업계와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업계의 아동·청소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등 소극적·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정책적 제언

1)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

첫째 가이드라인에 최소한 산재해 있는 법률 속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조항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 보호 내용을 제작진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방송사마다 편의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반드시 프로그램 제작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예기획사, 독립제작사, 보호자, 성인 출연자 등 공동의 책무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을 위한 사전조치(캐스팅과 사전동의) - 제작과정 - 제작 후 등 시차적 흐름에 맞게 마련한다.

넷째 가이드라인에서 연령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방송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등의 대상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써 현장에서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동, 청소년 등 연령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제작촬영 전 사전조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근로관련 준수사항, 사전설명과 동의, 계약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는다. 출연에 앞서 사전동의나 설명의 의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근로관련이나 보수 지급은 해외사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인식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근로기준, 보수 등을 제시한다.

여섯째 제작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작·촬영시간 제한, 인권보호,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이다. 관련 법규와 방송사들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일곱째 아동·청소년 출연은 극 출연과 인터뷰 출연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제작진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특수성이 있다. 극 출연의 경우 범죄 장면 등 부적절한 장면 묘사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상황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뷰 출연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출연 이후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인 제작진들의 신중하고도 전문

제9조(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제10조(성관련 보호 등),
제11조(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제12조(재연이나 극 출연)
제13조(인터뷰출연)	제14조(방청)
제15조(사생활보호 등)	제16조(안전과 보호)
제17조(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

제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그 동안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부족했다. 특히 미디어 분야의 방송 정책 연구 가운데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논의는 ‘시청자’로서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출연자’ 또는 ‘용역제공자’로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보호에 관한 논의는 학술적 연구와 유관 기관 정책 연구 모두에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이 주제를 연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미디어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한 조건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손쉽게 권익 침해가 발생해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데는 제도적인 규정의 미비와 제작의 구조적 행태 및 제작 관행의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촬영제작시간, 성보호, 인권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주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거나 선언적, 추상적 문구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적 근거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국내에서는 주요 방송사조차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내부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목적

첫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비전문기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들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 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국내 법제 분석을 시도한다.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 관련 법령(‘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과 정책적 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법제도에서의 한계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개정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들의 제작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의 범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셋째 해외의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제작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아동 인권보호가 강화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미국, 영국, 일본)를 살펴보고, 각국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과 주요 방송사업자의 제작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차용할 가능한 항목과 내용이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기에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와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이것이 반영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의 기

준은 관련 법제도와 더불어, 방송사 제작진이 자율적 지침으로서 스스로 지키고 있는 제작 가이드라인에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각 방송사업자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핵심내용이 제시된 「방송출연 아동 제작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체 제작가이드라인에 핵심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과 범위

1) 아동·청소년 출연자 제작환경 실태 분석

기존 연구들의 검토 결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 이용자로서의 청소년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방송 제작환경에 노출되는 ‘출연자’나 ‘용역제공자’로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출연자로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을 고찰한 소수의 연구들도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을 조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내용분석과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인터뷰로 문제점을 추론해내는데 그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방송 제작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침해되고 있으며, 제작의 구조적 행태와 제작관행상 반강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인권 침해적 문제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 법령 및 제도 분석

기존 연구는 법학 또는 행정학 전공자 등이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 법령을 분석한 바 있으나, 관련 법령들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특정 범조항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과 관련된 법령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제작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현재 방송제작 실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의 항목들과 범주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사 가이드라인을 전수 분석하여 한계점을 찾아낸다는 측면은 기존 연구와 크게 차별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3) 해외의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보호 현황과 제도 분석

선행 연구들의 검토 결과, 상대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시행한 조사는 해외의 사례조사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축적해놓은 해외 관련 법제도 연구에 더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근래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하고자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제작 경험이 비교적 오랫동안 축적되어 관련 법제도에 나름의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으며, 아동의 인권보호가 강력히 보장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성과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해외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주요 방송사업자의 제작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차용할 가능한 항목과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4)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가이드라인(안) 도출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방송출연 아동 제작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과 핵심내용이 각 방송사업자의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에 추가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권익증진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에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1)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문제에 대한 실증조사

그 동안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론적,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전문가 집단 대상의 의견조사가 일부 시행된 바 있으나 실제 당사자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나 학부모,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자 등을 집단별로 나눠 실제 제작 환경이 어떠한지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처한 환경과 권익 보호 실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 보호자, 제작자 등 관련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룸으로써 향후 가이드라인의 실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분야로 특화된 법제 분석

기존의 연구들은 법적 접근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유형과 범주를 특화하여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관찰예능과 같은 독특한 형태로 출연하는 경우(아동이 출연이나 연기를 직접 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이돌 그룹과 같이 본격적으로 음악활동을 하는 경우, 드라마와 같은 연기활동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남.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포괄하고 분야를 특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특징을 반영하여 국내 법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 성격, 근로 시간, 보호자 의무, 성관련,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연구의 의미가 클 것이다.

4)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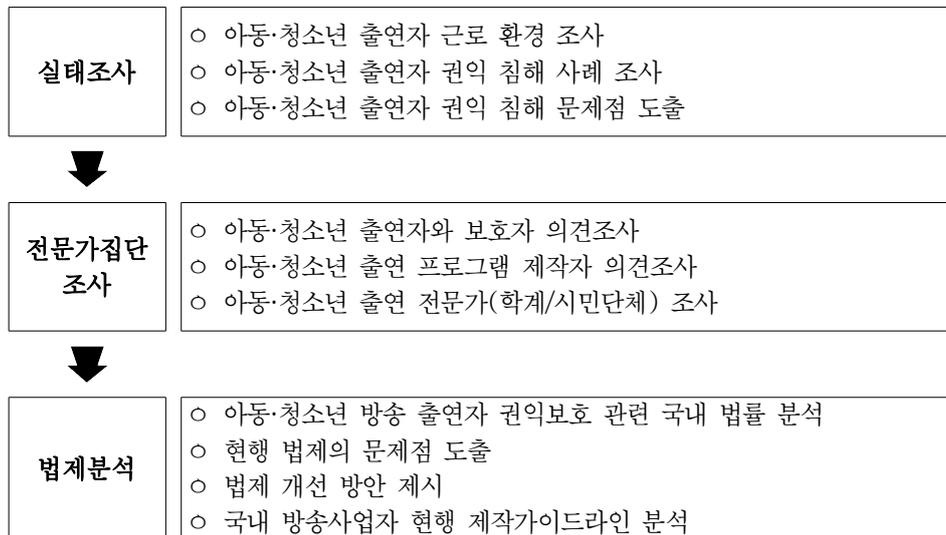
기존의 해외 연구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동향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의 체계,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유사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함의는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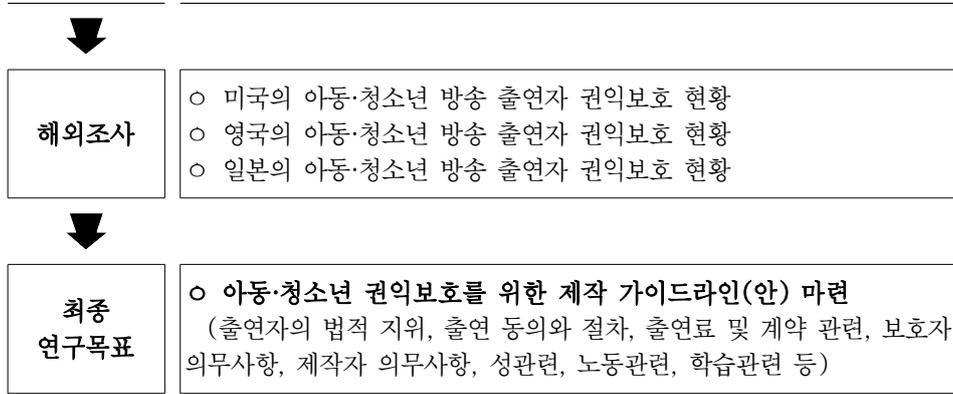
제3절 연구체계와 기대효과

1. 연구체계도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의 체계도는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체계도





2. 기대효과

주체	기대효과
산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증진 ○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의 제작 절차와 과정 표준화 ○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 실무자 교육자료로 활용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산업적 효과 ○ 방송사 공적 책무 수행
시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 제고 ○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다양성 증대 ○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증진에 따른 시청환경 개선 효과
규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권익침해 해소 ○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유도 ○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정책 수립

제 2 장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제작환경 실태 분석

제 1 절 방송 제작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근로(용역제공) 환경

1. 선행연구 분석

현재까지 미디어 분야의 방송 정책 연구 가운데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논의는 ‘시청자’로서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출연자’ 또는 ‘용역제공자’로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연구는 누적된 자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에 관한 논의는 학술적 연구와 유관 기관 정책 연구 모두에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이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미디어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사된 관련한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의 <표 2-1>과 같다.

<표 2-1>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 보장에 관한 기존 연구

년도	저자	제목	형태
2007	김현식·양정호	방송 출연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인권, 노동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행정학)
2009	이영주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규정 방안	학술세미나 발표문
2015	김정섭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미디어학)
2015	남기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학술논문(법학)

2015	박석철	미국의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 법제 뉴욕주 노동법 중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법제를 중심으로	학술잡지 (방송통신심의 동향)
2015	곽현자	영국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규정 및 심의사례	상동
2015	심영섭	독일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와 현황	상동
2015	송영주	프랑스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법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상동
2015	김경환	일본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기준 및 심의사례	상동
2016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출연 TV 프로그램 내용분석	연구보고서
2016b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V 프로그램 출연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8	최영진	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과제	학술논문(법학)

<표 2-1>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 가운데, 법적인 측면에서 방송미디어 분야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문제점을 짚은 문헌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김현식·양정호(2007)은 행정학 분야에서 조명한 방송 출연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이다. 저자는 어린이 출연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한 조건이나 관계들을 용인하고 때로는 착취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도 수용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제도적인 규정의 미비와 제작의 구조적 행태 및 제작 관행의 문제를 지목하였으며, 법제상의 노동자 개념의 폭을 넓히고 이를 아동에게도 폭넓게 적용하여 방송 출연 아동의 교육적, 인권적, 노동법적 차원에서 권리보장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현재의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 출연 방송 프로그램의 사례를 관련자 인터뷰 등의 현장 분석이 아닌 시청자 입장에서 조사하였으며, 방송 제작자들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차원의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김정섭(2015)은 아역 배우나 가수를 망라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내의 첫 법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 7. 29 시행)과 해외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규(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국 청소년 예술인(연기자) 보호조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 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 장면의 사례, 수면권·건강권·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기연(2015)은 법학의 관점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각 조항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고찰한 후,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인권침해 실태 및 현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영진(2018)은 법학자로서 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과제를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와 국제 규범 및 해외 입법례(일본, 독일, 프랑스)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법리적 논거에 대하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0대 연소자 아르바이트 증가의 문제 등을 함께 다루고 있어,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에 온전히 관점을 두고 있는 연구가 아니며, 관련 법 규정의 개정 또는 독자적인 법령(청소년근로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 가운데에는 해외현황 조사에 초점을 둔 경우도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5년에 발간한 ‘방송통신심의동향’에는 미국(박석철), 영국(곽현자), 독일(심영섭), 프랑스(송영주), 일본(김경환)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와 현황 등이 소개되어 있다. 각 기고글은 각국의 대표적 관련 규정과 제도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되었다. 해당 자료들은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충

분히 인용될 수 있으나, 각 조사들은 해외 사례만을 제시한 것이 한계점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첫째로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영주(2009)의 연구는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들을 EU, 미국 등의 사례와 해외 방송사 가이드라인을 통한 어린이 보호 정책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가이드라인, 미디어의 아동 윤리, 규제나 심의기관의 규제 조항들을 위한 선행조건들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조항들에 대한 충분한 미디어 토론의 선행’,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사례연구와 프로그램 분석’,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자 및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인터뷰 등의 조사’, ‘방송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조항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규제는 공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부, 방송사와 시민사회 등의 여러 주체들 사이에 풍부한 토론과 자문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사례연구와 프로그램 분석 결과가 축적되어야 하는 이유는 방송 제작자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프로그램의 각 사례에 대한 풍부한 분석과 그 결과들을 기초로 폭넓은 토론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자 및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인터뷰 등의 조사가 축적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은 제작자만의 시선과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없고,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침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를 축적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 영역의 제작자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출연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위해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영주, 2009, 40쪽).

상기의 네 가지 선행조건들은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 생각된다. 이영주(2009)는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만족되었다는 가정하에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한 요소들은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2>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 관련 가이드라인의 요소들

항목	내용
(1) 노동시간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노동시간의 제한과 관련된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령대별,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의 특성이나 장르 특성 등의 요소들을 감안해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2) 건강과 안전의 보호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제작 현장과 제작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3) 부모/보호자 동반	어떤 시간, 어떤 과정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택적으로 필요한지를 서술해야 한다.
(4)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의 제공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출연/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형식, 기획 의도, 제작 과정, 내용, 출연 후 발생가능한 사건 등에 대해 풍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의견불일치 시 제작자-보호자-출연자 간의 의견조정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의견조정 방법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6) 출연 승낙과 계약에 관한 조항	전문적인 직업 배우/모델/출연자로 활동하게 될 경우 출연자의 소속 학교측으로부터 출연 및 계약에 관한 동의서를 받거나 기타 다른 동의서에 대한 조항들을 삽입해야 한다.
(7) 프라이버시의 보호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 외에 출연자의 프라이버시를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어린이와 가족 관련 법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 및 가족 관련 법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 방송 제작 영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들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노동관련 조항이나 계약 관련법도 포함된다.
(9) 전문 배우/모델 출연에 관한 라이선스 여부	외국의 경우 직업적인 전문 배우로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 지역 교육청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하고 실현가능한 방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10) 촬영, 녹화, 녹음 및 기록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사전제시 및 출연자/보호자와의 합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나 부모/보호자의 동의없이 촬영, 녹화, 녹음, 기록되고 이것이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가 어떻게 묘사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하지 말아야 할 재현의 요소들	재현의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재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재현의 요소들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욕설이나 폭력, 약물이나 범죄, 누드나 과도한 노출,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을 담고있는 표현의 금지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야 할 재현의 요소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12) 출연하지 않아야 하는 광고물 규정	광고 출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되, 다만 아동·청소년들이 출연해서는 안 되는 광고물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출, 패스트푸드, 성기구, 알코올 광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13) 프로그램 특성별 기본 조항들의 구분	가이드라인 세부 실행코드화 : 뉴스/시사, 다큐멘터리, 드라마, 리얼리티, 토크 쇼 등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제작 가이드라인세부 실행코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장르별, 프로그램 특성별 사례 분석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각 프로그램 장르에 맞는 세부 실행코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14) 전문 배우와 일반 출연자의 별도 조항들	방송사의 제작 코드나 가이드라인 및 규제기구의 보호 조항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직업적인 전문 출연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비직업적인 출연자의 경우 방송사나 제작사에 의해 다소 느슨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일반 출연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별도로 구분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영주, 2009, 40-42쪽.

이처럼 이영주(2009)는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나열한 선행조건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데 멈춘 연구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a)는 어린이·청소년 출연 TV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분석하면서 해외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문가(미디어운동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의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출연 TV 프로그램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함께 제작 과정 상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시, 어린이·청소년의 학습권이나 수면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방송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시한 방안 중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방안은 ‘심의 규정 세분화’¹⁾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재고 필요’²⁾ 그리고 ‘제작

1) 심의규정 세분화의 내용은 ① 어린이·청소년이 방송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른 심의규정 적용 ② TV 프로그램의 형식적인 요소와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맥락적 정

가이드라인의 전문화³⁾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a)의 결론에서 진단한 아동·청소년 출연자 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것은 미디어 생산자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다양한 미디어 창구를 통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기에 어린이·청소년 보호도 미디어 생산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하며,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미디어 생산자의 역할 및 윤리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b)는 미국과 영국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규제 현황과 국내의 관련 규정을 차례로 살핀 후, 국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출연자 보호 규정의 한계와 방송 출연 어린이·청소년보호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가운데, 제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첫째 ‘동의’와 관련한 것이다. 영국 등과 달리 국내의 「방송심의규정」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관련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청소년이 ‘피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다큐멘터리인지, 관찰예능 프로그램인지,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인지 등) 및 특성, 어린이·청소년의 특성(연령 등), 출연의 범위(고정 출연자인지 일회 출연자인지 등)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보호자 동의 관련 보호자의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출연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셋째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배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언급을 규정

당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규정 제정 ③가이드라인을 법제화와 제작현장에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가 투입 ④ 심의규정 대전제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명시이다.

- 2)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재고는 학습권, 기본적 통신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상품화가 제한되는 측면에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3) 제작가이드라인의 전문화는 현재 존재하는 표준약관과 방송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호비교한 후 보완해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나 가이드라인에 포함함으로써 제작진과 출연자 모두의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의 아동 관련 노동법제 등을 참고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 시간 등을 제한하고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b, 81-84쪽).

이 보고서는 상기한 문제점 등을 지적한 후,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으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기준을 일반원칙과 세부기준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2-3>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기준 제안

항 목	내 용
1) 일반원칙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익을 성인의 권익과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한다.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세부 기준	어린이와 청소년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촬영 단계에서만 아니라 촬영 후 자막이나 음향 효과, 편집 등을 통해 부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방송사는 촬영 기간 내내 어린이·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작 준비 단계는 물론 촬영 과정 전반에 전문가 자문 또는 전문가의 직접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에 관해 어린이·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전동의를 얻을 때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 및 촬영 과정,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이 나간 후에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린이·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그들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가 출연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출연이 적절한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에게 지나치게 선정적인 퍼포먼스나 과도한 노출과 행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어린이에게 ‘과제’ 수행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해당 과제의 성격이 출연 어린이·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p>어린이·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어른을 흉내 낸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정서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출연자가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자막 등을 통해 제시할 때는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p> <p>가능하다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최종 편집본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종 편집본이 제작 준비 단계에서 동의한 내용과 상당히 달라진 경우는 반드시 방송 전 확인 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p>
--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b, 91-92쪽)

이 보고서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안)은 ‘아동인권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등을 참고하였다고 하였으나 위의 내용은 현재 방송사들이 구비한 제작 가이드라인과 흡사하게 선언적인 문구가 적지 않으며, 근로시간이나 휴식 규정 등을 간과한 측면이 아쉽다고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의 검토 결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 이용자로서의 청소년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방송 제작환경에 노출되는 ‘출연자’나 ‘용역제공자’로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출연자로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을 고찰한 소수의 연구들도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을 조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내용분석과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인터뷰로 문제점을 추론해내는데 그치고 있다.

2. 국내 방송사업자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과거 아동 연예인은 성인 주인공의 어린 시절, 가족 드라마의 주변인 등 주로 감초 역할에만 머물렀고, 성인예능인이 장악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존재였으나, 현재 아동·청소년은 성인배우 못지않은 연기력, 예쁜 외모, 천진난만한 귀여움, 뛰어난 가창력, 재치 있는 입담 등으로 성인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아동 연예인의 국제적인 스타화 현상은 아동들의 연예산업 진출 현상을 증폭시켰으며, 아동연예인이 중흥무진 활약하는 모습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치면서 아동연예인의 활동 영역이나 수요는 물론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아동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아역 연기자,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이유주, 2016.06.30.).

방송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이들의 인권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실제로 어른 못지않은 장시간의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권 침해의 경우들도 지적되고 있다(노도현, 2020.01.04.).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아역 연예인과 일반인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 과도한 노동이 부여되면서 학습권, 성장권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촬영 일정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로 나타난 바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a).

이러한 실태는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9년 진행된 조사에서 6세 이상 드라마 촬영 경험이 있는 103명에게 노동실태를 묻은 결과, 대기시간을 포함한 1일 최장 촬영시간이 12시간 이상이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63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했으며, 응답자 69%(70명)은 ‘야간 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70%는 ‘촬영 기간 동안 평균 수면 시간이 부족했다’고 털어냈고, 대기 장소와 휴식 공간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욕설’을 경험했던 응답자도 18%나 차지했으며, ‘외모 지적이나 다이어트 성형 강요’를 받은 적이 있었던 아동·청소년 출연자도 약 3%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예람, 2020.01.13.).

더욱이 근래에는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의 제작과정 중 폭력적 장면과 성희롱 장면이 노출되는 등 사건이 발생되었다.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의 방송 활동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면권, 휴식권, 학습권 등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지금까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강성원, 2019.12.18.; 노도현, 2020.01.04. 외).

무엇보다 관련한 제도적 규정이 미비하며, 방송 제작의 구조적 행태와 제작관행상 아동과 성인을 같은 제작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기에, 상기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범죄 보도 프로그램 등에서의 청소년 피의자 등의 신원보호에 관한 규정 등 아동 출연자와 관련해 선정성, 범죄 등에 대한 내용은 정비되어 있으나, 노동·휴식시간 등 노동권에 대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은 15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과 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의 권익 보호 범위가 협소하며 다소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와 규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 조항을 추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내 방송사들은 제작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하고 준칙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권익 보호 조항은 대다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시간 및 정신적·신체적 안전, 인격존중 등 출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권보호의 세밀한 기준의 마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방송사 9개 채널(지상파 4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하여 항목을 나누어보면 아래의 <표 2-4>와 같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⁴⁾

<표 2-4> 국내 방송사업자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항목 유무

(2020년 2월 기준)

항목	방송사									
		A	B	C	D	E	F	G	H	I
1	기본 규칙(개요)	○		○	○	○		○	○	○
2	출연 일반규칙		○	○	○	○	○	○	○	
3	근로시간 규정					○				○
4	휴식 규정					○				
5	보호자 동의	○		○	○	○				
6	학습권 보장	○			○	○				
7	범죄 등 신원 노출 유의	○			○	○		○		
8	개인 정보 보호	○			○			○		
9	취재·인터뷰 규칙	○	○		○	○		○	○	
10	안전 규칙	○		○	○	○				
11	프로그램성격 사전 설명	○		○	○	○				
12	성보호 (신체접촉 금지등)			○		○				
13	욕설, 비속어 등 금지			○		○				
14	전문가 공조					○				
15	방송 내용 관련	○	○		○	○		○	○	

4) 본 연구가 진행된 후, KBS는 2020년 9월에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4차로 개정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권익 보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JTBC는 2020년 4월 29일에 아동·청소년제작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은 각 방송사 제작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가 시작된 2020년 초반의 방송사 가이드라인 항목들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에 대한 본 연구가 시작된 이후 작성된 KBS의 4차 가이드라인과 JTBC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3장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항목	방송사								
		A	B	C	D	E	F	G	H	I
16	편성 시간				○	○				
17	등급 기준				○	○				
18	광고 제한					○				
19	제재 조치								○	

3. 국내 방송사업자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의 취약요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주요 방송사업자 9곳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거론된 항목들을 모두 나열하면 총 19개이다.

이 중에서 6곳 이상의 방송사업자가 마련해놓은 항목은 ‘기본규칙(개요)’, ‘출연 일반규칙’, ‘취재·인터뷰 규칙’, ‘방송 내용 관련’으로 4개이다(<표 2-5> 참고). ‘기본규칙’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라기 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출연 일반 규정’은 아동·청소년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 경우, 제작자의 입장에서 매우 기초적으로 유념해야할 내용들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에 근거하여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안 된다.’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재·인터뷰 규칙’ 역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5조의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이 조항의 범주 내에서 가이드 지침을 만든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방송 내용 관련’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진행되며 지켜져야 할 아동·청소년의 권익 측면의 지침이 아니라,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보호 시간대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위나 묘사에 대한 주의점이 나열되어 있다. 이 부분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사안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들은 방송 심의과정에서 지적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깊이 있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3~4곳의 방송사업자가 구비한 항목은 ‘보호자 동의’, ‘학습권보장’, ‘범죄 등 신원노출 유의’, ‘개인 정보 보호’, ‘안전 규칙’, ‘프로그램 성격 사전 설명’으로 총 6개이다.

‘보호자 동의’와 ‘학습권 보장’의 내용이 하나의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2건이었으며, 별도로 ‘미성년자 출연자의 근로권 및 학습권 보호’로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1건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불가피 학교 수업과 촬영 시간이 겹치는 경우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두 동일하였다. 그런데, ‘학습권 보장’이 과연 학교의 동의절차로서 충족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표 2-5> 국내 방송사업자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항목별 개수

(2020년 2월 기준)

	항목 \ 방송사	방송사수
1	기본규칙(개요)	7
2	출연 일반규칙	7
3	취재·인터뷰 규칙	6
4	방송 내용 관련	6
5	보호자 동의	4
6	학습권 보장	3
7	범죄 등 신원 노출 유의	4
8	개인 정보 보호	3
9	안전 규칙	4
10	프로그램 성격 사전 설명	4
11	근로시간규정	2
12	휴식 규정	1
13	성보호(신체접촉 금지 등)	2
14	욕설, 비속어 등 금지	2
15	전문가 공조	1
16	편성 시간	2
17	등급 기준	2
18	광고 제한	1
19	체재 조치	1

다음으로 ‘범죄 등 신원노출 유의’, ‘개인 정보 보호’는 하나의 규정 안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범죄 등 신원 노출 유의’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일반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서, ‘안전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4개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린이 출연자의 안전 전문제에 각별히 유의해야하며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1개, 인솔자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규정은 3개였다.

‘프로그램 성격 사전 설명’의 경우 역시 별도의 항목으로 구비되어 있기도 했으나 학습권 보장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의 내용과 묶여 있는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지 1~2개의 방송사업자만이 마련하고 있는 조항은 <표 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9개 항목으로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규정’, ‘휴식 규정’, ‘성보호(신체접촉 금지 등)’, ‘욕설, 비속어 등 금지’, ‘전문가 공조’, ‘편성 시간’, ‘등급 기준’, ‘광고 제한’, ‘제재 조치’인데, 이 가운데 특히 ‘근로시간규정’, ‘휴식 규정’, ‘성보호’, ‘욕설, 비속어 등 금지’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갖춘 방송사업자는 9곳 가운데 한두 군데만이 해당한다. 이는 그만큼 현재 대다수의 방송사업자가 마련해놓은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의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대다수 방송사업자가 간과했던 9개의 항목 가운데, 기존 문헌에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항목은 ‘근로시간 규정’, ‘욕설, 비속어 등 금지’, ‘전문가 공조’, ‘광고 제한’으로 추려진다. 선행연구에서 본 항목의 내용이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6> 선행연구에서의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필요 조항

(1~2곳 방송사업자 제작 가이드라인 구비)

항목	필요 내용
근로시간 규정 [이영주(2009)]	노동시간 :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노동시간의 제한과 관련된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령대별,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의 특성이나 장르 특성 등의 요소들을 감안해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욕설, 비속어 등 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b)]	어린이·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어른을 흉내 낸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정서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출연자가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자막 등을 통해 제시할 때는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가 공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b)]	제작자 및 방송사는 촬영 기간 내내 어린이·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작 준비 단계는 물론 촬영 과정 전반에 전문가가 자문 또는 전문가의 직접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광고 제한 [이영주(2009)]	출연하지 않아야 하는 광고물 규정 : 광고 출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되, 다만 아동·청소년들이 출연해서는 안 되는 광고물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출, 패스트푸드, 성기구, 알코올 광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위의 항목들 이외에, 현재 국내 방송사들의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 문헌들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요소들을 간추리면 ‘최종편집본 확인절차’, ‘기본적인 통신자유 보장’, ‘사후영향고려’, ‘아동·청소년 인권 (재)교육 의무’ 로 정리된다. 해당 항목의 필요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 2-7> 선행연구에서의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필요 조항

(방송사업자 제작 가이드라인에 없음)

항목	필요 내용
최종편집본 확인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b)]	가능하다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최종 편집본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종 편집본이 제작준비 단계에서 동의한 내용과 상당히 달라진 경우는 반드시 방송 전 확인 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 통신자유 보장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원하는 때에 보호자 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자유 보장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a)]	
사후영향고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b)]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출연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논란이 된 방송 클립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빠를 속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나 청소년이 입을 수 있는 정서적 피해는 이전에 비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인권 (재)교육 의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a)]	어린이·청소년 보호도 미디어 생산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하며,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미디어 생산자의 역할 및 윤리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경우와 반대로, 현행 방송사업자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항목은 ‘휴식규정’, ‘성보호(신체접촉 금지 등)’, ‘편성시간’, ‘등급기준’, ‘제재조치’이다. 이 중에서 ‘편성시간’과 ‘등급기준’은 방송 편성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의 프로그램은 가족시청시간대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주제 및 내용이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고,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기준으로 TV프로그램 등급을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제작현장에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식규정’과 ‘성보호’, ‘제재조치’ 항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 2-8> 방송사업자 아동·청소년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항목

(선행연구에서는 언급 없음)

항목	필요 내용
휴식 보장	제작진은 미성년자 출연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촬영 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다.

<p>성보호(신체접촉 금지 등)</p>	<p>촬영 진행상 신체접촉이 필요한 경우(의상 정리 및 마이크 착용 등),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주시요. 친근감을 표시하는 가벼운 접촉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hr/> <p>제작자는 미성년자 출연자 본인의 인격 형성뿐 아니라 또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미성년자 출연자에게 선정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선정적인 의상, 행동을 통해 미성년자 출연자를 성적 대상화하지 않도록 한다.</p> <p>- 제작자는 미성년자 출연자의 성(性)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건강과 안전 또는 그러한 맥락에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진, 성인 출연진들은 미성년자 출연자와의 육체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p>
<p>제재조치</p>	<p>위 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 중지하고 담당 PD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를 취하며, 위 규정을 3번 위반했을 경우, 그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담당 PD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p>

제 2 절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 보호 실태 및 인식 조사

1. 조사 대상 및 델파이 조사 방식

1) 조사 대상 선정

본 연구는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정책 방안에 대한 방송 제작자,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에이전시 운영자, 아동인권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15명으로, 방송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경험이 있는 현직 방송사 피디 5명,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아역 에이전시 운영자 5명, 관련 전문가는 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 변호사 및 학계 전문가 5명을 선정하였다. 방송 제작자의 경우, 국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전문채널에 인터뷰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방송사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아역 에이전시 운영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섭외는 신뢰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양하고, 관련 협회와 방송사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에 응한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경우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장 문제점을 제기해온 시민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그리고 방송정책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학자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를 시행한 조사대상자 15명의 주요 정보는 아래의 <표 2-9>와 같다.

<표 2-9> 인터뷰 조사 대상

	구분	소속	경력	특정	
1	방송 제작자	지상파	KBS	8년	A
2			EBS	23년	B
3		종합편성채널	TV조선	4년	C
4			채널A	20년	D
5	전문채널	CJ ENM	7년	E	
6	출연자 및	에이전시	원장	20년	F

7	에이전시	(연기학원)	대표	10년	G
8		출연자	아역 출신 연기자	10년	H
9			아동 연기자	2년 8개월	I
10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	관계자	14년	J
11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14년	K
12		공익인권로펌	변호사	8년	L
13		학계	방송정책연구	15년	M
14				18년	N
15				22년	O

2) 델파이 조사 방식

본 연구는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 실태와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뷰 조사방식 중 하나인 델파이 기법을 채택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패널(panel)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측 또는 의사 결정을 하는 연구 방법으로, 해당 연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시행되는 조사 방법이다(Fink & Kosecoff, 1985, 조은별 외 2015, 재인용).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장점은 익명성이 전제되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데 있다. 특히, 동일한 전문가로 하여금 복수의 설문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각각 전문가들의 동의수준을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이종성, 2016). 또한 전문가 집단에게 반복적으로 의견을 물어 정보를 수집·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때나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탐색이 어려울 때, 그리고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활용되는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노승용, 2006). 아울러 델파이 기법은 협의회를 통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절차의 반복

과 통제된 피드백, 응답자의 익명,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이전 설문에서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참여자들이 자기 판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박경준, 2008).

델파이 분석의 기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여러 차례의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델파이 조사의 방법은 처음에 전문가의 제안을 수집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판단을 다시 생각하도록 피드백과 함께 반복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익명성을 보장하여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를 이끌어낸 후, 반복적인 조사로 집단의 합의점 도출하는 것이다. 델파이기법에서 연구대상자 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일반적으로 20~30명 내외로 하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Okoli & Pawlowski, 2007). 이렇게 한 라운드에 제시한 견해를 다시 수정하고 새로운 제안이 추가되는 델파이 조사에서 라운드의 회수는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가 적정하다(Critcher & Gladstone, 199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재인용).

현재 본 연구는 상기한 총 15명에게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에 관한 질문을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실시하였다. 1차는 서면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를 혼용하였으며, 2차는 15명 모두에게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서면 인터뷰 외에 대면 인터뷰 방식을 함께 차용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만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경험과 촬영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전달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 1차는 개방형 질문으로 전문가 패널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조사가 완료된 후,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수집한 응답들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2차 조사는 15명의 조사대상자에게 각 항목별로 동의 여부와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중요도는 ‘높음’, ‘보통’, ‘낮음’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높음’에는 3점, ‘보통’에는 2점, ‘낮음’에는 1점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선택한 각 항목별 중요도의 평균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에게 1차로 질문한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제작 일반에 대한 질문’, 둘째는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관련 질문’, 셋째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

이드라인 개선에 관한 질문'이다. 이상의 세 가지 사안을 다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누어 총 10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이 열 가지 질문은 방송 제작자, 출연자, 전문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아래의 <표 2-1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 문항 중 일부 질문에 있어서는 핵심 내용은 동일하나 제작자, 출연자, 전문가의 입장에 따라 이해하고 답변하기 용이하도록 문구를 약간씩 달리하였다. 델파이 조사 1차 설문 내용은 아래의 <표 2-10>과 같다.

<표 2-10> 델파이 조사 1차 질문지 구성 내용

구분	질문 내용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제작 일반에 대한 질문	1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절차의 특이점
	2	제작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있는 경우 제작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하는 점
		출연자 전문가 아동·청소년 출연자로서 방송 제작현장에서 어렵거나 불편한 점
	3	제작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경험
출연자 전문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점		
4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데에 대한 생각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관련 질문	1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 인지 여부 및 평가
	2	현재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한 지침의 유용성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개선에 관한 질문	1	현재의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2	아동·청소년 출연자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
	3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
	4	그 외에 추가 의견

2. 델파이 조사 1차 분석 결과

1)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제작 일반에 대한 질문

본 조사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 에이전시 및 출연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절차에 대해 질문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절차를 묻은 이유는 성인들만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달리 아동·청소년이 제작 현장에 있는 경우 제작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있는 제작 현장을 이끄는 제작진이나 그 환경을 경험한 출연자,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방송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파악해야,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 환경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절차의 특이점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절차에 대한 설명은 각기 달랐다. 제작자, 출연자, 전문가 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제작자들 간에도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방송 제작 실무자 중에는 기획, 제작, 방송 즉 출연자 요소가 전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는 준비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반 프로그램 제작과 유사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 출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학업 또는 집중력 지속시간 등) 빠른 시간에 제작을 마칠 수 있도록 녹화 및 촬영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A).

또한 아동들이 주요한 인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중인 실무자는 방송의 사전 기획 단계부터 촬영 단계, 후반 작업 단계까지 아동 출연자의 기준에 맞추어 진행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아동은 자주적인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 판단하여 부모님이나 인솔자를 항상 대동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를 함께 인지시킵니다. 또한 촬영 전,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지 거듭 검토하여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이 갈만한 요소는 제외합니다. 실제 촬영이 진행되면 출연자의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항상 인솔자(부모님 포함)를 대동시킵니다. 또한, 다른 출연자에게도 청소년이 출연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보호 규정에 맞추어 촬영 스케줄을 수립하고,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를 미리 받아 사전 고지를 해줍니다. 편집 등 후반 제작 기간에는 여러 방향을 고민합니다. 해당 내용이 청소년에게 맞는지, 성인과의 대화에서 연령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청소년 비하 등 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반드시 삭제합니다(C).

이 밖에 출연자 섭외에 있어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 다르게, 제작진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아동을 에이전시 혹은 소속사 등을 통해 리스트를 받아서 오디션을 보고 섭외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② 출연자 측 의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절차에 대하여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문제점부터 지적하였다. 우선 가장 먼저 거론된 문제는 캐스팅 절차였다.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선발하는 방송사 공채 시험이 없기 때문에 출연의 기회는 에이전시나 아카데미를 통해 섭외된다는 지적이었다.

연기학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섭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기학원은 에이전시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해요. 아역은 기획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캐스팅될 수 있어요. 대형 에이전시는 소속비를 받기도 해요(G).

또한 에이전시를 통한 캐스팅 절차로 인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방송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 계약은 에이전시가 하게 되고 출연료도 에이전시가 방송사로부터

받아서 지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출연료가 일부 지급되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자식의 방송 출연을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과욕으로 정상적인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출연료 지급의 역행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제작 현장에서는 출연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어머니들이 먼저 제안하기도 해요. 우리 아이를 출연만 시켜달라고 오히려 제작자에게 돈을 주기도 해요. 어머니들의 극성으로 캐스팅을 위한 뒷돈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요(H).

그러나 막상 아동 출연자의 보호자들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특이점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인만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해 본적이 없다 보니 비교가 분명하지 않지만 아주 특별히 다르다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I).

③ 전문가 의견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절차의 특이점에 대하여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가 이루어져야하며 위협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표명했는데, 몇 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직접 만나본 전문가는 최근 들어 촬영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의지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보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조금씩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방송 제작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동·청소년을 먼저 촬영하고 집에 보내는 방식도 최근에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중략) 드라마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인배우들 간의 갈등관계에 아역배우들이 역할을 해야 할 경우, 폭력장면의 수위나 표현에 있어서 최근에는 조심하고, 고민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내용이 존재하기보다, 연출자나 성인배우의 아동·청소년

년 출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가 현장에 적용되면서 긍정적인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K).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침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성년 출연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부모의 강력한 의사에 의해 출연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선택 등에 있어 자기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노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작 현장에서 미성년 출연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 학습권 보장, 관련된 제반 규정에 대한 제작진의 규정 숙지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O).

(2)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제작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방송 제작 실무자들은 제작 현장에서도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말이나 신체적 접촉을 극도로 조심하고 과도한 촬영 시간으로 인한 피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고 강조했다.

대사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고려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자 및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 녹화에 반영합니다. 녹화 및 촬영시간이 주간이고 장시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태프들의 의상이나 표정 등에도 조심합니다. 휴게공간 및 간식 등을 따로 준비합니다. 스태프들의 언어표현 및 호칭에 조심하도록 따로 안내합니다. 아이들을 재촉하거나 채근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정확히 짜고 자세히 안내합니다.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세트장은 먼지가 많고, 전선

도 많고, 세트는 임시시설이라 항상 위험합니다.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할때 항상 성인이 동반합니다. 마이크착용 등 신체접촉시 동성 스태프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출연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어사용에 유의합니다.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따로 준비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녹화현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장소를 따로 마련합니다(A).

또한 출연자뿐 아니라 보호자와 항상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하였다. 특히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솔루션의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을 다루는 방송의 경우에는 아이들 및 가족이 악성 댓글과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은 참고사항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 * 출연자 인격권 보호- 출연 아동의 이름 통일
-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출연자 가족 거주지의 외경 노출을 최소화
- * 온라인 악성 댓글 관리- 유튜브 방송영상 클립 댓글 기능 중지/
실시간 댓글, 방송 전 후 실시간 모니터링
- * 지속적인 출연자 관리-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치료진행(D)

② 출연자 측 의견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변화하는 느낌이 있고 비속어나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현장에서 인지하고 많이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촬영 현장은 억압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연기를 잘하지 못하면 기다려주기보다,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바꿔버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촬영 현장의 특성상 장시간 대기 상황이 늘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출연자 대다수가 입을 모았다.

새벽까지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가 출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지 못해요.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그 다음부터 캐스팅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제기를 하는 엄마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G).

5분 촬영을 위해서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기도 해요. 촬영이 많이 지연돼서 계획과 차이가 날 때가 많죠. 게다가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 학교에 자주 얘기하기도 눈치가 보이고요(H).

또한 아이가 단역 이상의 배역을 나갔을 때는 아이에게 많이 집중해주고 잘 가르쳐 주며 사전설명이나 휴식을 충분히 준비해주지만, 보조출연자에게는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사전설명, 장시간 촬영, 휴식 여부는 아역 보조출연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경력이 없던 5살~6살 시기에는 몇 번 정도 보조출연을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I).

마지막으로 대기시간과 함께 '야간촬영'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야간촬영 문제에서도 보호자들의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아동·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자에 의해 빼앗기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밤샘 촬영에 있어서 성인 연기자는 힘들지만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평소 10시에 취침한다고 가정했을 때 밤샘촬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촬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깨우거나 촬영에 집중하도록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호자인 부모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작품의 완성도 뿐 아니라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동·청소년 촬영시간 제한과 특히 밤샘촬영은 절대 불가해야 합니다(J).

③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 의견 가운데는 방송 제작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사전제작 시스템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쪽대본에 의존할 만큼 제작시간이 촉박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는 특히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쪽대본에 의존해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드라마 제작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은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L).

우리나라처럼 방송 프로그램이 사전 제작되지 않고 거의 초치기 제작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배려가 어렵다는 것입니다(O).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촬영에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드라마 스튜디오 촬영의 경우 현장의 ‘안전이 보장되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세트장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스튜디오 촬영이나,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폭염이나 혹한기 때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해 할 수 있는 촬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촬영방식에 대한 논의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K).

제작현장에서 아동 출연자와 성인 출연자가 한자리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거나 음주 등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O).

이 밖에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일 것으로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은 학습권의 보장 문제였다.

2020년 초반 시행한 아동·청소년연기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보면, 촬영 시간과 관련해서는 제작진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로 인해 학교 결석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결석해야하는지에 대한 협

의도 그때그때 이루어지거나 초반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는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작진의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L).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출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계약관계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촬영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수였고, 출연료
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촬영을 시작한 경우도 절반가량의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응답자중 28.16%나
되었습니다(L).

(3) 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침해 사례

다음으로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직접 경험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침해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아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실무자들은 대부분 출연자를 배려하고 있고 그러
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생각하며 녹화현장을 변화시키
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재우고 녹화를 진행한 적도 있고, 야외 촬
영시 에어컨이 나오는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여러 번 가기도 했습니
다. 남녀 아이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탈의실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태
프들은 성인프로그램도 함께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제작 속도, 잦은
대기시간 등에 불만인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고정 스태프를 활용하여 이런 부분을 해
소하려고 합니다(A).

제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 때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 시간이

길어짐을 알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어져도 오후 10시 이전 종료, 촬영 시간 7시간 이내는 반드시 준수합니다. 이후로 촬영이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퇴근 시키고 나머지 인원들끼리 나머지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청소년 보호법 상 출연자가 퇴근했다고 항상 고지해줍니다(C).

방송 제작 실무자들 중에는 오히려 아동·청소년과의 출연계약에서 규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하였다.

표준계약서 작성 시 부모동의를 모두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혼상태인 가정들도 있는데, 서류상 이혼상태가 아니면 부모동의를 모두 받도록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A).

② 출연자 측 의견

연기학원이나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또 그 권리를 모두 챙겨줄 수 없는 촬영장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해서 내보낸다고 하였다.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권리 보장 문제를 연합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제작현장에서 충격 받지 않도록 에이전시나 학원에서 현장의 분위기나 어려움을 철저하게 교육 하고 내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F).

또한 촬영스케줄이라는 특성 때문에 출연자는 일방적으로 행동의 제약과 통제를 요구받지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사정으로 촬영스케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었을 때는 편찬과 짜증을 들어야한다는 경험들도 적지 않았다.

세트 촬영에서는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통제가 잘 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픽스가 잘 납니다. 처음 세트 촬영장에 갔을 때 남자아이이고 8살이다 보니 소변이 자주

마렵다 하여 대기하며 화장실을 자주 다녀왔는데 촬영 곧 할꺼데 화장실 가지 말라고 담당자가 촬영이 한참 남았는데도 기다리게 하더니 나중에는 담당자가 짜증내더라고 요. 귀찮게 하거나 신경 쓰이게 하는 걸 용납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야외촬영이나 영화, 광고 촬영에서는 대체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생각의 폭이 넓은 편인데 드라마 세트 촬영장은 달랐습니다(I).

학원에이전시에서 소개해준 드라마에 출연을 하는데 콜 타임과 촬영장소가 자주 바뀌어서 촬영이 있는 날 택시와 버스를 다섯 번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가서 조감독에게 시간을 엄수하라는 말을 들었대네요(J).

더구나 이후 캐스팅 과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걱정하여 촬영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캐스팅 때부터 조건에 맞는 아이들의 섭외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 권익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엄마가 있다면 이후 캐스팅에 제외될 수 있어 말을 꺼내기 어려워요(G).

마지막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출연자 측의 지적은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시정되어야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극중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역할에 몰입하다보면 아이들은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본을 외워서하는 경우보다 상황으로 아이들의 연기를 이끌어 내는 경우 그 감정이입은 더 심해집니다. 감독에 입장에서는 상황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 내기위해 최고의 디렉팅을 한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개선이 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H).

방송 제작환경은 그 날 촬영하구 다음 날 방송되는 경우도 있기에 악천후 속에서

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촬영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제일 뒷전일 수밖에 없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데 방치하는 격이다(J).

③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권익이 침해된 사례에 대하여 직접 겪었던 경험이 아닌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2015년 제작된 KBS드라마 <빠꾸기 동지>에 출연한 성인 여자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 토크쇼에 출연해 촬영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분노 연기에 상대 아역 배우가 기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많은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기절’에만 포커스를 맞췄을 뿐, 기사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빠꾸기 동지> 속 상대 아역배우를 성인배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장에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K).

또한 방송으로 드러나는 내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상당수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슈퍼맨이 돌아왔다>, <공부가 머니?> 등과 같은 소위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 프로그램들의 특성상,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예컨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경우 아동이 용변을 보고 싶은 상황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 제작진들에게 카메라를 꺼달라고 여러 차례 직접 요청하고 확인하고, 아동 스스로 카메라를 천으로 덮기까지 하였으나, 이러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카메라를 꺾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해당 아동이 기저귀에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아동의 명시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과 방송을 강행한 것이며, 특히 용 변보는 장면을 방송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한 것입니다(L).

이처럼 특히 관찰예능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지는 모습부터, 식사, 학습 과정, 샤워 장면까지 방송되며, 부모와의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이 그대로 방송되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인 아이돌 지망생 등이 남녀 관계없이 성적으로 상품화된다거나, 과도한 미션을 요구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4)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데에 대한 생각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방송 제작 실무자들은 대부분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업무강도가 높은 방송 제작의 특성상 그 중요성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은 워낙 업무강도가 높고, 마감에 쫓기다 보니, 아동 출연자들의 권리문제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만, 현장에서는 아동 출연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도 문제입니다(A).

또한 아동들이 주로 출연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고객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성인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는 심각하다는 지적도 여럿 있었다.

어린이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성인타겟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출연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동출연자 인권침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성인 타겟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도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이 절실합니다(A).

아동이 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성인들이 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할 경우 그들에게 성인과 같이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E).

이 밖에 지금까지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거나, 희화화할 수 있는 불완전한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 기존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자 통념이었으나, 이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방송 제작현장과 콘텐츠 내 맥락에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의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 새로운 가치는 공유되어야 하고 원칙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엄격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

② 출연자 측 의견

출연자 측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환경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비관적이었다. 현재 방송 제작환경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관습적 행태가 원천적으로 변화되어야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가이드라인으로는 될 거 같지 않아요. 저도 이걸 맞서보자 해서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하고, 나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신뢰가 안 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하고 이걸 계속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법쪽, 아동전문가, 제작환경 쪽 사람들이 모여서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야 제도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 가이드라인만 있다고 해서는 절대 될 거 같지 않아요(H).

대형 에이전시, 연기학원, 학부모, 제작자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습과 관례가 원천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F).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은 연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원이나 촬영현장에서 많은 불합리하고 어려움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 명시되어 있고 제작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보호장치가 현실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J).

아동 출연자의 보호자입장에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많은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피해 대상이 우리 아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기를 항상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③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방송계에 아이돌 붐이 불면서 점점 출연자들의 연령이 하향되고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며 관련 산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방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참여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보장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방송출연자 /지원자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012년 영화 <도가니>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이 성폭력이란 상황에 놓이는 역할을 연기 한 후, 대중들은 이후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었고,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기관 등이 마련되는 듯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개봉한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영화에 출연한 아역 배우가 폭염에 노출되지 않는 시점에 촬영을 진행한 점, 스태프들의 촬영시간을 과노동이 아닌, 주 52시간 촬영을 적용한 점 등이 주요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K).

또한 현재 상황은 제작진의 인식과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주연과 조연급이 아닌 단역이나 엑스트라 출연자에 대한 권리도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유명세를 이미 얻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는 비교적 제도적 안정장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의 연습생인 경우에는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 혹은 단역, 엑스트라 역할을 맡은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인들도 권익 보호보다는 오히려 유명세를 얻기 위해 기회비용을 지불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규정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N).

2)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관련 질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방송사들의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 인지 여부 및 평가

첫 번째 질문으로는 방송사들의 제작 가이드라인에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알게 된 계기를 묻고, 간단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방송 제작 실무자들은 모두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업무 공지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연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지침을 유념하여 방송을 제작한다고 답변하였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제작 가이드>를 받아 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 될 때마다 제작진 전원은 청소년 출연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받습니다(C).

‘채널A 어린이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고 담당부서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배포해 제작 업무 진행 시 유념하고 있습니다(D).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의 ‘15세 미만/이상 청소년의 용역제공 기준’에 따라 청소년 촬영 시간에 주의하고 있고 방송 심의규정 등을 참고하여 어린이, 청소년 보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E).

그런데, 방송사 정규직이 아닌 외부스텝들은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을 숙지할 여건이 되지 않아 그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는 제작자도 있었다.

소위 제작진에는 정규직이 극소수이며, 스텝들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용역계약 등으로 해당 업무들만 해당 일정에만 담당하는데(보통 업무시간에 따라 비용책정/제작업자가 아닌 경우 제작비 집행 불가)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숙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용집행 없이 교육을 강요할 수도 없고, 관련 내용을 제작비 집행하면서 교육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A).

② 출연자 측 의견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제작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는 있었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촬영 시간에 제한이 있는 방송 제작환경상 지켜지기 어려우며, 특히 출연료 미지급이나 에이전트 전속 계약의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빨리빨리 짚어야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F).

출연료 미지급부터 정산문제 등이나 전속(에이전트) 계약서라든지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방송사, 제작사가 이행해야 합니다(J).

③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국내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해외 국가별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근래에 미디어 환경과 이슈 때문으로 보았다.

2019년 EBS의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에서의 문제적 언어표현과 폭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되면서 대중적으로 비판담론이 크게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정동원군이 13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하면서 더 많은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이후 정동원군의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방송촬영이 끝나지 않아도 먼저 귀가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방송출연 빈도가 크게 늘어났고, 이러한 상황이 대중들에게도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아니고,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아동·청소년의 출연시간이나 촬영장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중들의 관심/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K).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방송사들의 제작 가이드라인이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방송사마다 가이드라인 유무 및 내용의 편차가 큰 것을 문제로 보고 있었다.

방송사마다 가이드라인이 존재했거나 마련되었다고 해도 지금의 촬영환경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K).

또한 부모의 동의나 책임 하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침해를 허용하는 느슨한 규정들을 원칙적 금지 영역과 구분해야한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보호자의 동의 또는 책임 하에 예외적인 아동·청소년출연을 허용하는 재량적 허용 영역은 고시나 지침을 통해서 원칙적 금지영역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판단을 사례별로 달리 본다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N).

(2) 현재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한 지침의 유용성

다음으로는 국내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구비된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한 지침들을 제시하고,⁵⁾ 이러한 지침들이 제작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며 출연자 권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먼저 방송 제작 실무자 대부분은 현재의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한 지침 준수 및 사회적 분위기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제작할 때도 유념하고 있습니다(D).

5) 1. 기본규칙(개요), 2. 출연 일반규칙, 3. 취재·인터뷰 규칙, 4. 방송 내용 관련, 5. 보자호 동의, 6. 학습권 보장, 7. 범죄 등 신원 노출 유의, 8. 개인 정보 보호, 9. 안전 규칙, 10. 근로시간규정, 11. 휴식 규정, 12. 프로그램성격사전 설명, 13. 성보호(신체접촉금지 등), 14. 욕설, 비속어 등 금지, 15. 전문가 공조, 16. 제재 조치 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답변한 것과 같이 방송 제작현장에 있는 프리랜서 스태프나 용역 계약 제작진은 관련한 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숙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② 출연자 측 의견

출연자 측 가운데 에이전시 대표 등은 방송 제작자와 달리, 촬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호자나 연기자 본인의 욕심으로 그것을 문제시 하지 않고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였다.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작비의 한계로 촬영 현장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연기를 좋아하고 연기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밤을 새우더라도 연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면 엄마의 욕심으로 아이는 싫어하는데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G).

주 52시간 같은 것도 스태프들은 지킨다고 해도 배우들은 스태프들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다시 촬영을 해야 돼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돈이 드니까 빨리 찍어야 하고요. 현장에서 적용은 어렵다고 생각해요(H).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아동 출연자 보호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촬영 현장에서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린 아역들은 보호자가 있다보니 보호자에게 잘 설명이 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단 제가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인거 보니 아역배우와 보호자에게 쉽게 공지되는 가이드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건 몰랐지만, 다행히 이해가 안 될 만 한 처우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적용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I).

③ 전문가 의견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모든 촬영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드라마 촬영과정에서는 성인 연기자가 제안하거나 연출자의 의지로 아동·청소년 배우들의 현장 환경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사례는 알려졌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드라마 제작 현장에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능의 경우도, 아이돌 연습생 대상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합숙생활, 밤샘 미션 수행, 심사자의 평가 과정에서 자극적인 언어표현 등은 수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K).

위의 모든 조항이 지켜진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예를 들어 15번 미성년 출연자를 출연시킬 때 과연 전문가에게 관련 자문을 얻고 촬영을 진행하는 제작진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또한 미성년 출연자를 출연시킬 때 휴식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제작 현장이 많지 않다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16번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도 실제 규정을 위반한 제작진에 대해서 방송사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작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O).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다고 하여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작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전문가가 피력하였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방송 제작 현장의 제작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 없이는 아동·청소년 부분만 특별히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 제작 환경 전체의 전반적인 개선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L).

일반적으로 현장의 제작자들이 제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연구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제정 뿐 아니라 이를 현장의 제작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은 수많은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M).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작진에게 던져주고 제작진에게 이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방송사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작현장 또는 제작진에서 숙지되고 적용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실태 점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O).

3)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개선에 관한 질문

다음으로는 15명의 인터뷰 대상자에게 국내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한 지침들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1) 현재의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그 첫 번째로 현재의 제작 가이드라인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방송 제작 실무자들은 대체로 현재의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에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자사의 아동·청소년 출연 관련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D).

하지만 일부 방송 제작 실무자 중에서는 현재의 지침에서 보강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였다.

가이드라인 자체 내에서 특별히 미비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빠진 것들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범죄, 사고, 재해의 희생자나 피해자일 경우, 원본 영상까지 모자이크나 오디오 변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같은 곳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만든 창작물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가 엄청나게 생산되는 국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용을 고려해도 좋은 내용입니다. 또한, BBC처럼 방송 출연 이후, 어린이 청소년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상 부정적인 영향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방송사의 책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

② 출연자 측 의견

출연자 측에서는 방송 제작자에 비하여 현재 제작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우선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다.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근로시간 규정은 제작비의 한계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촬영현장의 특성상 지켜지기 어려운 항목이네요(G).

사실 출연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은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학습권 보장’이나 ‘근로시간규정’ 등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I).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제작 가이드라인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10세 이하의 아동의 보호자가 숙지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인지와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I).

그리고 현재의 가이드라인의 안전규칙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세트장내 먼지, 오염도 체크나 흡서기, 흡한기에 따른 촬영여부 등 촬영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 표준안들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③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선 현재의 제작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으로 기술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은 촬영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제작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L).

그리고 제작 가이드라인의 존재와 내용을 현장의 제작 스텝은 물론 출연자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내용을 촬영 현장에 있는 모두가 숙지하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작 스텝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작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보호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작 스텝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K).

또한 현재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지침들이 제작 현장에서의 권익 보호 사항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가 뒤섞여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출연시’ 문제가 되는 점과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점, 아동·청소년 ‘취재’에서 문제가 되는 점 등이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출연과 관련된 내용으로 범위를 좁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유목화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M).

(2) 아동·청소년 출연자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

두 번째로는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위해 현재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개선해야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방송 제작 실무자의 대부분은 현재의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점은 없다고 하였다. 다만, 각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현행대로 유지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행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도울만한, 관련 모범 사례 및 피해야 할 예시 등 실무에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최신 사례집 또는 참고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D).

또한 현재의 제작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더 이상 강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이드가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 제작과정에서 일일이 제약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가이드 준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위주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심의규정, 시민단체들의 모니터링, 사회적, 언론 감시 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여기에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E).

② 출연자 측 의견

출연자 측이 제작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제작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방송사 제작진은 실제로 제작에 투입되지 않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활용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면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제작에 투입

되면 바쁘기 때문에 교육받을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제작을 담당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F).

제작진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감독과 제작사 대표 등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해요. 법적인 의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 건강상태, 안전보호 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촬영현장에서 주의하고 고려해야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제작진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거예요(H).

그리고 출연자 측의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관이나 교원과 같은 중간 역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촬영현장에 액팅 코치를 투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 강사 경험 5년, 현장경험 3년, 심리치료 교육을 1년가량 받은 액팅코치는 현장에서 제작진과의 소통, 출연자의 연기, 출연자의 심리 안정, 건강상태 등을 모두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중간 역할자가 있다면 제작진과 소통도 원활하고, 연기 코칭도 할 수 있으며 출연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도 체크할 수 있어, 촬영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촬영시간이 단축되어 출연자들의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입니다(G).

아역 출연자가 있을 때는 출연자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좀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I).

학습권이나 안전규칙 등 아동·청소년 연기들을 보호하는 제작 가이드라인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이 필요하며 방송사가 바로 이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J).

또한 아동 출연자의 보호자는 보호자 동의로 예외가 가능하다는 근로시간 규정 등에 대하여 재량적 허용이 아닌 원칙적 금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근로시간 규정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아역배우의 상황에 맞게 보호자 동의없이 지켜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

③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방송사들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을 가장 많이 제시해주었다. 먼저 상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가장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내용과 기준이 보다 상세하게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각 방송 제작 현장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수월하게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L).

대부분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은 선언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제작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함께 제공하며, 해당 조항과 관련이 있는 법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을 제안합니다(M).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세한 사례 제시와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이 필요한데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기본 방향과 철학을 담은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O).

다음으로는 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가이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관찰예능’과 드라마, 뉴스 등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 유형을 고려하여 마련될 경우 각 프로그램 제작 특성에 잘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L).

또한 제작진이면 누구라도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제작하여 제작현장에서 언제든 찾아보고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프리랜서나 단기 용역계약 제작진에게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제작 현장에서 제작진들이 가이드라인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조항’ - ‘구체적인 실천 방법’ - ‘관련 사례’ -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으로 잘 정리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장에서 제작자들이 휴대폰에 ‘아동·청소년 근무 시간’, ‘아동·청소년 인권’, ‘아동·청소년 보호자 동의’ 등의 키워드를 치면,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M).

아동·청소년보호담당관 입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이는 출연자 측이 제시한 중간 역할자의 도입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인다.

촬영현장에서 부모동의를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상당수는 부모의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촬영현장에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아동·청소년보호담당관이 아동·청소년노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작자와 부모가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와 아동·청소년 스스로 과욕에 의해서 자신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당연히 제작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N).

그 밖에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 장애청소년, 젠더 이슈 등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

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협회나 관련 단체 차원에서 방송사 공동의 통일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을 하여 업계 전체가 기준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
세 번째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인터뷰에 응한 방송 제작 실무자 5명 중 3명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명의 실무자는 몇 가지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중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재단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기존 방송사 뿐 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미디어재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사례집 제작,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교육, 제작자와 아동·청소년 출연자 중재 업무 등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있어야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아이돌 아역배우 등 소속사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에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D).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에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존 매체들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새로운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E).

② 출연자 측 의견

출연자 측 가운데 에이전시의 입장은 연기강사 강사 자격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촬영장에서 중간자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문 액팅 코치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연기에 경험이 있고, 아이들에게 연기를 가르쳤던 학원 선생은 아이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촬영 현장의 특성도 이해하고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촬영장에서 혹시나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나 충격도 완화해줄 수 있고요. 또한 촬영이후까지 상담 등을 통해 케어해줄 수 있어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주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해요. 액팅코치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액팅 코치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방송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해요(G).

아동 연기자는 반드시 에이전시를 겸하는 학원을 거쳐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설 자격증만 있고 국가에서 관여하는 자격증이 없거든요. 이러한 강사들이 양성된다면 연기와 아동 심리를 잘 이해해서 촬영 현장의 액팅코치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거 같네요(H).

또한 연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촬영을 위해 학교를 빠질 경우, 에이전시 원장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또는 방송 제작진에게 도장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현장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담임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인문계의 경우 결석으로 처리해버려서 학교를 관두기도 해요. 인문계에서는 고3이 되어서야 연기로 대학을 진학한다는 이유로 촬영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고요. 중간에 연기를 포기하더라도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학교교육이 병행되고, 촬영 때문에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대중예술반이 있다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H).

아동 출연자의 보호자는 방송 제작자의 교육 필수 이수 정책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제 생각에 정책적으로 라고 한다면 관련 지원 교육의 필수 이수가 아닐까요? 아동 인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범죄로 연결됩니다.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을때도 학대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의 범주에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매우 효과가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방법을 제시 받은 사람들의 인식의 개선의 힘을 믿습니다(I).

③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할 사안은 매우 다양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연예기획사와 제작자 교육, 2) 출연료 부모 전달 동의, 3) 아동·청소년의 의사표현 기회 부여, 4)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 근거 규범 마련, 5) 기본권 침해 상황 정기적 실태조사, 6) 객관적 관리자 제도 도입, 7) 실질적 지원제도 도입, 8)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캠페인으로 나눌 수 있다.

연예기획사, 제작자들의 이러한 이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K).

청소년의 경우, 출연료의 정확한 지급과 출연료가 모두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지침이 필요합니다(K).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사표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K).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만한 것이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L).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L).

미성년 출연자의 경우 방송사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기 힘든 올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3의 객관적인 주체가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이 적절해 보입니다(O).

여가부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N).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캠페인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L).

(4) 그 외에 추가 의견

마지막으로는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위한 추가 의견이 있으면 그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추가 의견 중 앞서 언급된 답변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방송 제작 실무자 의견

방송 제작 실무자들의 의견 가운데는 제작 가이드라인에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콘텐츠 내용에 대한 요소도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출연자와 제작진이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의 규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국내 제작 가이드라인은 주로 제작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콘텐츠 내 무형적인 요소에 대하여 향후, 보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B).

제작진이 인지하고 지켜야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세세한 제재가 있으면 그만큼 제작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출연자와 제작진이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C).

② 출연자 측 의견

출연자 측 가운데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시장성이 낮아 제작이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권익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 드라마 등에 출연하기 위해서 애쓰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에서 메이저급이 아닌 제작사에게도 주니어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한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는 PPL과 같은 광고가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가 심하여 제작이 더 어려워지는 규제 환경이 바뀌어야한다고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콘텐츠진흥원 등 국가 차원에서 주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지원이 골고루 분배 되어야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 기회도 많이 생기고 출연료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F).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가 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PPL이 안됩니다. 반면 예능프로그램일 때는 PPL이 허락되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예능으로 분류가 됨으로써 PPL이 가능하죠.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장드라마 등의 경우에는 광고가 붙지 않아서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G).

그리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연기학원 에이전시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육을 빙자하고 출연을 미끼로 에이전트계약을 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학원 에이전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J).

③ 전문가 의견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촬영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진이 아동·청소년을 평소 대하는 방법과 태도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첨언하였고, 방송 산업이란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제작 가이드라인이 갖추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물리적인 제작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에 뿐 아니라, 제작진이 아동·청소년을 만나고 대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한 부분도 점검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L).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적었다고 판단됩니다(N).

3. 델파이 조사 2차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대상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한 델파이 조사 1차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제작 일반에 대한 질문’,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관련 질문’,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개선에 관한 질문’으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은 결과, 15명의 조사대상자 답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둘째는 ‘아동·청소년 출연하는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의견’ 그리고 셋째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구분된 2차 조사의 세 가지 범주의 질문은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 31문항,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환경에 대한 평가’ 50문항,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4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5명의 조사대상자에게 각 항목별로 ‘동의 여부’와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중요도는 ‘높음’, ‘보통’, ‘낮음’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높음’ 3점, ‘보통’ 2점, ‘낮음’ 1점을 부여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의 평균으로 그 중요성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참고로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질문 내용에 대한 항목별 동의여부와 중요도를 색깔별로 표시하였으며 색깔별 의미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별하였다.

<표 2-11> 항목별 중요도 표시 예시

질문 내용
동의비율과 중요도가 모두 높은 항목
동의비율은 높지 않지만 중요도는 높은 항목
동의비율은 높지만 중요도는 높지 않은 항목
동의비율과 중요도 모두 낮은 항목

1)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국내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관한 31가지의 항목 가운데 15명의 조사대상자 중 12명 이상이 동의하고 중요도 평균도 3점 만점에 2.60점 이상이 나온 의견은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 항목이다. 먼저,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작 스태프들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란 의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13명이 동의하여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으며, 중요성을 ‘높음’으로 판단한 경우가 12명으로 많아, 중요도 평균도 2.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해야하는 당사자들이 정작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작 현장에 투입된 제작진과 보호자 그리고 아동·청소년 본인이 해당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2-12>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1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연출자나 성인 배우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현장에서 긍정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11	4	13	2	0	2.87
2	형식적인 행동강령 같은 지침만으로는 아동출연자의 공정한 캐스팅, 정당한 출연료 지급, 안전보장 등 권익 보장에 대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12	3	10	5	0	2.67
3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권익 보장 문제를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8	7	3	8	4	1.93
4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극중 역할을 하는 경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심리치료는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	10	5	12	2	1	2.73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5	제작진들은 오후 10시 이전 종료, 촬영 시간 7시간 이내 등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7	8	10	4	1	2.60
6	주 52시간 규정이 방송사 제작진에게 적용되어 스태프들은 바쁘더라도, 제작비 문제 때문에 출연자 촬영은 계속된다.	11	4	5	10	0	2.33
7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근로시간 규정'을 지켜주는 것은 현재 방송 제작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8	7	6	8	1	2.33
8	학습권의 보호 강화로 연기를 포기하며 꿈을 접는 학생들도 있다.	4	11	2	9	4	1.87
9	아역 보조출연자의 경우 프로그램 사전설명, 장시간 촬영, 휴식여부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3	12	7	7	1	2.40
10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을 제작현장에 반영하려면 녹화시간이 제한되므로, 결국 녹화횟수가 늘어나 제작비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14	1	8	6	1	2.47
11	한부모 가정들도 있는데 표준계약서에 부모동의를 모두 받도록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7	8	2	7	6	1.73
12	오디션프로그램의 경우, 미성년자 아이돌 지망생이 성적으로 상품화되거나, 과도한 미션을 요구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12	3	7	8	0	2.47
13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성인 출연자에 비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9	6	10	5	0	2.67
14	제작가이드라인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8	7	9	3	3	2.40
15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은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된다.	9	6	8	7	0	2.53
16	시사프로그램에서 아동 연기자를 활용한 재연 촬영이 문제이다.	5	8	6	8	1	2.33
17	뉴스프로그램에서 보호자 동의 없는 인터뷰 촬영이 문제이다	7	8	5	4	6	1.93
18	드라마에서 아동연기자 장시간 대기 및 대기실 미흡이 문제이다	12	3	9	5	1	2.53
19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시간 촬영이 문제이다.	9	5	7	5	2	2.36
20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들의 특성상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이다.	9	6	2	11	2	2.00
21	성인대상이 아닌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의 경우는 아동 출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다.	10	5	9	6	0	2.60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22	정규직은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다수의 프리랜서, 용역계약 스텝들은 관련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을 강요할 수도 없어 문제이다.	10	5	5	10	0	2.33
23	프리랜서, 용역계약 스텝들에게 제재조치가 없어 문제이다.	7	8	5	8	2	2.20
24	규제는 많아지고 지원책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0	5	7	7	1	2.40
25	현재는 규제가 너무 많고 행정업무만 늘어나는 형식으로 모든 가이드라인이 진행되고 있다.	7	8	5	8	2	2.20
26	방송사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4	11	2	7	6	1.73
27	현재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있으나, 방송사에 따라 오랫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10	5	4	10	1	2.20
28	가이드 및 심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 오히려 제작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8	7	8	6	1	2.47
29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모든 프로그램을 포괄해서 제작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3	2	8	6	1	2.47
30	항목들이 대부분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제작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10	5	8	6	1	2.47
31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작 스태프들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13	2	12	2	1	2.73

다음으로 “형식적인 행동강령 같은 지침만으로는 아동 출연자의 공정한 캐스팅, 정당한 출연료 지급, 안전보장 등 권익 보장에 대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란 의견에 대하여도 조사대상자 12명이 동의를 선택하여 높은 동의 수준이 나타났으며, 해당 문제의 중요성을 ‘높음’으로 판단한 경우는 10명,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5명이었다 (중요도 평균 2.67점).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지침으로는 부족하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동의수준은 12명 미만이지만 중요도 평균이 2.6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31개 질문 가운데 5개 의견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연출자나 성인 배우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현장에서 긍정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란 의견에 동의한 경우는 11명이며, 중요도 평균은 2.87점으로 31개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촬영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방송사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장에 대한 규정도 보다 현실적이며 세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극중 역할을 하는 경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심리치료는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란 의견이 10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중요도 평균은 2.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방송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치료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권익 보호라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성인 대상이 아닌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의 경우는 아동 출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10명이 동의하였고 중요도 평균 2.60점으로 나타나,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이 아동 프로그램 출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다.

이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성인 출연자에 비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에 대하여도 ‘동의’가 9명, 중요도 평균이 2.6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성인이 비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제작진들은 오후 10시 이전 종료, 촬영 시간 7시간 이내 등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란 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8명으로 동의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나, 중요도 평균은 2.60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아직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근로시간의 준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달리, 중요도 평균은 2.60점 미만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동의수준은 12명 이상으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난 의견은 4개로 나타났다. 그중 두 개의 항목은 앞서 언급되었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로시간과 직결되는 촬영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제작 현장에 반영하려면 녹화시간이 제한되므로, 결국 녹화횟수가 늘어나 제작비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란 의견에 동의한 답변자는 14명이며, “드라마에서 아동연기자 장시간 대기 및 대기실 미흡이 문제이다”에는 12명이 동의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장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출연자가 불가피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부분 동감했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모든 프로그램을 포괄해서 제작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에 동의한 경우는 13명이며,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미성년자 아이돌 지망생이 성적으로 상품화된다거나, 과도한 미션을 요구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란 의견에는 12명이 동의하였다.

끝으로 국내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관해 15명의 조사대상자가 중요도를 ‘보통’ 미만으로 낮게 평가한 항목은 총 4개 인데, 그 중 중요도 평균 1.93점을 나타낸 의견은 “뉴스프로그램에서 보호자 동의 없는 인터뷰 촬영이 문제이다.”이며 동의여부에서도 8명이 ‘비동의’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학습권의 보호 강화로 연기를 포기하며 꿈을 접는 학생들도 있다.”란 의견에는 1.87점의 중요도 평균을 기록하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11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 부모 가정들도 있는데 표준계약서에 부모동의를 모두 받도록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역시 중요도 평균은 1.73으로 낮게 나타났고 ‘비동의’를 선택한 인원이 8명으로 ‘동의’를 선택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그런데 중요도 평균 1.73점을 똑같은 받은 “방송사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동의’가 11명으로 동의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제2장 전반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국내 방송사별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항목에는

편차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만큼 제작진들에게 방송사 간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유되어있지 않으며, 출연자의 입장에서도 방송사들의 제작 지침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답변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맨 처음 설명하였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작 스태프들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란 의견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냈으며 중요도 평균도 2.73점으로 나타났던 결과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조사결과라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출연하는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의견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하는 방송 제작환경에 관한 50가지의 항목 가운데 15명의 조사 대상자 중 12명 이상이 동의하고 중요도 평균도 3점 만점에 2.60점 이상이 나온 의견은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항목이다.

<표 2-13> 아동·청소년 출연하는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의견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1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제작진 전원은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받는다.	2	13	10	4	1	2.60
2	제작진들은 출연자의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항상 인솔자(부모님 포함)를 대동시킨다.	7	8	8	6	1	2.47
3	제작진들은 아동 출연자를 위한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6	9	8	6	1	2.47
4	제작시간의 한계로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보호 장치 없이 촬영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9	6	10	4	1	2.60
5	제작진들은 제작 상황이나 대사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한다.	10	5	13	2	0	2.87
6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폭력장면에 있어서 조심하고, 고민해서 촬영하고 있는 편이다.	14	1	13	2	0	2.87
7	제작진들은 다른 출연자에게도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안내한다.	7	8	10	4	1	2.60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8	제작진들은 폭력성, 선정성, 상업성 등의 문제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배제한다.	8	7	6	9	0	2.40
9	제작진들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회적 일탈 또는 범죄 등의 피해자인 경우, 신원을 유추할 수 없도록 촬영 원본까지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를 시행한다.	10	5	12	2	1	2.73
10	제작진들은 아이들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로 댓글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보노출의 범위를 정한다.	5	10	12	3	0	2.80
11	제작진들은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와 함께, 방송 후에도 온라인 악성 댓글 관리 등을 운영한다.	4	11	11	3	1	2.67
12	제작진들은 청소년 비하 등 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편집과정에서 제외시킨다.	9	6	12	2	1	2.73
13	제작진들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의사와 의도가 왜곡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6	11	4	0	2.73
14	제작진들은 녹화 및 촬영시간이 주간이고 장시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7	10	4	1	2.60
15	현실적으로 제작비의 한계로 장면들을 몰아서 찍어야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현 제작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10	5	5	10	0	2.33
16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은 제작속도가 느리고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7	8	4	9	2	2.13
17	제작진들은 사전에 보호자 및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 녹화에 반영한다.	10	5	8	7	0	2.53
18	제작진들은 출연자뿐 아니라 보호자와 항상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8	7	8	0	2.47
19	제작진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녹화현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장소를 따로 마련한다.	4	11	4	9	2	2.13
20	정확한 상황 연기를 위해 주로 제작진이 에이전시 교사나 부모에게 설명을 하고 아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10	5	4	11	0	2.27
21	제작진들은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태프들의 의상이나 표정, 언어표현 등에도 조심한다.	7	8	5	10	0	2.33
22	제작진들은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출연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어사용에 유의한다.	8	7	7	6	2	2.33
23	촬영현장에서의 비속어 표현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에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노출되기도 한다.	10	5	9	6	0	2.60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24	비속어나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과거와 달리 현장에서 많이 조심하려한다.	12	3	14	1	0	2.93
25	제작진들은 아동출연자에게 휴게 공간 및 간식 등을 따로 준비하며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10	5	9	6	0	2.60
26	단역 이상의 경우 사전설명과 휴식은 아동들에게 충분히 준비해주는 편이다.	10	5	6	9	0	2.40
27	제작진들은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배제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따로 준비한다.	5	10	4	8	3	2.07
28	촬영 시간과 관련해서는 제작진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결석도 수시로 발생한다.	8	7	6	8	1	2.33
29	단역이 아닌 주연을 맡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침해는 심각하다.	10	5	7	7	1	2.40
30	제작진들은 남녀 아이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탈의실을 별도로 확보한다.	9	6	9	5	1	2.53
31	제작진들은 마이크착용 등 신체접촉시 동성 스태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	12	3	9	6	0	2.60
32	아동출연자들은 제작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예시) 조연 주연의 출연량이 다른 경우 등	8	7	6	6	3	2.20
33	아동출연자가 화장실을 가는 등 제작진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 짜증을 내거나 용납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1	14	5	9	1	2.27
34	야외촬영이나 영화, 광고 촬영장에서는 대체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편인데 드라마 촬영장의 제작진은 상대적으로 예민한 분위기다.	8	7	4	10	1	2.20
35	방송은 업무강도가 높고 마감에 쫓기다 보니, 아동 출연자들의 권리문제는 뒷전이 되기 쉽다.	12	3	11	4	0	2.73
36	아동, 청소년의 경우 출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학업 또는 집중력 지속시간 등) 빠른 시간에 제작을 마칠 수 있도록 녹화 및 촬영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0	5	8	6	1	2.47
37	야간 촬영을 위해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깨우거나 촬영에 집중하도록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어 보호자인 부모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8	7	8	6	1	2.47
38	자녀를 출연시키고 싶은 욕심에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는 보호자도 있다.	8	7	9	4	2	2.47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39	캐스팅을 위한 뒷돈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	8	7	7	6	2	2.33
40	미성년 출연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부모의 강력한 의사에 의해 출연되는 경우도 있다.	8	7	7	6	2	2.33
41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 권익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보호자일 경우, 이후 아역 캐스팅에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11	4	6	9	0	2.40
42	원활한 촬영 진행을 위해서 캐스팅 디렉터는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권익을 알아서 포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선호하게 된다.	9	6	10	4	1	2.60
43	아역은 기획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캐스팅될 수 있고, 제작진은 프로그램에 출연할 아동을 에이전시 혹은 소속사를 통해 섭외한다.	10	5	7	6	2	2.33
44	방송사가 에이전시로 전화해서 요청하는 것이 곧 구두 계약이며 출연 계약은 에이전시가 한다.	10	5	6	8	1	2.33
45	아동·청소년은 공채 시험이 없고 에이전시나 아카데미를 통해 선발되는 것이 문제이다.	4	11	3	7	5	1.87
46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촬영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10	5	10	4	1	2.60
47	아동·청소년의 경우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8	7	10	4	1	2.60
48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출연료 기준이나 야외수당, 숙박, 식비, 교통비 등 현실성에 맞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10	5	10	5	0	2.67
49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서 아동출연자는 성인 시청자를 위해 소모된다.	9	6	3	9	3	2.00
50	아동 출연자를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거나, 희화화할 수 있는 불완전한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 기존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편견이자 통념이다.	7	8	6	7	2	2.27

상기한 4개의 항목 가운데 3개의 의견은 폭력이나 신체접촉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선 “비속어나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과거와 달리 현장에서 많이 조심하려 한다.”란 의견에는 조사대상자 12명이 동의하여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으며, 중요성을 ‘높

음'으로 판단한 경우가 14명으로 가장 많아, 중요도 평균도 2.9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폭력장면에 있어서 조심하고, 고민해서 촬영하고 있는 편이다.”란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14명이 동의를 선택하여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의견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으며, 중요도는 13명이 ‘높음’을 선택하여 2.87점의 높은 중요도 평균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제작진들은 마이크착용 등 신체접촉시 동성 스태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란 의견에도 12명의 답변자가 동의하였고 중요도 평균은 2.60점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촬영시간이나 미처 고려하지 못한 안전문제 등과 달리,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제작진의 의식이 뒷받침된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폭력장면 촬영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그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과 사후 심리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12명이 동의하고 중요도 평균을 2.73점을 기록한 의견은 “방송은 업무강도가 높고 마감에 쫓기다 보니, 아동 출연자들의 권리문제는 뒷전이 되기 쉽다.”인데 이는 제작비 문제로 인한 야간촬영 강행 문제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장과 방송 제작 환경의 개선이 정비례한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동의수준은 12명 미만이지만 중요도 평균이 2.6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50개 질문 중 15개 의견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중요도 평균 상위 8개 의견을 소개하면, 먼저 “제작진들은 제작 상황이나 대사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한다.”란 의견에 중요도를 ‘높음’으로 응답한 답변자는 13명으로 중요도 평균은 2.8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동의한 경우는 10명이었다. 이 결과는 방송 제작과정에서 폭력이나 욕설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전술한 의견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도 평균이 공통적으로 2.73점으로 조사된 의견은 세 가지인데, 그 중 동의율이 10명이었던 의견은 “제작진들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회적 일탈 또는 범죄 등의 피해자인 경우, 신원을 유추할 수 없도록 촬영 원본까지 모자이크나 음성변조를 시행한다.”였으며, 동의율이 9명이었던 두 가지 의견은 “제작진들은 청소년 비

하 등 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편집과정에서 제외시킨다.”와 “제작진들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의사와 의도가 왜곡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방송 제작자는 제작비가 특별히 추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현재에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에 가급적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론은 답변자 10명이 동의를 하고 중요도 평균이 2.67점을 기록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출연료 기준이나 야외수당, 숙박, 식비, 교통비 등 현실성에 맞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으로도 증명된다 할 것인데, 결국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는 제작비 증액과 연동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작비 문제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직까지 잘 시행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다. 이는 중요도 평균은 높으나 ‘비동의’를 선택한 답변자가 유독 많은 의견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작진들은 아이들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로 댓글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보노출의 범위를 정한다.”란 항목의 경우 중요도 평균 2.80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나 ‘비동의’를 선택한 답변자가 10명이며 “제작진들은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와 함께, 방송 후에도 온라인 악성 댓글 관리 등을 운영한다.”란 의견 역시 중요도 평균 2.67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동의하지 않은 답변자가 11명이나 되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제작진 전원은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받는다.”란 의견도 중요도 평균은 2.60점인데 반해, ‘비동의’를 선택한 응답자가 13명으로 동의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방송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제작비와 최소한의 시간을 투여하는 한도 내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중요도 평균이 2.60점 미만이면서 동의율도 낮은 항목을 보면, 우선 ‘비동의’가 14명으로 동의수준이 가장 낮았던 의견은 “아동 출연자가 화장실을 가는 등 제작진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 짜증을 내거나 용납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이었다. 이 의견은 아동 출연자의 보호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으나, 다른 답변자들은 이 같은 경험을 직간접적으로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요도 평균은 2.27점으로 ‘보통’이상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중요도 평균이 1.87점으로 가장 낮으며 ‘비동의’선택이 11명으로 나타났던 “아동·청소년은 공채 시험이 없고 에이전시나 아카데미를 통해 선발되는 것이

문제이다.”란 의견이 있었다. 이는 현재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선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제작가이드라인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47가지 항목에 동의여부와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 15명의 조사대상자 중 13명 이상이 동의하고 중요도 평균도 3점 만점에 2.70점 이상이 나온 의견은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1개 항목이다. 제작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앞서 관련 ‘제도’와 ‘제작환경’에 대한 의견과 달리 ‘동의’를 선택한 문항과 중요도에 ‘높음’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 동의수준과 중요도 평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의는 12명 이상, 중요도 평균은 2.60점부터 살펴봤던 앞서와 달리, 동의는 13명부터, 중요도 평균은 2.70점부터 주요하게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2-14>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1	아동·청소년의 출연료는 정확한 지급과 부모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11	4	13	2	0	2.87
2	안전규칙에 촬영장 환경개선(세트장내 먼지, 오염도 체크나 흡서기, 흡한기에 따른 촬영여부 등)에 대한 세부 표준안들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10	5	7	7	1	2.40
3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범죄, 사고, 재해의 희생자나 피해자 일 경우, 원본 영상까지 모자이크나 오디오 변조를 해야 한다.	11	4	12	2	1	2.73
4	방송 출연 이후 어린이 청소년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4	8	5	2	2.40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5	아동·청소년의 촬영시간과 출연시간 제한을 강화해야한다.	11	4	8	5	2	2.40
6	아동·청소년 촬영시간 제한과 특히 야간촬영은 절대 불가해야 한다.	6	9	4	6	5	1.93
7	‘근로시간 규정’은 제작 환경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해서는 안된다.	9	6	9	6	0	2.60
8	성인들이 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미성년자가 출연할 경우, 성인과 같이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14	1	9	6	0	2.60
9	보호자의 동의나 책임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량영역을 지나치게 넓히게 되면,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2	3	8	7	0	2.53
10	‘미성년자의 모든 결정을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호자 동의 항목을 보다 강하게 보완해야 한다.	6	9	5	10	0	2.33
11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사표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15	0	11	4	0	2.73
12	제작진과의 소통, 출연자의 연기, 출연자의 심리 안정, 건강 상태 등을 모두 담당할 수 있을 액팅 코치(가칭)를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7	8	9	3	3	2.40
13	촬영현장에 투입된 액팅 코치(가칭)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방송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8	7	8	4	3	2.33
14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스튜디오 교원을 양성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5	8	5	5	5	2.00
15	미성년 출연자의 경우 방송사에 대해서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기 힘든 을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3의 객관적인 주체가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9	6	7	5	3	2.27
16	촬영현장에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아동·청소년보호담당관이 아동·청소년노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 비용은 제작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9	6	8	6	1	2.47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17	제작현장에 중간 역할을 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보호자들의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장 받지 못하는 측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8	7	5	9	1	2.27
18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 건강상태, 안전보호 등 현직 PD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12	3	10	5	0	2.67
19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촬영장에 투입되는 전 스텝들의 의무적 교육 항목이 필요하다.	10	5	8	7	0	2.53
20	성인 대상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도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이 절실하다.	14	1	10	6	0	2.63
21	연예기획사들에게도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5	0	13	2	0	2.87
22	위반 건수 및 징계 수위 등 '제재 조치' 도입은 제작의 자율성을 많이 위축시킬 것이다.	10	5	10	5	0	2.67
23	인종차별, 장애청소년, 젠더 이슈 등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3	2	11	4	0	2.73
24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과 말 그대로 참고하고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4	1	9	6	0	2.60
25	가이드라인은 제작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침이 되어야 한다.	11	3	9	6	0	2.60
26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제작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13	2	13	2	0	2.87
27	아동·청소년 출연 권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2	3	13	2	0	2.87
28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찰예능'과 드라마, 뉴스 등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14	1	11	4	0	2.73
29	방송 제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10	5	7	6	2	2.33
30	아동·청소년 미디어재단을 운영해야 한다.	6	9	3	5	7	1.73
31	저작인접권자로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12	3	6	7	2	2.27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32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출연자와 제작진이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12	3	7	8	0	2.47
33	여러 방송사 등의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3	2	6	6	3	2.20
34	제작 가이드라인이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되지 않았으면 한다.	9	6	5	9	1	2.27
35	현행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도울만한, 관련 모범 사례 및 피해 야 할 예시 등 실무에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최신 사례집 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15	0	12	3	0	2.80
36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권보장도 좋지만 지원정책이 따라오지 않는 현실에서 방송 제작이 더욱 위축될까 걱정된다.	10	5	10	4	1	2.60
37	여가부 등 관련부처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14	1	12	2	1	2.73
38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출연자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3	2	12	3	0	2.80
39	연예기획사의 경우 아이돌 아역배우 등 소속사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	1	12	3	0	2.80
40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5	0	14	1	0	2.93
41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 문제는 개인 방송에도 적용해야 한다.	15	0	13	2	0	2.87
42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제작지원이 되어야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 기회도 많이 생기고 출연료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향상될 것이다.	13	2	8	5	2	2.40
43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캠페인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3	2	9	5	1	2.5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내용	동의 여부		중요성 선택 인원수			중요도 평균 높음(3) 보통(2) 낮음(1)
		동의	비동의	높음	보통	낮음	
44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촬영 때 뿐 아니라 사전, 사후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15	0	9	5	1	2.53
45	에이전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5	0	12	1	2	2.67
46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권리보장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15	0	9	5	1	2.53
47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15	0	10	5	0	2.67

먼저, 조사대상자 15명 모두가 동의하여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으며 중요도 평균이 2.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란 의견이었으며, 이와 유사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 문제는 개인 방송에도 적용해야 한다.”란 의견에도 15명 모두가 동의하였고 중요도 평균은 2.87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에서의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현 미디어 환경이 반영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작자와 참여자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그 중요성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이에 더하여, 조사대상자 15명이 모두 동의한 문장이 또 있었는데 이는 “연예기획사에게도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란 의견이었다. 이 의견은 중요도 평균도 2.87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연예기획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동의율과 중요도가 대체로 높았는데, “연예기획사의 경우 아

6) 지난 202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다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아역배우 등 소속사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에는 1명을 제외함 14명이 동의하였으며 중요도 평균도 2.80점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답변자는 방송 제작 현장 뿐 아니라 연예기획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수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높은 동의율과 중요도 평균은 이를 수치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에도 15명 모두가 동의한 항목이 있었다. “현행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도울만한, 관련 모범 사례 및 피해야 할 예시 등 실무에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최신 사례집 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란 의견은 15명 전원이 동의한 것과 동시에 중요도 평균도 2.8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사표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란 의견 역시 15명 전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중요도 평균은 2.73점을 나타냈었다. 이 밖에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동의율과 중요도 평균이 상위권을 차지한 문장은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찰예능’과 드라마, 뉴스 등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제작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인종차별, 장애청소년, 젠더 이슈 등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가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14명의 동의와 2.73점의 중요도 평균을 받았으며, 두 번째는 13명의 동의를 받고 중요도 평균 2.87점을 기록하였고, 세 번째 의견은 13명의 답변자가 동의하고 중요도 평균은 2.73점을 기록하였다.

제작 가이드라인의 개정안 이외에 정책적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에도 높은 동의율과 중요도 평균을 나타낸 문항들이 있었다. “여가부 등 관련부처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에는 14명이 동의하였고 12명의 답변자가 중요성에 ‘높음’을 선택하여 중요도 평균은 2.73점을 나타냈었다. 그리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역시 동의를 표한 답변자가 13명이며, 12명의 답변자가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중요도 평균이 2.80점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제작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방송 제작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처의 실질적 제도마련과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이 보다 온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달리, 동의수준은 12명 이하이지만 중요도 평균이 2.7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47개 의견 중 2개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출연료는 정확한 지급과 부모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란 의견에 동의한 답변자는 11명이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람이 13명으로 나타나 중요도 평균은 2.87점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출연료 지급의 문제였는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출연자 개개인이 아니라 에이전시가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구두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출연료 지급이 명확치 않게 완료될 때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따라서 출연료 지급에 대한 지침은 방송사 뿐 아니라 에이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항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범죄, 사고, 재해의 희생자나 피해자일 경우, 원본 영상까지 모자이크나 오디오 변조를 해야 한다.”란 의견 역시 동의한 경우는 11명이었으나, 12명의 답변자가 중요성에 ‘높음’을 응답하여 중요도 평균은 2.73점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방송사가 범죄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을 인터뷰하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도 평균은 2.70점 미만으로 높지 않으나, 13명 이상이 동의를 선택하여 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의견은 47개 중 10개로 조사되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들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가져야 할 의식과 관심에 대한 의견이다.

우선 제작 가이드라인 방향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답변자 15명 전원이 동의를 한 의견은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촬영 때 뿐 아니라 사전, 사후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이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방송이 편집되어 송출될 때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항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14명이 동의한 의견들 가운데 “성인들이 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미성년자가 출연할 경우, 성인과 같이 과도한 업무량을 요

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와 “성인 대상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도 아동·청소년 인 권 교육이 절실하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같은 조사결과는 성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 프로그램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가 소홀하다는 앞선 의견들과 맥을 같이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명의 답변자가 동의한 또 다른 항목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사항’과 말 그대로 참고하고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란 의견이다.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강제성이 있는 법적 의무사항과 윤리적 지침사항을 구분하여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답변자 13명이 동의한 의견은 “여러 방송사 등의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제작지원이 되어야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 기회도 많이 생기고 출연료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향상될 것이다.”이다. 전자의 결과는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후자의 결과는 방송사와 정부부처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13명 이상이 동의를 선택한 또 다른 범주인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가져야할 의식과 관심에 대한 의견에는 총 4개의 항목이 있는데, 15명 전원이 동의한 의견부터 보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권리보장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에이전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13명의 답변자가 동의한 항목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캠페인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다. 이 답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한다는 데 있으며, 특히 에이전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앞서 높은 동의율과 중요도 수준을 보였던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보호를 위한 에이전시의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국내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관해 15명의 조사대상

자가 중요도를 ‘보통’ 미만으로 낮게 평가한 항목은 총 2개 인데, 그 중 중요도 평균 1.93점을 나타낸 의견은 “아동·청소년 촬영시간 제한과 특히 야간촬영은 절대 불가해야 한다.”이며 동의여부에 있어서도 6명만이 ‘동의’를 선택하여 개선방안 가운데 최소 동의수준을 보였다. 아동·청소년의 야간 촬영을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는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은 답변자는 방송 제작자와 전문가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야간촬영이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미디어재단을 운영해야 한다.”란 의견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경우도 6명으로 최소 동의율을 보였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답변자가 3명에 그치며 중요도 평균이 1.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미디어 재단까지 건립할 필요성은 없으며 그 중요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방송 제작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 침해의 문제점

지금까지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정책 방안에 대한 방송 제작자,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에이전시 운영자, 아동인권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1차와 2차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우선 1차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제작 일반과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한 현재의 제작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알아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15>와 같다.

<표 2-1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구분	세부 항목	의견 요약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제작 일반에 대한 질문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절차의 특이점	<p>제작자: 출연자 요소가 전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는 준비시간이 많이 걸림/ 사전 기획, 촬영, 후반 작업 단계까지 아동출연자의 기준에 맞추어 진행/에이전시나 소속사를 통해 출연자 섭외</p> <p>출연자: 출연 계약은 에이전시가 하게 되고, 에이전시에 따라 출연료가 일부 지급되지 않기도 함/ 부모의 과욕으로 정상적인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뒷돈이 오가기도 함</p> <p>전문가: 최근 들어 촬영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의지가 조금씩 커지고 있음/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침해는 여전히 존재함</p>
	아동·청소년 출연하는 방송 제작현장의 어려운 점	<p>제작자: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함.</p> <p>출연자: 비속어,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현장에서도 많이 조심하려 하지만, 촬영 현장은 억압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음/ 단역 이상의 출연자와 달리 보조출연자에게는 배려가 전혀 없음/ 대기시간과 야간 촬영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제일 힘든 일</p> <p>전문가: 방송 제작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침해의 원인/ 안전하지 않은 촬영 환경/ 학습권의 보장 문제/ 출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p>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침해된	<p>제작자: 출연자를 배려하고 그러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동·청소년과의 출연계약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하는 규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p>

	다고 생각하는 점	출연자	촬영장은 아동·청소년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임. 촬영스케줄로 인해 출연자는 행동의 제약과 통제를 일반적으로 요구받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전문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방송내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들을 목격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데에 대한 생각	제작자	업무강도가 높은 방송 제작의 특성상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 어려움/ 어린이 프로그램에 비해 성인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가 심각함
		출연자	방송 제작환경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관습적 행태가 원천적으로 변화되어야 함/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전문가	매우 긍정적이며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보장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단역이나 엑스트라 출연자에 대한 권리도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현장에서 지켜져야 함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 인지 여부 및 평가	제작자	제작자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을 인지하고 적용하고 있음/ 방송사 정규직 제작진이 아닌 외부스텝들은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을 숙지할 여건이 되지 않아 문제임
		출연자	제작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전혀 모름/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는 있었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전문가	제작 가이드라인이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음/ 방송사마다 가이드라인 유무 및 내용의 편차가 큰 것은 문제/ 부모의 동의하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침해를 허용하는 규정을 원칙적 금지 영역과 구분해야함.	
현재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한 지침의 유용성	제작자	제작자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들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도움이 됨/ 프리랜서 스텝이나 용역 계약 제작진은 관련한 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숙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
		출연자	촬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호자나 연기자 본인의 욕심으로 권익침해를 문제시 하지 않고 감내하는 경향이 있음/ 아동 출연자 보호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촬영 현장에서 지침들이 대체로 잘 지켜진다고 봄
	전문가	모든 촬영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제작진이 충분 교육 받아야함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개선에 관한 질문	현재의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제작자	현재 제작 가이드라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에 문제점은 없음/ 사회적 범죄, 사고, 재해의 희생자나 피해자일 경우, 원본 영상까지 모자이크나 오디오 변조필요/ 아동·청소년이 만든 창작물도 보호/ 소셜미디어상 부정적인 영향도 미리 고려 필요
		출연자	근로시간규정과 학습권 보장 규정 등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조항임/ 아동·청소년이 제작 가이드라인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안전한 촬영장 환경을 위한 세부 표준안 필요
		전문가	현재는 제작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많음/제작 가이드라인의 존재와 내용을 현장의 제작 스텝은 물론 출연자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 제작 현장에서의 권익 보호 사항과 프로그램 내용 규제가 뒤섞여 있음
	아동·청소년 출연자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	제작자	각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등을 제시해줄 필요 있음/ 제작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강화되면 안 됨/
		출연자	제작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감독관이나 교원과 같은 중간 역할자가 필요함/ 보호자 동의로 예외가 가능하다는 근로시간 규정 등에 대하여 재량적 허용이 아닌 원칙적 금지가 필요함
		전문가	상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제작현장에서 관련 지침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제작 필요함/ 아동·청소년보호담당관 입회제도 도입이 필요함/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 장애청소년, 젠더 이슈 다룰 필요 있음/ 방송사 공동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제작자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중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재단 등을 설립 필요/ 새로운 플랫폼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
		출연자	연기강사 강사 자격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촬영장에서의 중간자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제안/ 연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시스템의 변화 필요/ 방송 제작자의 교육 필수 이수 정책 도입
		전문가	연예기획사와 제작자 교육/ 출연료 부모 전달 동의/ 아동·청소년의 의사표현 기회 부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 근거 규범 마련/ 기본권 침해 상황 정기적 실태조사/ 객관적 관리자 제도 도입/ 실질적 지원제도 도입/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캠페인
	그 외에 추가 의견	제작자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콘텐츠 내용에 대한 요소도 보장되어야함/ 출연자와 제작진이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의 규제를 반대함

	출 연 자	정부차원에서 메이저급이 아닌 제작사에게도 주니어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함/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연기학원 에이전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전 문 가	방송 제작진이 아동·청소년을 평소 대하는 방법과 태도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함/ 방송 산업이란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갖추어져야함

위의 표와 같이 1차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매우 다양한 의견들을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31문항, ‘아동·청소년 출연하는 방송 제작환경에 대한 의견’50문항,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47문항으로 나누어, 2차 인터뷰 조사로서 각각의 세부 문항들에 대해 ‘동의 여부’와 ‘중요도’를 체크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2차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동의 수준 및 중요도 평균이 높은 의견들을 추려내어 정리하면 아래의 <표 2-16>와 같다.

<표 2-16>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동의수준 및 중요도 평균 상위 의견

구분	동의수준 및 중요도 평균 상위 의견	동의	중요도 평균
방 송 제 작 에 서 의 아 동 · 청 소 년 출 연 자 관 련 제 도 에 대 한 의 견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을 제작현장에 반영하려면 녹화시간이 제한되므로, 결국 녹화횟수가 늘어나 제작비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14	2.47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작 스태프들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13	2.73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모든 프로그램을 포괄해서 제작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3	2.47
	형식적인 행동강령 같은 지침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공정한 캐스팅, 정당한 출연료 지급, 안전보장 등 권익 보장에 대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12	2.67
	드라마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 대기 및 대기실 미흡이 문제이다	12	2.53
	오디션프로그램의 경우, 미성년자 아이돌 지망생이 성적으로 상품화된 다거나, 과도한 미션을 요구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12	2.47

	아동 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연출자나 성인 배우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현장에서 긍정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11	2.87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극중 역할을 하는 경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심리치료는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	10	2.73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폭력장면에 있어서 조심하고, 고민해서 촬영하고 있는 편이다.	14	2.87
	비속어나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과거와 달리 현장에서 많이 조심하려한다.	12	2.93
	방송은 업무강도가 높고 마감에 쫓기다 보니, 아동 출연자들의 권리문제는 뒷전이 되기 쉽다.	12	2.73
아 · 청 소 년 출 연 하 는 방 송 제 작 환 경 에 대 한 의 견	제작진들은 마이크착용 등 신체접촉시 동성 스태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	12	2.60
	제작진들은 제작 상황이나 대사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한다.	10	2.87
	제작진들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회적 일탈 또는 범죄 등의 피해자인 경우, 신원을 유추할 수 없도록 촬영 원본까지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를 시행한다.	10	2.73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출연료 기준이나 야외수당, 숙박, 식비, 교통비 등 현실성에 맞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10	2.67
	제작진들은 청소년 비하 등 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편집과정에서 제외시킨다.	9	2.73
	제작진들은 아동 청소년 개인의 의사와 의도가 왜곡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2.73
	제작진들은 아이들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로 댓글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보노출의 범위를 정한다.	5	2.80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도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5	2.93
아 · 청 소 년 출 연 자 보 호 를 위 한 개 선 방 안 에 대 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 문제는 개인 방송에도 적용해야한다.	15	2.87
	연예기획사들에게도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5	2.87
	현행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도울만한, 관련 모범 사례 및 피해야 할 예시 등 실무에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최신 사례집 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15	2.80

의견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사표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15	2.73
	에이전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5	2.67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15	2.67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촬영 때 뿐 아니라 사전, 사후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15	2.53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의 권리보장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15	2.53
	연예기획사의 경우 아이돌 아역배우 등 소속사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	2.80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찰예능’과 드라마, 뉴스 등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14	2.73
	여가부 등 관련부처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14	2.73
	성인 대상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도 아동 청소년 인권 교육이 절실하다.	14	2.63
	성인들이 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미성년자가 출연할 경우, 성인과 같이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14	2.60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과 말 그대로 참고하고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4	2.60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제작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13	2.87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출연자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3	2.80
	인종차별, 장애청소년, 젠더 이슈 등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3	2.73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캠페인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3	2.53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제작 지원이 되어야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 기회도 많이 생기고 출연료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향상될 것이다.	13	2.40
	여러 방송사 등의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3	2.20

아동청소년 출연 권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2	2.87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 건강상태, 안전보호 등 현직 PD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12	2.67
보호자의 동의나 책임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량영역을 지나치게 넓히게 되면,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2	2.53
아동청소년의 출연료는 정확한 지급과 부모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11	2.87
아동 청소년이 사회적 범죄, 사고, 재해의 희생자나 피해자일 경우, 원본 영상까지 모자이크나 오디오 변조를 해야 한다.	11	2.73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시행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답변자 다수의 동의와 높은 중요도 평균이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침해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항목들로 짧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해야하는 제작자와 보호자, 그리고 출연자 당사자들조차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방송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폭력장면 촬영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전문가의 판단과 사후 심리 상담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이 아동프로그램 출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문제점이다.

넷째,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장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제작비 문제로 인해 여러 날 촬영이 불가능하여 출연자가 불가피 장시간 대기 를 하며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다.

여섯째,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야간까지 지연되는 촬영시간이나 안전조치 미비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점이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장을 이루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답변자 다수의 동의와 높은 중요도 평균이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인 대상 프로그램 제작자를 포함하여, 현직 PD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방송이 편집되어 송출될 때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자의 동의나 책임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량영역을 지나치게 넓히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방송사가 범죄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을 인터뷰하는 경우, 화면 모자이크나 오디오 변조 등 신변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방송 제작진들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와 함께, 방송 후에도 온라인 악성 댓글 등으로 출연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강제성이 있는 법적 의무사항과 윤리적 지침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지침으로는 부족하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덟째, 현행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도울만한, 관련 모범 사례 및 피해야 할 예시와 같은 실무에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최신 사례집 등이 있어야 한다.

아홉째, 정부부처의 실질적 제도 마련과 함께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열째, 방송 제작자 뿐 아니라 연예기획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수칙과 에이전시 대상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에이전시가 대신 계약을 하고, 구두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출연료 지급에 대한 지침은 방송사 뿐 아니라 에이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항목이라는 점이다.

열한째,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등의 새로운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열두째,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캠페인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방송 제작 현장에서 지적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안들은 적지 않으나, 그래도 본 연구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 중 긍정적인 측면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촬영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도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또 하나 발견한 것은 현재 방송 제작현장에서는 제작비와 추가 인력이 특별히 투입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 방송제작자들은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권익 보장에 가급적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제작비 문제로 인한 야간 촬영 강행 문제도 지적했듯이, 제작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방송 제작 환경의 불완전성과 물리적·경제적 악조건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는 제작비 증액과 연동되며, 현재와 같이 방송 제작자가 최소한의 제작비와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는 한도 내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의 실질적인 실현은 제작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방송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실무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장 교육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한 제작비의 추가 지원 등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 분석

제1절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 범위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방송, 영화, 공연, 음악 산업 등 미디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때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본다면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다. 출연은 하지 않지만 제작과정에서 기술적 또는 보조적 용역을 제공한다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지위에 해당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은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라는 직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에 출연하는 청소년뿐 만 아니라 스태프로 참여한다면 이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외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자이다. 방송, 영상, 영화 등 제작업자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가르킨다.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 교육원/학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와 연예매니지먼트를 겸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양자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으므로 대중문화예술 ‘제작업’과 ‘기획업’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표 3-1>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의 정의와 범위(제2조)

용어	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
대중문화예술용역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의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하는 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사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연예인 지방생이나 연습생의 경우 연예기획사나 제작자와 계약을 맺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권리를 일부 보호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불공정 계약 등을 규제하거나 표준계약서 마련,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사업자의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약관의 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표준약관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제작자 등의 계약내용에 대해 불공정 계약 등을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수나 연예인 등의 표준전속계약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이후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습생과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시정하거나 모범거래기준 등을 마련한 바 있다.

3. 근로기준법과 아동·청소년 보호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자도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 외 근로기준법에는 아동·청소년 근로계약 관련, 근로시간 제한 등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조 1호).

5.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 정책 수립,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이 담겨있다.

6.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정책 총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 복지 등을 담고 있다.

7.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하고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 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청소년보호 사업 추진 등을 다루고 있다.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의 아동·청소년 보호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이용자 권익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이 부재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방송법에서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아동과 청소년’, ‘어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연령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59조).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광고규제가 특별하게 적용된다.

그 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 어린이를 13세 미만,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

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용자 보호(제5장)에서 청소년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청소년보호 시책 마련, 유해매체물의 표시, 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 등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규정 등이 있다.

<표 3-2> 주요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

법률	연령기준	비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근로시간 차등적용 15세 미만/15세 이상
근로기준법	근로 최저연령 15세	취직인허가증 대상 : 13세 이상 15세 미만 근로시간 제한 : 15세 이상 18세 미만 공연예술 참가의 경우 예외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방송법 시행령	어린이 주 시청대상 13세 미만	
방송심의규정	어린이 13세 미만 청소년 19세 미만	등급제 : 모든 연령, 7세, 12세, 15세, 19세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만 14세 미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2절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의 주요 내용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1)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과정에서 청소년보호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제7조 제2항). ①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②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③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④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⑤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⑥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⑦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⑧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⑨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이다. 이 중 방송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항’과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정도를 특별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용역 제공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① 사전설명 의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제10조 제1항). 또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2항).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의무조항이기는 하다.

② 일반 금지행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용역과 관련된 이익이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6조 제1항).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상기 행위를 강요해서도 아니된다(제16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지원 센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17조).

지원센터에서는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자문 지원,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는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3)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청소년보호 특별조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관련된 조항을 제2장 제2절로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보호 원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나 후견인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보호의 의무주체가 국가, 사업자, 부모와 같은 가족에게도 해당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제19조).

②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를 특별하게 마련하고 있다(제20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⁷⁾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광고 제작에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⁸⁾ 청소년유해약물로는 담배, 주류, 마약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청소년유해물건은 음란물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되는 모든 업소를 말한다.

셋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조건과 시정조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8) <청소년보호법> 제2조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제21조).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작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용역제공 계약 또는 기획업무 계약이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제24조).

④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시간제한

우선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제공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용역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청소년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또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15세 이상의 청소년의 용역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이 용역은 금지되는데 15세 이상인 경우는 다음날 학교 휴일여부와 관련없이 청소년과 친권자/후견자의 동의를 있으면 가능하다. 또 국외활동이 있는 경우 예외로 적용되거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⑤ 청소년의 보수청구권

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용역 보수에 대한 청구를 사업자(제작업자와 기획업자)에게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제25조).

<표 3-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청소년 용역제공 시간(제22조~제23조)

연령 구분	용역제공 시간제한	야간노동 제한	
15세 미만	1주일에 35시간 초과 금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 로 청소년과 친권자 (후견인)가 동의한 경 우 가능
15세 이상	1주일에 40시간 초과 금지 ※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청소년과 친권자(후견 인)가 동의한 경우 가 능

※ 국외활동인 경우 야간노동 제한은 예외로 적용.

2. 근로기준법과 아동·청소년 보호

1) 근로 최저 연령

근로기준법 상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다. 즉,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
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
허증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35조).

2) 근로계약 관련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7조 제3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7조 제1항).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2) 근로시간 제한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69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제70조).

3. 방송법과 아동·청소년 보호

1) 방송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사항

첫째 아동 청소년을 음란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무이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루고 있는데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5항).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3호).

셋째 프로그램 등급제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제33조 제4항).

넷째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에 일부 언급되고 있다. 종합편성사업자에게 보도, 교양, 오락 편성의 조화를 요구하고 오락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로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다섯째 방송광고에서 어린이 보호 조항이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3조).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주 시청대상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9조).

또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

2) 방송심의규정에서 어린이·청소년 보호 사항

① 어린이·청소년 연령 기준

방송심의규정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제4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7시~9시, 13시~22시까지를 말한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7시~22시이다. 유료채널은 18시~22시까지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② 범죄사건 보도에서 보호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있는 경우 예외로 하는데 공개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 피해자는 제외함으로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제21조의3). 아울러 범죄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제22조).

③ 범죄묘사 장면에서 보호 문제

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방송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장면’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3항).

④ 사건 재연 장면에서 어린이 출연 금지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제39조 제4항).

⑤ 어린이 방송에서 진행자 전문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에서는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⑥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절(제5절)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정서함양(제43조), 수용수준(제44조), 출연(제4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45조의 2)를 담고 있다. 이중 출연과 관련한 제45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제1항).

둘째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셋째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넷째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잘못된 흡연·음주 문화를 일방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제4항).

다섯째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 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여섯째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표 3-4> 방송에 관한 심의 규정에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구분	내용	조항
범죄사건 보도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제21조의3 제22조
범죄묘사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유희 대상 금지, 제한적 허용	제26조제2항
사건재연	피해자/가해자/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 출연 금지	제39조제4항
진행자 전문성	'어린이' 방송에 진행자 전문성 고려	제44조제3항
어린이·청소년 출연	품성과 정서 해치는 배역 출연 금지, 예외 적용	제45조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방청인 동원 금지	
	부적합한 장소 출입의 긍정적 묘사 금지	
	어린이·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묘사 금지	
	범죄사건 인터뷰 시 보호자 동의 또는 입회 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	
과도한 노출 복장으로 출연, 선정적 장면 연출의 금지		

3) 프로그램 등급제

방송 프로그램이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 정도를 고려하여 연령별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하고 있다.

제3절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지침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등 지침

1)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연기자) 제정

2009년 발표한 가수나 연예인 등의 표준전속계약서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특별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인성교육과 건강지원' 조항이 아동·청소년 등을 보다 고려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기간 설정

연기자의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도한 장기계약은 연예인이 다른 연예기획사로 옮겨 새로운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별한 성과 없이 경과 되는 장기계약은 연예인 기획사 측과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장기계약이 필요하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을 통해 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

가수의 경우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외활동 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② 연예인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

연예기획사 측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을 없애고 나아가 연예인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연예기획사에게 부여하였다. 또 연예인은 연예기획사 측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③ 연예인의 권리 강화

연예인은 연예기획사 측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고 연예기획사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연예기획사 측은 연예인의 연예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예인에게 미리 계약의 내용과 그 일정 등을 설명하고,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준비사항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예인이 미리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한 경우에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연예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연예인의 실연권, 퍼블리시티권 등 전속계약기간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예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⑤ 연예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연예인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예인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⑥ 수익의 분배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에게 원칙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정산자료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연예기획사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한다. 모범거래기준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연예인(지방생 포함), 연예매니지먼트사, 제작사 간의 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예산업의 발전과 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거래기준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에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보호 사항을 중요정보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청소년 연예인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 보호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시로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에 대한 사항’, ‘청소년 연예인이 폭력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 출연 절차에 대한 사항’,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외 모범거래기준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의 금지행위도 제시하고 있는데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 ‘소속 연예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소속 연예인이 자사의 홍보활동에 강제 또는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행위’,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미발표곡 등에 대한 권리를 연예매니지먼트사에게 무조건 귀속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계약 기간에 내에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쌍방이 인정한 채권·채무는 제외)를 승계시키는 행위’, ‘보험가입에 대해서 연예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행위’,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연예매니지먼트사에 유리하게 하는 행위'이다.

<표 3-5>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의 청소년 및 여성 인권보호 조항

구분	하부항목	내용
III. 연예매니지먼트 사의 중요정보 공개	1. 공개정보의 내용	나.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청소년 연예인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예시) -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에 대한 사항 - 청소년 연예인의 폭력적인 장면 노출되는 경우 출연 절차에 대한 사항 -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

<표 3-6>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의 금지행위

항목	예시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	연예활동 여부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 등의 사항을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연예매니지먼트사의 허락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자사의 홍보활동에 강제 또는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행위	홍보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연예인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미발표곡 등에 대한 권리를 연예매니지먼트사에게 무조건 귀속하도록 하는 행위	미발표곡에 대한 계약기간 이후의 수익에 대한 배분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연예매니지먼트사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행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계약 기간에 내에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쌍방이 인정한 채권·채무는 제외)를 승계시키는 행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까지 연예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가입에 대해서 연예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행위	보험금수령인을 연예매니지먼트사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연예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행위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연예매니지먼트사에 유리하게 하는 행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규정보다 연예인에게 불리하게 정하여 연예인의 제소 및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속계약서 조항

3)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계약서를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 계약 체결 강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일부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 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연습생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약관법 제 8조).

연습생들은 데뷔하기 이전으로 일정한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반면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들의 데뷔 여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연예기획사가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도록 했다.⁹⁾

9)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 비용이 계약 기간인 3년간 연평균 약 5,3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 대상 약관 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약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들이 계약 해지 등으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 등 직접 투자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8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중 교육비용은 약 62%(91만 원)라고 보았다.

②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연예기획사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소속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③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연예기획사가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연습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고(약관법 제11조 제2호), 연예기획사의 계약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연습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약관법 제9조 제3호).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④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연예기획사가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 내용을 연습생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습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연예기획사의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등 추상적 계약 해지 사항을 연습생 의무로 정할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이 어려워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후 해당 연예기획사들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 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 시 연습생에게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경우,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조치하여 연습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가수, 배우의 방송출연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2013년 제정했다.¹⁰⁾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속사(매니지먼트사) 간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사와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제작사와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매니지먼트사와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는 방송출연료, 촬영시간, 휴식시설, 미성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출연료와 관련된 사항이다.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촬영시간에 대한 사항이다. 최대촬영시간은 일일 18시간(가수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일 최대촬영시간은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재촬영 등 추가의 촬영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성인 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의 청소년 용역시간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휴식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촬영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휴식시설에는 대기실, 화장실, 식사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사고조치와 관련한 사항이다. 방송사는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0)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2020년 8월 12일 검색기준.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다섯째 권리의 귀속 문제이다. 방송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가수나 배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수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을 따른다.

여섯째 계약불이행 관련이다. 방송사든 대중문화예술인이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출연 회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일곱째 미성년자 보호 관련 조항이다. 가수나 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조항들이 표준계약서에 모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한계로 보인다.

제4절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 현황과 특징

1.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제작 가이드라인

1) KBS

방송제작 실무지침인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는 ‘12.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별도로 다루고 있다. KBS가 어린이와 청소년 전인교육에 기여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중장기적 편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자에 대해 제작자는 다음과 같이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① 보호자 동의 : 어린이와 인터뷰하기 전에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수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영향: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가 모방하기 쉬운 위험한 방식의 행위를 담은 방송을 어린

이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나 많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콘텐츠에 다루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폭력적 내용, 동물학대, 자살, 자살기도, 자해, 섭식장애, 음주, 흡연, 마약물 복용, 성행위, 알몸 묘사 등은 어린이 주 시청 프로그램,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다루어서는 안된다.

③ 익명 : 청소년과 관련된 반사회적 이슈나 범죄행위를 촬영할 때 청소년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모가 신원을 밝히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제작자는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14-9. 소년법 조항 참조).

④ 인터뷰 시 주의점: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필요한 말을 취해 내는 것보다 그 어린이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여 인터뷰 시 경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⑤ 방송에 참여한 어린이의 안전: 어린이가 안전한 상황에서 방송에 참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인솔자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한다.

⑥ 출연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 어린이와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능하면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출연 어린이가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사전설명 한다’, ‘어린이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제공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KBS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극적 권익보호뿐 아니라 적극적인 권익보호 원칙을 수립하고 있고 방송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까지 전제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연자와 관련해서는 인터뷰에 대한 동의절차, 개인정보 보호(익명처리), 인터뷰 시 경어 사용, 어린이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 인솔자나 안전요원 배치, 참여 시 가능하면 사전설명과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모범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폭력성, 불법 장면에 대한 일방적인 제작 지침은 있으나 그러한 문제적 장면을 제작할 때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제작 지침은 미비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의 구분이 모호하다. 어린이만 적용하여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든지 둘 다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KBS의 가이드라인은 “‘가능하면’ 사전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어린이 개인정보 제공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요이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처럼 구체적 행동지침이나 필수적 절차보다 선택적 사항으로 여지를 남겨둔 것은 한계이다.

2) MBC 제작가이드라인

MBC는 비교적 간단하게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MBC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어린이, 청소년 조항은 다음과 같다(8. 어린이, 청소년 중 3항, 4항). ③ 방송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죄, 폭력, 성, 음주, 흡연 등에 대한 묘사는 되도록 최소화하고 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장된 표현을 피해 모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어린이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경우라도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MBC의 제작가이드라인은 어린이, 청소년 출연 시 유의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소 모호한 조항으로 남아 있다.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이라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어떤 역할인지 다소 애매하다. 성범죄 등 문제가 있는 역할에 대해 어린이 청소년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충분한 설명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SBS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수칙

SBS는 8개 항목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원칙’,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것’, ‘출연결정의 투명성과 보호자 동반’, ‘안전문제’, ‘건강문제’, ‘신체접촉과 유의사항’, ‘촬영스케줄’, ‘언어사용과 행동’

등 8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든 분들은 항상 자신의 가족이 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② 어린이 출연자들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나 언행은 삼가고, 항상 그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③ 어린이 출연자의 출연 결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및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은 보호자 동반 자리에서 자세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촬영 현장에서 어린이 출연자의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어른의 기준에서 판단하여 무리하거나 위험한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⑤ 어린이 출연자들의 건강 문제에 늘 신경 써 주십시오, 성인과는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주십시오. ⑥ 촬영 진행상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의상 정리 및 마이크 착용 등),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친근감을 표시하는 가벼운 접촉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촬영 스케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와 상의하고, 촬영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스케줄이 갑자기 변동될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해 주십시오. ⑧ 어린이 출연자 앞에서는 모든 언어 사용과 행동을 주의해 주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작은 표현 하나도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나 외모에 대한 평가, 연기력에 대한 비교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SBS의 가이드라인은 출연 및 제작과정, 안전/건강 문제, 신체접촉과 언어 등 어린이 출연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균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언어사용에 있어 연기력, 신체나 외모에 대한 평가 등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투명한 출연결정,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등이 갖는 한계점,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촬영 스케줄에 대한 상의 대상자가 주로 보호자에 머물고 있어 어린이의 의사가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는 점, 친근감을 표시하는 가벼운 접촉도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다소 가벼운 접촉도 허용되는 것인지의 문제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4) EBS 제작가이드라인

EBS 제작가이드라인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며, EBS가 이들의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맞는 다양하고도 양질의 교육 및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고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EBS 제작가이드라인에서 유아는 2세~8세 사이의 자,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자,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유아프로그램,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용 수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학교 교육의 보완,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 교육환경의 변화, 학교 외 교육방송, 유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트랜스 미디어 적용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과 관련해서는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 출연 금지 원칙,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 동원 금지, 부적합한 장소 출입의 긍정적 묘사 금지, 흡연음주 장면 묘사 금지, 민감한 주제의 경우 보호자 동의, 인터뷰 시 제작진 유도 유의, 수업 시 학교 동의, 과도한 노출 복장 금지, 안전문제, 사전설명 의무, 개인정보 주의, 학습권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어린이·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유아어린이·청소년을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유아어린이·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유아어린이가 어릴수록, 다루는 주제가 민감할수록 반드시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범죄 피해를 당한 유아어린이·청소년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유아어린이와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그 유아어린이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⑦ 어린이가 수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⑧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

는 복장으로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⑨ 방송에 참여한 유아어린이가 안전한 상황 속에서 방송에 참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유아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아어린이들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인솔자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한다. ⑩ 출연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사전설명을 한다. ⑪ 유아어린이·청소년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제공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아어린이·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⑫ 과외의 활동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양질의 보충 학습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EBS의 가이드라인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유아의 연령 기준을 2세~8세 사이라고 해서 8세 포함인지 아닌지가 다소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는 0세부터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2세 기준의 근거가 취약하다.

또한 많은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재인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었다. 학습권의 조항도 문제가 있었는데, 보충 학습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형성할 필요성만 인정하고 구체적 행동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2.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제작 가이드라인

1) TV조선

TV조선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제작 가이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론, 방송제작 실무지침,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미성년자 출연자 보호, 방송·편성 지침 5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방송제작 실무지침과 미성년자 출연자 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송제작 실무 지침

① 전문가와의 공조 시스템 활용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제작 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유아교육 전문가, 아동 미술 전문가, 심리 상담 전문가, 교육학자, 사회학자 등 전문가와의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② 보호자 동의

· 인터뷰 전에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수업 중에 프로그램 참여 시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이혼한 자녀 등 특별한 경우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의 동의

· 미성년자 출연자들에게 프로그램의 형식, 기획의도, 제작과정, 내용, 출연 후 발생 가능한 사건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출연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

③ 영향 :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원칙 하에 주의 필요. 미성년자 출연자가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로 묘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미성년자 출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미성년자 출연자와 또래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④ 익명 : 반사회적 이슈나 범죄행위를 촬영할 때,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청소년 신원 공개에 대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청소년이 신원 공개에 대해 동의했다라도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여 꼭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얼굴과 이름,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학급 소개 금지

·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 문제아로 낙인찍혀있던 어린이가 출연 이후 더 위축되고 소외되며 놀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고려

·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답는다’ ‘해결책을 찾아준다’는 미명 아래 어린이 초상권 침해 금지

⑤ 인터뷰 기술 : 어린이·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필요한 말을 취해서는 안 된다.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며 인성과 언어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

· 어린이 출연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어린이 출연자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질문을 주로 어린이에게 던져 자극적인 답변을 유도하지 않는다.

· 어린이 출연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인격을 존중하여 인터뷰 시 되도록 존대어를 사

용하도록 한다.

⑥ 소재의 선택과 표현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유의 사항과 묘사에 대한 금지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⑦ 어린이 안전 : 방송에 참여한 어린이가 안전한 상황 속에서 방송에 참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 단체 출연의 경우 인솔자나 안전요원의 배치 의무화.

▲ 미성년자 출연자 보호

① 미성년자 출연자의 근로권과 학습권 보호 :

· 연소자 근로법 규정에 맞는 근로 시간(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제한), 야간 촬영 금지. 불가피하게 촬영 지연, 야간/휴일 촬영 시 보호자 동의 절차. 연령대별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7> 연령대별 근로시간 권장사항

구분	1일 최대시간	촬영시간대	공연(리허설)인 경우
5세 미만	2시간	09:30 ~ 16:30	최대 5시간
5세~9세	3시간	09:00 ~ 16:30	최대 7시간 30분
9세 이상	4시간	07:00 ~ 19:00	최대 9시간 30분

· 미성년자 출연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촬영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다.

· 미성년자 출연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한다. 수업시간과 겹치도록 촬영시간을 정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교와 보호자 동의 하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미성년자 출연

·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키지 않는다.

·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방청인으로 동원

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가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으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한다.
- 부적합한 장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③ 미성년자 출연자의 성 보호

-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의상 착용 금지, 촬영 금지. 미성년자 출연자가 원치 않는 의상 강요 금지.
- 신체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 노출 춤이나 동작 강요 금지. 성인 출연자, 제작진들은 미성년자 출연자의 춤, 연기에 대해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출연자들의 연령에 맞는 역할 부여. 특히 19세 이상 등급으로 판정 난 가수의 노래와 춤을 미성년자가 따라하지 않도록 한다.
- 성인 출연자, 제작진은 미성년자 출연자와의 육체적 접촉 피해야 한다.
- 인격체로서 어린이 고려. 방송에서 화장실, 목욕탕에 남녀 어린이를 함께 들여보내는 연출을 하지 않는다.

TV조선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제작 가이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비교적 항목별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방송제작을 할 때 제작진의 유의사항으로 전문가 공조, 보호자 동의, 영향에 대한 고려, 익명처리, 인터뷰 시 유의사항, 안전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 출연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구분하여 가이드하고 있다.

TV조선의 방송제작 시 유의사항은 다른 방송사와 대동소이 하나 미성년자 출연자 보호 조항에서는 몇 가지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근로시간에 대해 연령별 구체적인 권장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 성보호 관련하여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만 제시하고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규정을 제외하고 있는 점, 연령별로 권장하고 있는 촬영시간과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점, 학

습권과 휴식권에 대한 선언적 조항, 노출 의상 착용 및 촬영 금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JTBC

JTBC는 2020년 4월 29일 아동·청소년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로 19세 미만인 자를 주요 대상으로 했고, 인터뷰 등 단순 출연과 방청 참여에 대해서는 장르별 촬영 수칙으로 다루고 있다.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촬영·휴식시간, 사전설명과 보호자 동의,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안전, 아동·청소년 신원 및 정보 보호, 장르별 촬영 수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촬영·휴식 시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정의와 분류를 따른다. 즉 15세 미만 출연자의 촬영시간은 1주일 35시간 초과금지, 야간 촬영금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촬영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호자 동의를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JTBC의 가이드라인은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자정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5세 이상 출연자는 1주일 40시간 이내 원칙, 출연자 합의의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연장 가능하다. 보호자의 동의가 이는 경우 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국외 활동인 경우 예외로 적용하나 출연자의 안전한 이동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작진은 출연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전설명과 보호자 동의

첫째 제작진은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출연 혹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촬영 형식, 주요 내용, 출연이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제작진은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보호자란 부모, 법적 후견인, 그 외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담임 선생님, 소속사 매니저 등)을 의미한다.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현재 출연자와 살고 있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때 보호자가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제작진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출연자의 의사와 권익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

셋째 주의사항으로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작진이 출연자가 방소 이후 받게 될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출연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출연자 혹은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사유가 존재할 때 상급책임자 허가를 받아 협의하거나, 부서장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③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안전

원칙적으로 모든 위해보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격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체적 성적 안전과 보호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관리하여 촬영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작 중에는 출연자의 안전을 책임질 제작진 혹은 보호자가 상주해야 한다.

둘째 신체적 위해 금지와 접촉 주의이다. 특히 촬영 일정에 쫓기는 상황, 연출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 친해서 장난치는 상황 등의 이유를 포함, 제작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연자에게 신체에 충격을 주거나 가격할 수 없다.

이에 [예시] 로 ‘성인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귀엽다, 예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신체접촉 금지, 제작에 필요한 과정(의상, 헤어스타일 정리, 와이어리스 마이크 착용) 진행 시 출연자에게 공지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정서적 위해 금지이다. 특히 제작진이 의도한 바를 도출하기 위하여 출연자에게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 등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가상의 상황을 차용한 구성과 촬영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성적 위해 금지이다. 제작진은 출연자에게 성적인 위해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성차별, 음담패설, 성에 대한 편견 포함)을 할 수 없다. 외모나 신체를 평가하는 말도 삼가야 한다. 출연자에 대한 평가는 성실함, 태도, 집중력 등 그들의 자질과 가능성을 계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섯째 출연자에게 모든 유해 행동이 발생한 경우 제작진은 지체없이 이를 중단시켜 출연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작진은 위해를 가한(혹은 가하려 시도한) 자를 제작 현장에서 즉시 분리시키고 상급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받은 책임자는 피해자가 회사 소속인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요청 및 합당한 인사 조치,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 고용주에게 고지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한다.

여섯째 특정배역 촬영 시 유의 사항이다. 흡연·음주 등 미성년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포함된 장면을 묘사하지 않으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출연진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행위르 강요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금지이다. 제작진은 언어폭력을 하면 안된다. 촬영 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도 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행(언성 높임,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을 삼가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 신원 및 정보 보호

첫째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반사회적인 이슈나 범죄 행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뷰 시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제작진은 방송 출연으로 인해 출연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유 또는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⑤ 장르별 촬영 수칙

첫째 취재·인터뷰 수칙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진에게 자극적인 답변을 유도하거나 인터뷰의 전체 맥락과 다르게 특정 부분만 취사 선택하여 방송하면 안 된다. 취재·인터뷰 당시 동의를 했어도 방송에 나가길 원치 않을 경우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출연자가 자택에서 촬영하는 경우 제작진 상주와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연자는 자택에서 신체적,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촬영, 휴식시간 적용의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셋째 프로그램 성격상 사전에 프로그램 설명과 출연 동의가 어려운 경우 촬영 종료 후 출연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일반인 아동·청소년 출연자(단순 방청 포함)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의 촬영, 휴식시간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JTBC의 가이드라인도 대체로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촬영시간은 대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을 따르고 있으나 15세 미만인 경우 동의가 있더라도 야간촬영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JTBC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이다. 다만 야간촬영의 허용 주체를 15세 미만이나 이상의 경우 모두 '보호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사는 제외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휴식권과 관련된 조항도 마련되어 있으나 법률의 선언적 문구 형태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제작진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출연을 결정하도록 한 점, 제작진에게 출연자와 보호자 사이의 객관적 관점 제시,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급책임자 허가나 부서장의 결정 등 출연 절차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셋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을 책임질 제작진 혹은 보호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 한 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해행위가 발생할 시 제작진이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 상급책임자에 보고 의무와 상급책임자의 의무 등 구체적인 행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실효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넷째 자택 촬영의 경우 촬영시간과 휴식시간 적용의 예외로 간주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작진 상주와 보호자 동반이 어느 범위까지 의미하는지(심야시간대에도 제작진이 자택에 상주한다는 의미인지)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3) MBN

MBN의 어린이·청소년 보호규정은 대부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형식을 띄고 있다.

제1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2조 수용수준, 제3조 출연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중지, 담당PD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3번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담당PD는 징계한다.

MBN의 아동·청소년 보호 제작가이드라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정도 제시하고 있고 대중문화예술평업발전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된 법률 조항 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작진들이 최소한의 법률 정보도 얻지 못하는 한편 출연자들에게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4) 채널A

2017년 12월 제정된 채널A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은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수용수준, 출연, 취재로 총 5조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출연자와 관련해서는 품성과 정서에 해치는 배역에 출연금지, 성인 대상 방청원 동원 금지, 부적합한 장소 출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음주·흡연 장면 묘사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신중을 기한다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다. 동일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채널A 가이드라인에서 특기할 만한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

첫째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둘째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선정적·폭력적 묘

사 자제,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신상 정보 공개 주의 의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 보장 및 사진과 영상 공개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② 취재

첫째 재난 및 범죄 피해 보도 시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도리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이 동의와 입회하에 행하도록 유의한다.

둘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인터뷰를 하거나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주민, 관계자를 인터뷰할 경우 이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채널A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및 범죄 피해 보도 시 13세 이하 미성년자 취재 금지 원칙,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취재보도 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등 구체적인 조항은 의미가 있었다. 다만 재난이나 범죄 취재보도에만 국한되어 아동·청소년 출연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 범죄사건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만 집중하여 가해자에 관련된 조항은 미비하다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

제 4장 해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현황

제 1 절 미국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 현황

1. 미국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법

1)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노동법

미국에선 아동·청소년 시청자를 향한 폭력 영상 송출에 관한 논의가 197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92년도에 방송사들은 폭력물 관련 방송규제 원칙 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방송규제 원칙 안에 포함된 방침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내 폭력이 포함된 내용은 어떠한 종류든지 간에 일절 송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폭력물 송출 관련 규제원칙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에 관한 관심 또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에 대한 노동법이 제정되어 미국 내 모든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대중문화예술 활동이 허용되는 최저 나이와 수면권, 건강권, 그리고 학습권 보장의 철차와 방법이 일반노동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¹²⁾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별로 세부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노동규정이 다르며, 크게는 엔터테인먼트 업

11) 김서현, (2019.12.12). EBS 잠정 중단 결정에도 “보니하니’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라” 비판 여전.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63>

12)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저수준의 대우를 법으로 보장하는 관련 법령으로 주마다 달리 별도로 규정한 노동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미국 연방의 근로기준법은 공정근로기준법으로 FLSA(Fair Labor Standard Act)라고 하나, 연방의 공정근로기준법은 구체적인 근로규약을 명시하지 않아 실상 구체적인 노동법규를 적용하는 역할은 고용차별금지법, 노사관계법 및 고용관계법 등의 규제가 담당한다.

계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노동규정이 존재하는 주와 존재하지 않는 주, 고용에 노동 허가증을 요구하는 주와 별도의 노동 허가증 없이 바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주로 구분된다. 미국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17개 주가 있지만,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인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3개의 주에선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주별로 명시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1> 주별 아동·청소년 출연자 노동 관련 조항 현황표

주	연예계 노동규정	노동 허가증	비고
앨라배마	0	X	
알래스카	0	0	
애리조나	X	X	
아칸소	0	0	
캘리포니아	0	0	
콜로라도	0	X	
코네티컷	0	X	
델라웨어	0	0	
플로리다	0	0	
조지아	0	0	
하와이	0	0	
아이다호	0	X	
일리노이	0	0	
인디애나	0	X	
아이오와	0	X	
캔자스	X	X	
켄터키	X	X	
루이지애나	0	0	
메인	X	0	
메릴랜드	0	0	
매사추세츠	0	0	
미시간	0	0	
미네소타	0	0	
미시시피	X	X	
미주리	0	0	16세 미만에만 해당된다.

몬태나	X	X	
네브래스카	O	O	아동·청소년 출연자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네바다	X	X	
뉴햄프셔	X	X	
뉴저지	O	O	16세 미만에만 해당된다.
뉴멕시코	O	O	
뉴욕	O	O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교육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16~17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고용 증명서가 필요하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시장 또는 최고 경영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노스캐롤라이나	O	O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해당 군 사회 복지국에서 발급한 청소년 고용 증명서가 필요하다.
노스다코타	O	O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부모의 허가 및 노동 허가증이 필요하다.
오하이오	X	X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클라호마	X	X	
오리건	O	O	제작자는 단기 (5일 이하) 일자리를 노동국에 등록해야 한다. 15일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일할 수 없음. 장기 노동의 경우 14~17세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고용 허가가 필요함.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노동 산업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펜실베이니아	O	O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노동산업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술이 있는 곳(술집 등)에서는 일할 수 없다.
로드 아일랜드	X	X	
사우스캐롤라이나	X	X	
사우스다코타	X	X	
테네시	X	X	
텍사스	O	X	

유타	X	X	
버몬트	O	O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학교 시간 외에 고용될 시에는 노동산업부 장관의 노동 허가 증명서가 필요하다.
버지니아	O	O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공연, 콘서트, 광고 발표 또는 연예 행사가 열리는 극장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일할 시에는 고용 허가증이 필요하다. 다만, 비영리 춤, 곡 연주, 비영리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에는 고용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비영리 공연 예술 학교는 수업과 관련된 공연에 대해서만 고용 허가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워싱턴	O	O	노동부에서 발급한 고용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해당된다.
웨스트 버지니아	X	X	
위스콘신	X	X	술집, 카바레, 댄스홀, 나이트클럽, 선술집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 촬영 등 제작 활동 금지한다.
와이오밍	O	X	

아울러 기본 노동법 외에 주별로 조금씩 다른 아동·청소년 출연자 고용 관련 주요 조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2> 참조).

<표 4-2> 주별 아동·청소년 출연자 노동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주	법/의견
앨라배마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고용증명서 또는 나이 증명서 없이 일할 수 있다.
알래스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고용 허가증이 필요하며 근무 시간, 근무 조건, 금지된 관행이 주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스튜디오 교원의 고용 의무 규정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애리조나	제작 시작 전 제작자가 노동부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이름, 주소, 고용 기간, 장소, 시간 및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화, 연극, 라디오 또는 TV 제작에서 고용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적용되는 노동법에서 면제될 수 있다.
아칸소	연예 산업에 고용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허가증 발급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허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업 상태에 대한 교장의 서면 진술서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 고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노동청에서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연속 5일 이하로만 일할 수 있는 경우, 학년 당(매년) 최대 5번의 결석만 학교에서 면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학생이 결석 기간에 놓친 모든 과제와 시험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육청에서 고용을 허용한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신탁에 따로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콜로라도	미국 의회 조사국(CRS) ¹³⁾ 의 아동·청소년 고용 규제를 따른다. 다만, 콜로라도주의 법원은 모델 및 공연자와 관련된 아동·청소년 고용에서 필요한 미국 의회 조사국의 몇몇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코네티컷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노동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 과정에 나이 증명서(age certificate)가 필수로 요구된다.
델라웨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노동부로부터 특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부로부터 승인된 기간 안에만 연예 산업에서 일할 수 있다.
플로리다	제작자는 연예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수행한 일의 날짜, 일수, 위치 및 종료 날짜를 주에 상시 보고해야 한다.
조지아	연예 산업에 고용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노동청장의 서면 동의를 포함한 고용 허가증이 필요하다.
하와이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제작자로부터 고용 서면 동의서(written consent)를 받아야 한다. 서면 동의서는 제작자가 파일로 상시 보관한다.
아이다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특정 연예계 활동을 금지한다.
일리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교육감이 승인한 승인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연예 산업에 고용된 모든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인디애나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조건이 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의 복지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리허설, 출연 및 공연 시 부모 또는 보호자를 상시 동반해야 한다. 아울러 카바레, 댄스홀, 나이트클럽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아이오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부모의 허락하에 한 달에 12시간 미만으로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학교 수업 외의 시간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 노동청장은 연기자로 고용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적용되는 모든 노동법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캔자스	연예 산업에 고용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미성년 노동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1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생후 15일 이상이며 일을 소화하기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서면 증명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영화 촬영장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는 예외로 노동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수입 일부를 신탁에 따로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켄터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수입 일부를 신탁에 따로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연예 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메인	연극 또는 영화배우로 일하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 노동법에서 면제된다. 16~17세에는 고용 관련 어느 제한도 없다.
메릴랜드	노동청으로부터 특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증은 부모 또는 후견인과 제작자가 서명하고 공증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법무부 장관의 서면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하루에 2회 이하, 일주일에 8회 이하 일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연예계, 연극 또는 영화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일시적인 노동 시간제한을 면제할 권한이 있다.
미시간	15일에서 17세 사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공연 예술 승인 신청서는 미시간 노동경제기회부(Dept. of Labor and Economic Opportunity)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네소타	아동·청소년은 최소 나이 규정을 제외하고 모든 아동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청은 노동 시간제한 규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시시피	특이사항 없음. 주의 노동법을 따름.
미주리	나이 증명서와 함께 부모의 서면 동의 및 근로의 성격과 기간을 명시한 고용주의 서면 진술서가 필요하다. 노동부 표준국장은 노동 시간제한 규정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몬태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은 배우, 모델 또는 연기자로 고용될 수 있다.
네브래스카	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에서 발급한 특별 허가증이 있으면 연기자로 고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동 시간제한 규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네바다	연예 산업에서 91일 이상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카지노 또는 리조트 호텔은 필요시에 과외 또는 기타 동등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의 일부를 신탁에 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뉴햄프셔	특이사항 없음. 주의 노동법을 따름.
뉴저지	다음의 경우에만 고용될 수 있다: 부모의 동의가 있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노동청에서 승인한 근무지에서 일하며, 성인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고, 공립 학교에 다니지 않고, 주에서 허가된 정식 교육을 받고 있으며, 여름 방학 중이 아닌 경우.
뉴멕시코	교육감, 학교 교장, 기타 교직원 또는 노동/산업 부문 책임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항상 취업 허가를 주로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상 위협하지 않은 노동으로 인증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험 고용 금지 사항을 따라야 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학기 중에는 주 18시간, 비 학기 중에는 주 40시간이다. 연예 산업에서 영화, 연극, 라디오와 TV 제작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고용하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자는 교육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이 시작되기 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전 승인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인증서는 1년 동안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둘 중 더 짧은 기간) 유효하다. 고용주는 10명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공인된 스튜디오 교원을 배정해 주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공연자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항상 고용지에 공인 트레이너 또는 관련 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뉴욕	증명서와 허가증을 얻으려면 부모의 서면 동의 (가출 아동 제외), 나이 및 신체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소득 일부를 신탁에 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나이 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의 일부를 신탁에 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스다코타	아동·청소년의 출연이 아동·청소년의 도덕, 건강, 안전, 복지 또는 교육에 해를 끼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되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오하이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보수가 없어야 하며, 교회,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 자선활동, 교육 활동 목적으로만 고용될 수 있다.
오클라호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대리인이 있는 독립된 직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법률에서 면제된다.
오리건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부모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서명, 사회 보장 번호 ¹⁴⁾ 및 나이 증명서가 필요하다.
펜실베이니아	고용 허가증을 받으려면 부모와 제작자가 서명한 신청서와 공증인의 날인이 필요하며 이에는 교육, 지도, 건강, 복지 및 공연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보호 및 보존 조항을 포함한다.
로드 아일랜드	연예인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닌 소속사에 소속된 독립적인 직원이기 때문에 주에서는 이러한 고용을 규제하지 않으며, 따라서 규제는 로드 아일랜드의 지역별 규제를 따른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상업용 성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71-3105-d 조항(아동·청소년은 주의 노동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영화, 라디오, TV, 또는 연극 제작에서 배우 또는 연기자로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출연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우스다코타	60-12-1 조항(아동·청소년은 주의 노동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영화, 라디오, TV, 또는 연극 제작에서 배우 또는 연기자로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테네시	50-5-107 조항(아동·청소년은 주의 노동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도 일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소득 일부를 신탁에 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텍사스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에이전시와 부모가 서명 한 승인 신청서, 나이 증명서와 본인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 계약은 7년 이하로 제한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의 일부를 신탁에 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타	특이사항 없음. 주의 노동법을 따름.
버몬트	고용 인증서 취득을 위해서는 부모의 서면 동의서, 노동 및 산업부 장관의 동의서, 나이 증명서와 학교 성적표가 필요하다. 영화, 연극 제작,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서 배우 또는 연기자로 고용되거나 야구 배트걸/배트보이로 고용된 아동·청소년·청소년은 부모 또는 후견인과 노동청장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자정까지 또는 자정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

버지니아	아동 노동 규정은 영화, 연극, 라디오 또는 TV 제작물에서 배우 또는 연기자로 고용된 아동·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 허가를 받으려면 고용 허가 양식을 아동·청소년의 부모, 보호자 또는 관리인이 작성하고 공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고용 의사 양식을 고용주가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워싱턴	영화, 비디오, 오디오 또는 연극 제작에서 배우 또는 연기자로 고용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취업허가증이 필요하다.
웨스트버지니아	모든 나이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영화, 연극, 라디오 또는 TV 제작물에서 연기하거나 공연하는 데에 있어 증명서 또는 별도의 허가 없이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
위스콘신	12~18세 사이 아동·청소년이 대중 엔터테인먼트(public entertainment)에서 일할 시에는 고용 허가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와이오밍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자선 단체와 같은 봉사의 목적으로만 그리고 건전한 장소에서만 일할 수 있다. 또한, 연기 또는 공연하는 곳은 알코올이 나 맥아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법규가 주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본 고에 서는 미국 내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아동·청소년 관련 법규가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 관련 권고 사항을 ①허가 및 의무사항, ②근로시간, ③학습권 보장, ④성 보호 관련, ⑤그 외의 기타 법률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3)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미국 의회를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며,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하원 및 상원의 위원회에 정책 및 법적 분석을 제공한다. 의회 예산처(CBO), 기술평가원(OTA), 미국 연방 회계감사원(GAO) 와 함께 미국 의회의 4대 입법보조 기관 중 하나이다.

14)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SN)는 미국에서 출생과 함께 공식으로 부여되는 개인 신원 번호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허가 및 의무사항

미국은 아동·청소년 고용을 원할 시 고용주와 아동·청소년 고용인 당사자들에게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송도 예외는 아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출연 허가 의무사항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3> 참조).

<표 4-3>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출연 허가 관련 의무사항

뉴욕 ¹⁵⁾	캘리포니아 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 16세~17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에 고용 증명서가 필요하다.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뉴욕 시장 또는 해당 방송국 최고 경영자(CEO)의 승인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에 캘리포니아 노동표준 시행국(California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으로부터의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직접 캘리포니아 노동표준 시행국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안 제55조, 59조, 1311조 및 1398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무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캘리포니아 노동표준 시행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고용 허가증이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기록 확인서, 신체검사 확인서가 있다. 허가증은 승인받는 특정 기간에만 유효하며, 근무 기간 중 허가증의 승인 기간이 만료될 시에는 필수로 갱신하여야 한다.

고용 허가 신청서는 지역별 부서별 담당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발급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신청서에 본명, 나이, 생년월일, 주소, 성별, 키, 몸무게, 머리카락 색 등

15) Child Entertainment Laws As of January 1, 2020, Retrieved from <https://www.dol.gov/agencies/whd/state/child-labor/entertainment>

16) Employment law handbook, California Child Labor Laws - Entertainment Industry, Retrieved from, <https://www.employmentlawhandbook.com/wage-and-hour-law/state-wage-and-hour-laws/california/child-labor-laws/entertainment-industry/>

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해당되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성적표 및 출석에 대한 서면 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나이, 학교 성적표, 출석 및 건강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증거를 교육청에 고용 허가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 상태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에서 요구하는 일 또는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연예계 고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연예계 고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허가증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노동규정의 조건 및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로시간, 건강, 안전, 도덕 및 기타 고용 조건을 충족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허가증의 고용 허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갱신 신청은 기존 허가증 습득 시와 과 같은 방식과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뉴욕주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에 당국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증은 노동법안 제151조에 따라 뉴욕주 노동부에서 발급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16세~17세라면, 별도로 출연에 고용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편,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보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고용에 조금 더 까다롭다. 만약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뉴욕시장 또는 해당 방송국 및 제작 프로덕션 회사 최고 경영자(CE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모두 이러한 허가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고용에 따른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3) 근로시간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방송 출연 근로시간은 학기 여부와 나이 별로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촬영 시간과 휴식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의무화되어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방송 출연 근로시간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3-4> 참조).

<표 4-4>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별 근로시간 관련 법

연령	뉴욕 ¹⁷⁾	캘리포니아 ¹⁸⁾	
생후 15일 ~ 생후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5시 이전에는 호출 및 촬영 활동이 불가하다. - 오전 12시 30분 이후에는 호출 및 촬영 활동이 불가하다. - 하루에 최대 2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20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1시간 40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2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20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한 번에 30초 이상 100피트 이상의 초점 강도의 빛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오전 9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시간대 또는 오후 2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시간대에만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1시간 40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생후 6개월 ~ 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4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2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2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4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2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2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2세 ~ 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6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3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3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4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2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3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레크레이션 및 교육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6세 ~ 9세	<p>생방송 출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5시 이전에 호출이 불가하다. - 아동이 다음날 수업이 있을 경우 	<p>녹화방송 출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5시 이전에 호출이 불가하다. - 아동이 다음날 수업이 있을 경우 	<p>학기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8시간 촬영 장소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4시간 이하로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남은 3시간은 학교 수업, 1시간은 휴식과 레크

<p>촬영 활동은 최대 오전 12시(자정)까지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다음날 수업이 없을 경우 촬영 활동은 최대 오전 12시 30분까지 가능하다. 	<p>촬영 활동은 최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다음날 수업이 없을 경우 촬영 활동은 최대 오전 12시 30분까지 가능하다. 	
<p>학기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5시 이전에 호출이 불가하다. - 아동이 다음날 수업이 있을 경우 촬영 활동은 최대 오전 12시(자정)까지 가능하다. - 아동이 다음날 수업이 없을 경우 촬영 활동은 최대 오전 12시 30분까지 가능하다. <p>방학 중(비학기) <리허설, 오프닝 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10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9시간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 	<p>학기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8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4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4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p>방학 중(비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8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6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 	<p>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p> <p>방학 중(비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8시간 촬영 장소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1시간은 아동의 휴식과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를 시 최소 2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9세 ~ 16세	<p>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1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p> <p><테크니컬 리허설, 사전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12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9시간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2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p>학기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9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5시간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4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p>방학 중(비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9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7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2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p>학기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9시간 촬영 장소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5시간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다. - 9시간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3시간은 학교 수업, 1시간은 휴식과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p>방학 중(비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9시간 촬영 장소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7시간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다. -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2시간은 휴식과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6세 ~ 18세		<p>학기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10시간 촬영 현장에 	<p>학기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10시간 촬영 장소에 머물

		<p>머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6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4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p>방학 중(비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10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9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1시간)은 아동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p>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6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3시간은 학교 수업, 나머지 1시간은 휴식과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연속 이틀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수업시간에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던 승인을 받은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일할 수 있다. <p>방학 중(비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최대 10시간 촬영 장소에 머물 수 있다. - 하루에 최대 8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 8시간 촬영 활동 시 1시간의 휴식과 레크레이션 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기타			<p>메이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집에서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시간 역시 촬영 활동 시간으로 간주한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링이 불가하다. <p>식사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시간 제공을 위해 하루 30분 추가로 근무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 스튜디오 내에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무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24시간 중에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나이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안 제 55조, 59조, 1398조에 따르면, 생후 15일 이상 6개월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최대 2시간 동안만 근로 장소에 머무를 수 있다. 아울러, 하루의 근로시간은 2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건에서도 한 번에 30초 이상 100ft 촛불 강도의 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을 위해 생후 15일 이상 6주 미만 영유아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3명 이하의 영유아마다 간호사와 스튜디오 교사가 있어야 하며, 생후 6주에서 6개월 사이의 영아를 고용하는 경우, 10명 이하의 영아마다 간호사 1명과 스튜디오 교사 1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생후 6개월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최대 4시간 동안 근로 장소에 있는 것이 허용되며, 이 4시간 중 근로시간이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휴식과 여가의 균형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2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최대 6시간 동안 근로 장소에 있는 것이 허용되며 이 6시간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휴식과 여가 및 교육의 균형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6세 이상 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최대 8시간 동안 근로 장소에 있는 것이 허용되며 이 8시간 중 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이며 학기 중이면 최소 3시간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튜디오 교원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최대 1시간의 휴식과 여가를 주어야 하며, 학기 중이 아닐 경우 근로시간을 최대 6시간까지 늘리고 1시간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주어야 함을 주법에 강조하고 있다.

한편, 9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대상으로는 앞선 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보다 규제가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9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최대 9시간 동안 근로 장소에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9시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학기 중이면 5시간 이하의 근로와 최소 3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함

17) Department of Labor(New York State), Child Performer Permitted Working Hours, Retrieved from <https://labor.ny.gov/formsdocs/wp/LS559.pdf>

18) Employment law handbook, California Child Labor Laws - Entertainment Industry, Retrieved from, <https://www.employmentlawhandbook.com/wage-and-hour-law/state-wage-and-hour-laws/california/child-labor-laws/entertainment-industry/>

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스튜디오 교원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최소 1시간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주어야 하며 학기 중이 아닐 경우 근로시간을 최대 7시간까지 늘리고 1시간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최대 10시간 동안 근로 장소에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10시간 중 근로시간은 6시간 이하이며 학기 중이면 최소 3시간의 학교 교육 및 1시간의 휴식과 여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기 중이 아닐 경우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리고 1시간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주어야 한다. 이른 아침, 야간 외부 촬영, 라이브 TV 방송, 연극 제작과 같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하지 못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해당 시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청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각 요청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시간 최소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연속 이틀 미만으로 학교 수업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로시간은 둘 중 하루 혹은 이틀 다 24시간 중 8시간으로 연장될 수 있지만 이틀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무 종료 시각과 다음 날 요청시간 사이에는 12시간이 지나야 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정규학교가 종료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시작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다음 날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학교 수업을 받아야 함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학교 수업일 전날 오전 5시 이전 또는 오후 10시 이후에 고용될 수 없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업 일"이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240분 이상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수업이 없는 날이면 그 전날 밤 12시 30분까지 일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상에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사료하며,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 제작자, 부모 또는 보호자는 \$500 달러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60일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에 갇힐 수 있음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뉴욕주의 법안도 캘리포니아주의 법안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다. 생후 15일 이상 6개월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오전 5시 이전에 또는 오전 12시 30분 이후에는 일체 촬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하루 최대 2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으며 하루 최대 20분까지만 직접적인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촬영 활동 외 남은 시간은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르며 근무할 시에는 최소 1시간 40분이며, 이 시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생후 6개월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하루 최대 4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으며, 이 중 하루 최대 2시간을 직접적인 촬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은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는 시 최소 2시간이 되며, 이 시간은 앞선 6개월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같이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편, 뉴욕주의 6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규제는 생방송, 녹화방송, 그리고 학기 중, 비학기 중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6세 이상 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규제는 생방송 및 녹화방송 상관없이 오전 5시 이전에 호출이 불가하지만, 생방송일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다음날 수업이 있으면 촬영 활동은 최대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녹화방송 출연자일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다음날 수업이 없을 때는 오전 12시 30분까지로 생방송, 녹화방송 모두 규제가 같다.

아울러 생방송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학기 중이면 오전 5시 이전에 호출은 안 되며, 다음날 수업이 있으면 촬영 활동은 최대 자정까지 가능하다. 다음날 수업이 없으면 촬영 활동은 최대 오전 12시 30분까지로 상세히 구분되어 있다. 한편, 녹화방송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학기 중일 때에는 하루 최대 8시간 촬영 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 중 하루 최대 4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은 아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어 아동·청소년 녹화방송 출연자가 방학 중일 시에는 하루 최대 8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으며, 이 중 하루 최대 6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촬영 활동 외의 시간은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는 시에 2시간이 되며, 이는 휴식 시간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9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에는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완화된다. 생방송과 녹화방송 상관없이 학기 중에는 하루 최대 9시간 촬영 현장

에 머무를 수 있으며, 하루 최대 5시간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다. 촬영 활동 외의 나머지 시간은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른다 가정할 시 최소 4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휴식 시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비 학기 중에는 하루 최대 9시간 촬영 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 중 하루 최대 7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2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 리허설 등의 사전 공연일 시에는 특별히 하루 최대 12시간 촬영 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 중 하루 최대 9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촬영 활동 외의 시간은 하루 최대로 현장에 머무를 시 최소 2시간이 확보되며, 이는 마찬가지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생방송, 녹화방송 관계없이 학기 중 하루 최대 10시간 촬영 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하루 최대 6시간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하루 최대로 촬영장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시에 촬영 활동 외의 나머지 시간은 최소 4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으로 배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비학기 경우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는 규정은 같지만, 학기 중보다 3시간 많은 하루 최대 9시간 직접적인 촬영 활동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현장에 하루 최대 가능 시간 동안 머문다고 가정했을 시에 촬영 활동 외 나머지 휴식 시간은 최소 1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뉴욕주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항을 위반은 경범죄로 사료하여 처벌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 같은 경우 방송 출연 관련 노동법 외에 예술문화법(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또한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적용되어 규제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다룬 일반노동법 규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비교적 완화된 규제를 제시하기에 따로 다루지 않았다.

4) 학습권 보장

캘리포니아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다루는 모든 방송 제작 환경에서 스튜디오 교원의 고용이 필수다. 스튜디오 교원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

허가 아동·청소년 전문가이다. 부모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성공을 위해 종종 촬영 현장의 불합리한 조건을 넘기는 경우가 있기에, 스튜디오 교원은 철저하게 아동·청소년 편에 서서 감시하는 복지의 최고 방어자가 된다. 스튜디오 교원은 세트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책임진다. 그들은 세트장의 작업 상태를 일일이 꿰고 있어야 하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촬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안내해주어야 하며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촬영 시에 늘 출연자와 함께하는지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배우들이 출연하는 방송의 시청 가능 나이가 아동·청소년 배우의 나이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에게 촬영 내용을 노출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스튜디오 교원의 의미와 요구는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에 따라 스튜디오 교원을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튜디오 교원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최소 일주일에 15시간(캘리포니아 주법상의 최소 요구사항)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스튜디오 교원들은 아동 노동법과 방송 촬영 현장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 및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¹⁹⁾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스튜디오 교원은 법으로 규정된 교육 자격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격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자격증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격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성할 시에 받을 수 있다.

1. 스튜디오 교원의 의무와 책임을 교육하기 위해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12시간 과정의 스튜디오 교원 의무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2. 스튜디오 교원 자격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필기시험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동·청소년의 고용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 및 노동규정에 대한 스튜디오 교사의 지식을 평가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방송 촬영 활동 시 스튜디오 교원의 또 다른 중요 과제는 배우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상시 확인하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방송

19) What is a Studio Teacher?, Retrieved from <https://tophollywoodactingcoach.com/2015/09/what-is-a-studio-teacher/>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취업 및 재무 관련 행정 서류 작업에 함께하고 취업허가증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 홈스쿨링 또는 원격 교육을 받고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제작자가 고용을 원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스튜디오 교원을 필수로 고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만약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학기 중 촬영 활동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 담당 스튜디오 교원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의논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소속되어있는 교육기관의 교육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교육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고안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각 수업일 당 평균 3시간의 대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수업일 당 교육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간다면, 같은 주 다른 날 또는 그다음 주 다른 날로 이월되어 필수 교육 요건충족에 사용될 수 있다. 매주 이월 가능한 시간은 최대 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보장 규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5> 참조).²⁰⁾²¹⁾

<표 4-5>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 보장권

뉴욕 ²²⁾	캘리포니아 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정규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받거나, 원격 교육, 고용주 제공 교사의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만 고용되어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학기 중 촬영 활동이 진행되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담당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튜디오 교원제도 - 고용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15일부터 18세 사이일 경우 스튜디오 교사를 고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 스튜디오 교원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 안전 및 윤리 의식 확립에 신경 쓰며, 이들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책임자의 역할

20) Department of Labor(New York state), Child Performer Educational Requireme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s://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secure/child/cp_academics2.shtm#0

21) State of California, Studio Teachers: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dlse/Studio_teachers_cert.html

<p>튜디오 교원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교육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고안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각 수업일 당 평균 3시간의 대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하루에 3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은 같은 주 다른 날 또는 그다음 주 다른 날로 이월되어 소비될 수 있다. - 매주 이월 가능한 시간은 최대 5시간이다. 	<p>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교원에겐 촬영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정신 및 육체적 피로, 나이,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방송 촬영 활동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라면, 3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스튜디오 교사가 고용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6주에서 6달 사이라면, 10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스튜디오 교사가 고용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	--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학습권 보장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이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 행위를 시도한다. 편법으로 가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법적 18세’로 인정받아 스튜디오 교사의 보호 없이, 매우 긴 시간을 일 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을 고용하는 제작자들은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법적 나이 18세 이상의 배우를 고용하기를 원한다. 더 긴 시간을 촬영할 수 있고, 스튜디오 교사나 부모가 필요 없으며, 성인물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14~17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고객으로 둔 에이전시들은 소속 배우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편법을 사용하여 법적 18세가 되기를 권장하기도 한다. 이에, 적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쉽게 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가짜 고등학교 졸업장을 통해 고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짜 졸업장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면허증이 될 수도

22) Department of Labor(New York state), Child Performer Educational Requireme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s://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secure/child/cp_academics2.shtm#0

23) State of California, Studio Teachers: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dlse/Studio_teachers_cert.html

있다. 실제로 스튜디오 교사인 주디 브라운은 약 6년 전(2015년 기사 기준) 15세의 여배우를 담당했는데, 배우의 에이전트가 배우의 엄마에게 법적인 18세를 선언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언이 아동·청소년 노동법의 제약을 벗어나고, 더 경쟁력 있는 배우가 될 수 있게 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에이전트의 제안대로 배우의 어머니는 250달러를 지급해 졸업장을 획득했다. 이후 여배우는 디트로이트에서 2주간 쉬지 않고 하루에 14시간을 야간, 야외 촬영으로 진행된 제작현장에서 일했고 이에 배우의 건강이 걱정되어 어머니가 항의하자, 제작자들은 이를 무시했고, 어머니는 이를 후회하고 추후 졸업장을 찢어버렸다고 한다.²⁴⁾

5) 아동학대, 성 보호 관련

미국의 모든 주에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성 보호법이 존재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아동학대, 성 보호법 또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형법에 속하며, 아동과 함께하는 특정 성인에게 아동학대의 징후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아동 방치 및 아동 유기에 관한 법률에선 부모가 아동을 고의로 위협에 노출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아울러 성범죄자라면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감독하는 활동을 할 시엔 자신의 성범죄 관련 정보(미국 경찰청 발급)를 그룹, 조직 또는 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자라면 아동·청소년과 관계된 어떠한 일도 지원하거나 수락할 수 없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고 있다.

뉴욕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적용할 수 있는 성 보호 관련 조항에는 스튜디오 교원을 포함한 대체 교사의 성범죄 관련 이력을 필수로 확인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고용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외설적 행위가 포함된 어떠한 연기도 일절 시킬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적용할 수 있는 몇몇 성 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16세 미

24) David Robb(2014, 9, 28), "Hollywood's Phony-Diploma Mills Help Underage Actors Labor In Film Biz Underground" DEADLINE, Retrieved form <http://deadline.com/2014/09/fake-diplomas-child-actors-film-television-841606/>

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항상 스튜디오 교원의 감독하에 탈의실, 메이크업 실, 미용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스튜디오 교원이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기해야 한다. 아울러 촬영장이 아닌 곳에서 의상, 화장, 미용, 홍보, 외모 단장, 오디오 녹음 등의 일을 해야 한다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에 필수로 동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방송 촬영 환경 내의 성 보호 규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6> 참조).

<표 4-6>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성 보호법

뉴욕	캘리포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고용주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대체 교육 교사(스튜디오 교원)를 제공한다면, 제공되는 교사의 성범죄 관련 이력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²⁵⁾ - 고용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외설적 행위를 시킬 수 없다.²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스튜디오 교원의 지도 감독하에 있지 않은 이상 탈의실, 메이크업 실, 미용실로 이동할 수 없다. ²⁷⁾ - 방학(비학기) 중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촬영장이 아닌 곳에서 의상, 화장, 미용, 홍보, 외모단장, 오디오 녹음 등을 해야 한다면, 부모나 보호자가 필수로 동반해야 한다. - 고용인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제한된 직업과 업무를 시킬 수 없다.²⁸⁾

이러한 법규와 더불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선 성범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거주와 취업에 제한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은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일하거나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미성년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뉴욕주에서는 지역 내 특정 전문가(경

25) Department of Labor(New York state), Child performers, Retrieved from <https://labor.ny.gov/legal/laws/pdf/child-performer-regulations/part186-child-performer.pdf>

26) 박석철(2009),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7) State of California, Article 1. Motion Picture Industries,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t8/ch6sb2a1.html>

28) 박석철(2009),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찰, 지방 검사, 심리학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 역할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이런 특정 전문가가 고의로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든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률상에 명시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한편, 위의 내용은 촬영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 관련 방송 법규이기 때문에 촬영장 밖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 아동·청소년 채널 중 하나인 니켈로디언(Nickelodeon)의 제작 스태프인 제이슨 헨디(Jason Michael Handy)가 2004년도에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 하는 14살 소녀의 희망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구속된 바 있다. 추후 니켈로디언 측은 회사 고용 심사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고 회사 내 모든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²⁹⁾

현재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탤런트 에이전시는 규제를 받지만, 캐스팅 감독, 감독, 사진작가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한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 의회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출연자들과 일하는 모든 스태프에 대한 면허 등록과 범죄 경력 검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 중에 있다.

6) 그 외의 법률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참고할만한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조항을 간추려보았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모두 공통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보호 관찰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뉴욕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가 상시 촬영장에 출연자와 동반하여 이들의 안전과 행동을 보호하고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보호자와 반드시 촬영 현장에 함께여야 하고, 보호자는 촬영 시간 내내 이들을 시야에 두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둘 다 아

29) Dawn C. Chmielewski. (2012.2.8). Child sexual abuse cases in Hollywood attract attention.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12-jan-08-la-fi-ct-hollywood-molesters-20120109-story.html>

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라면, 3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간호사가,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6주에서 6달 사이라면, 10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제작현장에 함께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간호사는 해당 주의 허가를 받은 정식 간호사이며, 간호사 제공의 책임은 고용주가 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보호 정보를 상시 제공해야 하며, 출연자의 촬영 활동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지도가 촬영 현장에 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는 특별히 본 촬영 단계 전 충분한 리허설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촬영 전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올 수 있는 스트레스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활동이 사전 예상되었던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끝났다면, 보호자가 촬영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스튜디오 교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참고할만한 부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 관련 내용이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 개시 15일 이내에 친권자나 후견인은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후 해당 계좌 관련 내용을 모두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추후 해당 계좌에 총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탁자로 신탁회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8세가 되는 해에 계좌 운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총수입 15%를 쿠건 신탁 계좌³⁰⁾에 보관해야 함을 법률상에 명시하고 있다. 만약 쿠건 신탁 계좌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는

30) 쿠건 법(Coogan Act/Child Actor Bill)은 1939년 아동·청소년 출연자 재키 쿠건(Jackie Coogan, 1914~1984)의 부모가 아들의 수입을 함부로 사용하여 탕진한 사건 이후 탄생한 법으로, 재키 쿠건의 이름을 인용하여 현재 '쿠건 법'이라 불린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하루 20분 이상 조명에 노출되면 안 되며, 촬영 활동 가능 시간은 나이에 따라 늘어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12세에서 17세에 이르러도 하루 9시간까지의 촬영 활동 가능 시간이 제한된다. 쿠건법 상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과 재정적 권리를 지켜주는 방법이 조항으로 포함돼 있다.

이들이 18세가 되는 해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수탁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고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쿠건 신탁 계좌 신설 관련 상세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 관련 내용까지 성인과 구분하여 법률로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그 이외의 기타법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4-7> 참조).

<표 4-7>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기타 보장법

뉴욕	캘리포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자는 아이와 동반하여, 그들의 안전과 행동을 보호하고 상시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라면, 3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간호사가 필수로 고용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6주에서 6달 사이라면, 10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고용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 고용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보호 정보를 상시 제공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활동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촬영 활동에 있어 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본 촬영 전 충분한 리허설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³¹⁾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 개시 15일 이내 친권자나 후견인은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출연자에게 통지하며, 해당 계좌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좌가 25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탁회사를 신탁자로 지정한 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8세가 되면 계좌 운용권리 확보할 수 있게 한다.³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촬영 현장에 함께해야 하며, 항상 이들을 시야에 두고 주시해야 한다.³³⁾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라면, 3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고용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³⁴⁾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6주에서 6달 사이라면, 10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고용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³⁵⁾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활동이 일찍 끝났으나 픽업이 몇 시간 동안 안될 경우 픽업이 될 때까지 혹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스튜디오 교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총수입 15%를 쿠건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만약 불가할 경우 미국 배우 기금 특별 계좌에 기금 관리자는 친권자에게로 이와 같은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는 이들이 18세가 되는 해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수탁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계약 6개월 내 쿠건 신탁 계좌 신설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³⁶⁾

한편,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동물들과의 촬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샤프롱’(chaperon)이란 장치가 존재한다. ‘샤프롱’은 과거 젊은 여성이 사교장에 나갈 때 함께 따라가며 보살피주던 사람을 뜻하는 프랑스어에 기반한 용어로, 현대엔 아동·청소년 출연자만 관리하는 전담 스태프를 일컫는다. 현재 미국 방송환경에 있어 샤프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연기, 발성 지도는 물론 촬영장 내 긴장감에 따른 심리 변화와 안전 문제까지 관리해주기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제작자가 샤프롱의 고용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물론, 샤프롱은 제작현장 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튜디오 교원과는 다른 개념의 사설 고용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샤프롱 제도가 공연예술계에서 도입되는 추세다.³⁷⁾

31) Department of Labor(New York state), Child performers, Retrieved from <https://labor.ny.gov/legal/laws/pdf/child-performer-regulations/part186-child-performer.pdf>

32) 박석철(2009),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한국언론학회

33) §11755. Studio Teacher; Definition and Cert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t8/11755.html>

34) State of California(2013), CHILD LABOR LAWS[Electronic version],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dlse/childlaborlawpamphlet.pdf>

35) State of California, Article 1. Motion Picture Industries,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t8/ch6sb2a1.html>

36) 박석철(2009),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한국언론학회

37) 유선희(2020. 01. 19), “[편집국에서] 방송계는 모르는 샤프롱”,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4984.html#csidx28f40539a3cd5c89c627bc2f6f0a9a1>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노동조합 가이드라인

미국 내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노동법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까다로우므로 미국 내 방송사에선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주별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노동법을 따르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의 법이 약할 땐 주법과 함께 배우 노조의 규제를 따른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아동 노동법의 공정 노동 기준법(FLSA)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각 주의 노동법에 따라 보호되고, 주의 노동법이 약한 경우엔 배우 노조에 의해 보호된다. 많은 주에서 공정 노동 기준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 허가증³⁸⁾ 발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표준노동부(DLSE/Department of Labor and Standards Enforcement)이고, 감시하는 기관은 각 주의 산업관계부(DIR/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이다.

한편,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18개 주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 대한 규제나 법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건 영유아 출연자에 관한 법이다. 뉴올리언스에선 생후 한 달 된 유아가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할 수 있게 되어있고, 뉴저지에선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할 수 있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고용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제한하는 연방법이 없고, 주마다 제정된 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놓인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가이드라인이다.

1)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38) 만 14세 이상-만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성희롱 예방, 폭력, 보복 및 보고 자원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에 대한 증거를 수료 증명서나 기타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교육 업체 이름, 교육 코스 제목, 교육 날짜, 참가자 이름, 교육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온라인 과정의 경우 참가자의 이름과 수료를 증명하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여러 노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the Screen Actors Guild and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³⁹⁾이다.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미국 최대의 배우 노동조합으로, 소속된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출연자를 위한 각종 행동 강령, 안전 수칙, 주 법령 등을 알려주고, 위급상황을 위한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에선 방송 유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노동조합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을 담당하는 주의 의무 교육법을 충족시켰을 경우, 출연자가 결혼한 경우, 출연자가 군대의 일원인 경우, 출연자가 법적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고, 제작자와 출연자 모두 출연자를 법적 성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법적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기로 동의한 경우 본 가이드라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제작 및 촬영 환경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적합한지 아닌지, 고용 조건이 아동·청소년의 건강, 도덕, 안전상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제작 활동 참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이 무시되거나 방해받는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의 충족에 관한 내용을 가장 처음에 다루고 있으며 이후 계약부터 교육, 감독, 근무 시간, 의료 및 안전 등의 조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① 계약

아동·청소년 출연자 고용 시 제작자는 제작자의 이름, 직위, 제작 작업 장소 및 기간,

39)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약 160,000명의 영화 및 텔레비전 배우, 언론인, 라디오 출연자, 음악 제작 아티스트, 가수, 성우 및 기타 미디어 관련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다. 2012년 3월 30일 Screen Actors Guild/SAG(1993년 창설)와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AFTRA(1973년 미국 라디오 아티스트 연맹으로 창설, 합병 후 1952년 AFTRA가 됨)의 합병으로 구성되었다.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미국 최대의 노조 연합인 미국 노동 총동맹 산업별 조합 회의(AFL-CIO)의 회원이다.

배우로서 필요한 특수 능력 등을 포함한 고용 조건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이 고용된다면 제작자는 고용된 지역을 연방에 통보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만약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고용되는 경우, 해당 캘리포니아 법률 및 규정이 고용을 규제하게 되어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외의 다른 주에서 고용될 경우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정의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교육

제작자가 학기 중인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3일 연속으로 계약할 경우, 해당 고용 첫날부터 스튜디오 교원을 고용해야 한다. 3일 이상 연속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촬영하는 것이 제작자의 제작 일정에 계획되어 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이를 동안만 촬영하기로 계획되었지만, 그 후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제작자는 해당 고용일의 3일째, 늦어도 4일째에는 스튜디오 교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제작자가 필수로 스튜디오 교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학기 중에 있고, 제작자가 제작에 참여하는 다른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해 이미 스튜디오 교원을 고용했다면,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라도 다른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함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제작자가 편집 등의 후반 작업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라면 스튜디오 교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

고용되는 스튜디오 교원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초등, 중등 수준)에 적합한 교육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제작이 진행되는 해당 주의 자격을 꼭 취득할 필요는 없다. 고용되는 스튜디오 교원의 보수는 제작자가 100% 부담해야 하며, 제작자는 10명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당 1명의 교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일 경우 최대 20명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담당하여 교육할 수 있다. 고용되는 스튜디오 교원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제작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 한편, 만약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정규 교육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해당 언어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촬영 현장에 올 필요가 없는 날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학교에 갈 수 있지만,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학교에 하루 3시간 이상 출석하는 시간을 근로 계약상의 교육 시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을 경우,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제작 세트장이나 집 또는 고용된 스튜디오 교원의 집에서 교육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스튜디오 교원은 해당 아동·청소년 출연자 외에 교육하는 다른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없어야만 한다. 아울러 스튜디오 교원은 수업시간을 배정할 시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20분 미만으로 배정해야 한다.

하루 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을 위하여 정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은 유치원의 경우 4시간, 1~6학년의 경우 6시간까지로 제한하며, 교육을 위해 제작자는 학교, 교실, 트레일러 학교, 조명, 난방, 책걸상을 실제 학교와 비슷한 시설로 제공해야 하고 스튜디오 교원과 학생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제작 환경 내 학교시설로 활용하는 구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실제 교육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버스, 자동차 등은 적합한 학교시설이 아니며, 이동하는 자동차나 버스를 학교시설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이동하는 동안 교육을 받아서도 안 된다. 시설 제공과 더불어 제작자는 학교 장비 용품을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 과제물과 교과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작자는 스튜디오 교원에게 출석, 성적 등을 포함한 성적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성적표는 제작 기간 종료 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감독

학교가 개학하는 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촬영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학교 수업 중에는 스튜디오 교원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과 감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한편, 스튜디오 교원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돌볼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작업하는 동안 항상 동행해야 하고, 항상 시야에 두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스튜디오 교원,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하에 있지 않은 이상, 의상실, 메이크업실, 헤어스타일링실에 갈 수 없다. 만약 부모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 현장에는 있지만,

촬영 현장에 함께하지 못할 때는 다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청소년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보호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작자 또는 스튜디오 교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는 제작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자가 고용하지 않은 다른 아동·청소년을 촬영 현장에 데려올 수 없다.

한편, 제작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고용한 경우, 제작자는 각 촬영 세트장마다 직원 한 명을 지정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정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 보호자, 스튜디오 교원에게 해당 직원의 신상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근무 시간

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6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6~9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8시간 근무할 수 있다. 9~16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9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16~18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10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 모든 근무 시간에는 식사 시간은 제외하며, 교육 시간은 포함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무는 오전 5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하고, 학기 중엔 오후 10시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학기 중이 아니거나 수업이 없는 날의 경우엔 오전 12시 30분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근무의 종료와 시작 시점 사이에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마지막 근무가 수요일이고 목요일 8시 30분에 등교할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수요일 오후 8시 30분까지 일을 마쳐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연속 6일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다만 온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한 날은 연속된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무가 끝나면 현장에 억류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제작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해 인터뷰 및 피팅은 학교 시간 외에 실시해야만 한다. 인터뷰와 피팅은 적어도 오후 9시에는 끝나야 하며, 피팅 하는 동안 항상 동성 성인 2명 이상이 함께해야 한다.

⑤ 탈의실

어떠한 탈의실도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이성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동시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⑥ 놀이 장소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촬영 도중 쉬거나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⑦ 의료 및 안전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거주하거나 고용된 주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식 허가를 내준 의사가 서명한 증명서를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제작자에 의해 고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 검사를 받았으며,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첫 번째 촬영에 앞서, 제작자는 응급 상황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작자는 최소한 외부의 긴급 지원에 대해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이러한 동의가 앞서 언급한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생명이나 신체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할 의무가 없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자신이 촬영 현장에서 위험에 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스튜디오 교원이나 스탠트 코디네이터 중 한 명 또는 둘 다와 그러한 생각을 의논해야 한다. 타당성과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그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비범한 신체적, 운동적, 곡예적 활동을 연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통지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안전하게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제작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할 수 있는 안전 장비에 대한 합리적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⑧ 아동 노동법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을 규정하는 주의 아동 노동법 요약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자의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본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조항들이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고용된 주 또는 기타 관할권의 아동 노동법이나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주 또는 관할권의 조항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모든 조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제작자 간의 모든 분쟁은 출연자에게 지급 및 보장된 보상 금액과 관계없이 중재할 수 있다. 노조와 제작자 간의 모든 분쟁도 마찬가지로 중재할 수 있다.

⑨ 숙박 위치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야간 근무지에 고용될 경우, 제작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 숙박, 식사 비용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야 하고 이러한 비용은 사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항공의 경우 제작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같은 등급의 좌석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등급의 항공편을 제공했다면, 동행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도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등급의 항공편을 제공해야만 한다. 숙박의 경우는 만 11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숙소를 써야 하고, 11~16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자의 숙소에 인접한 숙소에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방을 제공해야만 한다. 다만, 11~16 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같은 성별의 부모와 숙소를 함께 쓸 수도 있다.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고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표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표 4-8> 참조).

<표 4-8>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가이드라인

종류	관련 지침
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 환경은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해야 한다.- 고용조건이 건강, 안전, 가치관 등에 해가 되지 않는다.- 제작으로 인해 교육이 방해되면 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에게 제작자의 이름, 촬영 장소, 기간, 고용조건을 알려야 한다. - 법적 요구사항 이외에도 제작자와 노조는 아동·청소년 고용에 관한 아래의 조항에 동의한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이 3일 이상 고용되면 교사를 고용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 제작 후반 작업(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은 교사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학교가 끝난 후에 교육을 해야 한다. -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교육 시설이 아니다. 교실, 트레일러 등과 같은 적절한 교육 시설을 사용하여 교육해야 한다. - 제작자는 교사에게 출석, 성적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런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주어지고, 학교에 전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중 아동·청소년이 제작현장에 도착하면, 아동·청소년이 담임 교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학기 중엔 담임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감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이 일하는 동안 그들을 시야에 상시 두고 있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은 항상 보호자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감독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거나, 메이크업 등의 일을 할 수 없다. -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각 세트의 한 명에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게 하고 보호자나 교사에게 이러한 일을 알려야 한다. - 부모나 보호자는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제작자가 관여하지 않은 다른 아동·청소년을 현장에 데려올 수 없다.
노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미만 : 6시간 허용(식사 시간 제외, 학교 시간 포함) - 6세~9세 : 8시간 허용(식사 시간 제외, 학교 시간 포함) - 9세~16세 : 9시간 허용(식사 시간 제외, 학교 시간 포함) - 16세~18세 : 10시간 허용(식사 시간 제외, 학교 시간 포함) - 5시 이전 시작 불가, 다음날 수업이 있을시 오후 10시 이전 종료, 없을시 12시 30분까지 종료해야 한다. - 6일 이상 연속 작업이 불가하다. - 마지막 작업과 다음 일정 사이에 12시간의 휴식이 있어야한다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과 성인 연기자, 혹은 다른 성의 아동·청소년이 동시에 사용해선 안 된다.
놀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쉬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적 돌봄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증명서를 제작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종교의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아동·청소년은 위험한 상황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다. - 아동·청소년이 극예적 연기를 하면 보호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제작자는 안전장치에 대한 아동·청소년 또는 그의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자는 아동 노동법 요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주의 아동 노동법이 이 규정보다 일관성이 없고, 제한적이라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이 야간에 고용되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교통, 숙박 및 식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또 항공편에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같은 등급의 항공편을 받아야 한다. - 숙박의 경우 제작자는 11세 미만은 보호자와 같은 방, 11세 16세는 동성 보호자와 같은 방을 공유하며, 그 이상은 인접한 방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 사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허가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고용과 주별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규제의 위반은 경범죄로 치부하여 법적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 규제와 더불어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미국 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주에서 고용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조합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고용하는 제작사가 노동법 또는 노조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를 어겼을 경우, 노조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법적 고소 또는 소송 절차에 함께하며 큰 힘이 되어준다.

한편, 지금까지 앞서 논의했던 내용은 촬영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규제이기 때문에 촬영장 밖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이러한 법적 규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 아동·청소년 채널 중 하나인 니켈로

디언(Nickelodeon)의 제작 스태프인 제이슨 핸디(Jason Michael Handy)가 2004년도에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 하는 14살 소녀의 희망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구속된 바 있다. 추후 니켈로디언 측은 회사 고용 심사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고 회사 내 모든 직원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시행하였다.⁴⁰⁾

촬영장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성범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거주와 취업에 제한을 주는 규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은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일하거나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미성년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뉴욕주에서는 지역 내 특정 전문가(경찰, 지방 검사, 심리학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 역할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이런 특정 전문가가 고의로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든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률상에 명시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촬영 현장에서 안전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으며, 필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적 규제를 내세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는 현재 주 미디어 플랫폼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쉽게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유튜브)에는 아직 닿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인기 유튜브 채널 '판타스틱 어드벤처스'⁴¹⁾에 출연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했으며, 이러한 채널을 관리하는 어머니 해크니는 비디오에 출연한 입양된 7명의 아이를 방치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⁴²⁾ 해크니는 아이들이 촬영을 위한 연기 지시를 따르지 않자 물과 음식을 주지 않

40) Dawn C. Chmielewski. (2012.2.8). Child sexual abuse cases in Hollywood attract attention.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12-jan-08-la-fi-ct-hollywood-molesters-20120109-story.html>

41) 애리조나주의 한 가족이 제작하는 약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브 가족 코미디 시리즈 '판타스틱 어드벤처스'의 콘텐츠는 총 2억 4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 콘텐츠 당 약 2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42) Elizabeth Chuck(2019, 3 22), "Child abuse charges against YouTube channel's mom underscore lack of oversight for kids", NBC, Retrieved form

고, 육실 출입까지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을 일삼았으며, 한 콘텐츠에서는 후추를 아이들의 몸에 뿌린 뒤 학교 근처로 데리고 나가 영상 촬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중국에서 입양한 자폐아와 함께 하는 삶을 유튜브에 올려 많은 인기를 얻었던 미국 부부가 아이를 파양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⁴³⁾ 미국 오하이오에 사는 마이카 스토퍼와 그의 남편 제임스는 아들 혁슬리를 입양하는 과정과 아들의 고난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게시하여 약 70만 구독자를 보유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을 파양하게 되었고 이후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 아들을 이용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부부는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거센 비난으로 부부의 유튜브 계정 '스토퍼 라이프'의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선 두 예처럼 70~80만에 다다른 구독자 수를 통한 전문학적 수익을 생산하는 채널의 수익 규모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수익 규모와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제작 환경에서는 기존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 사용되던 노동법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일부 아동·청소년 안전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작되는 콘텐츠를 일일이 다 살펴보며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덴버 대학의 미디어, 영화 및 저널리즘 연구 책임자인 린 스코필드 클라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자체에 '아동·청소년 학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상시 감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이러한 방법은 1분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개의 콘텐츠가 제작되어 업로드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살펴봤듯, 주요 제작사에서 일하는 전문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지만,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는 실제 이러한 법적 장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https://www.nbcnews.com/news/us-news/child-abuse-charges-against-youtube-channel-s-mom-underscore-lack-n985526>

43) “유튜버: 인기 유튜버 부부가 자폐 아들 파양 고백 후 비난을 받고 있다”, Retrieved 2020, 5, 29, BBC, form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2847511>

도 마찬가지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형태의 현재 미디어 환경의 특성에 맞는 보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앞선 유튜브 규제 사례와 더불어 스튜디오 교원제도를 이용한 범죄도 존재했다.⁴⁴⁾ 스튜디오 교원 위조 자격증을 사용하여 수년간 공인된 스튜디오 교사로 일해왔던 링커와 로빈스가 그 예이다. 이들은 수십 편의 저예산 영화와 학생 프로젝트 영화에 고용되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만났다. 다행스럽게도 링커와 로빈스가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이들의 가짜 행위는 스튜디오 교원 노조의 조사로 밝혀져 경범죄로 치부되어 처벌받았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아동·청소년 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규제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탤런트 에이전시, 제작사는 법적 규제를 받지만, 캐스팅 감독, 감독, 사진작가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 의회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출연자들과 일하는 모든 스태프에 대한 면허 등록과 범죄 경력 검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 중에 있다.

4. 시사점

미국의 50개 주 모두 각각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노동규정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별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17개 주는 기본 일반노동법을 따르며, 일반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항은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조항을 따른다. 이외의 33개의 주에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주별 노동법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본 고에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아

44) David Robb(2014, 9, 21), "Con Men Lied, Faked IDs To "Teach" Kids Working On Hollywood Film Sets", DEADLINE, Retrieved form <https://deadline.com/2014/09/con-men-teaching-kids-film-sets-faked-ids-834640/>

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노동 법률규정이 있는 33개의 주 중 미국 내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일반노동법률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 조항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아동·청소년 고용을 원할 시 고용주와 아동·청소년 고용인 당사자들에게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무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캘리포니아 노동표준 시행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고용 허가증이 필수이며, 뉴욕주 또한 마찬가지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에 당국의 허가를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련 노동 규제가 따로 없는 17개 주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 대한 규제나 법적 보호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고용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제한하는 연방법이 없고, 주마다 제정된 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놓인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가이드라인이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고 근무 조건이 아동·청소년의 건강, 도덕, 안전상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제작 활동 참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이 무시되거나 방해받는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부터 교육, 감독, 근무 시간, 의료 및 안전 등의 조항도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별 노동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노동법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라 권고하고 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각 주의 노동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보호되고, 주의 노동법이 약한 경우엔 배우 노조에 의해 이차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리나라, 영국, 일본은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제작사 등에서 직접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는 33개의 주에서 제시하는 규제가 매우 구체적이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17개 주 또한 노동조합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제작사 등에선 별도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지 않고 주별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의 몇몇 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방송 촬영 활동 시 스튜디오 교원(Studio teacher)고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스튜디오 교원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아동·청소년 전문가이다. 촬영장의 부모가 아동·청소년들의 성공을 위해 촬영 시의 불합리한 조건을 참고 넘길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해주는 스튜디오 교원의 역할은 크다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이러한 스튜디오 교원제도의 도입을 참고한다면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 계좌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현재 모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소득의 15%를 신탁 계좌에 적립해야 하고, 부모가 신탁 계정을 만들지 못한다면, 미국 배우 펀드(AFA)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뉴욕을 포함한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등의 주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 신탁 계좌의 개설을 요구하는 특별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 개시 15일 이내에 친권자나 후견인은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노동부에 보고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신탁 계좌에 총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신탁회사를 신탁자로 지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8세가 되는 해에 계좌 운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총수입 15%를 쿠건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 함을 법률상에 의무로 하고 있다. 추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의 신탁 계좌 개설 관련 조항을 참고하고 신탁 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국내 인기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는 약 3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 수익만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최고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

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보람 양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과거 수익 관리, 부모와의 수익 분배 관련한 쟁점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유튜브가 주 미디어 플랫폼이 되었고,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져 누구나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 있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은 현재 민법 제925조⁴⁵⁾, 민법 제 916조⁴⁶⁾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친권자의 재산관리 부여와 관련된 조항일 뿐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설령 착취를 당한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미국의 신탁 계좌 개설 특별법을 참고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을 보호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중에서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보호 관찰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보호자와 반드시 제작현장에 함께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촬영 시간 내내 이들을 시야에 두고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뉴욕주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제작 활동 시에는 보호자가 상시 촬영장에 동반하여 이들의 안전과 행동을 관찰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두 주 모두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라면, 3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6주에서 6달 사이라면, 10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제작현장에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사는 해당 주의 허가를 공인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이며, 간호사 고용은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오전 5시 이전과 오전 12시 30분 이후에는 호출 및 촬영 활동을 불가했으며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고 최대 20분까지만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6개월 미만 아동의 고용 활동 시간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은 아동 출연자를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함을 법안에 명시함을 통해 아

45) 민법 제925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46) 민법 제916조: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동·청소년 출연자의 휴식 시간까지 꼼꼼히 배려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 번에 30초 이상 100피트 이상의 촛불 강도의 빛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촬영장 내 조명 강도에 있어서까지 세세한 부분을 제재하고 있음이 특징적이었다.

이처럼 미국은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의 아동·청소년 출연자까지 고려한 법안이 존재할 만큼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연령별로, 그리고 촬영 환경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제작현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2절 영국의 아동·청소년의 출연자 권익 보호 현황

1.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2008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서, 2017년 영국은 현대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당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사회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영국 내 다양한 부문과 산업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사용자,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자영업 단체, 정부 기관, 법률회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노동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유연성(flexibility)로 노동시장 참가자가 공정하게 참여하고 나누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해 정부가 중장기 정책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좋은 일자리’(good work) 논의는 킥경제(gig economy), 호출형근로(zero-hours contracts), 파견근로(agency working)등의 새로운 고용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슈가 되었다(남궁준, 2017).

하지만 18세기 산업혁명을 일찍 경험한 영국엔 임금이 비싼 숙련된 성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여성과 아동을 고용했다. 이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생산 과정이 기계화된 이후, 대량 상품생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가들은 노동자를 감시했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가난한 여성과 어린 이들은 저렴한 임금을 받으며 매일 14~16시간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택했던 어린이들이 장시간 일하느라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사회 계층간 빈곤이 악순환되면서, 영국에서 싹튼 아동청소년 노동 규제과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1) 아동·청소년 노동·교육 관련 법률 등장 배경

현재의 영국 노동법은 제정법을 중심으로 한 규율 체계가 확립되어, 적어도 근로계약에 국한한다면, 전면적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주창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에 비하여 계약 자유의 전통이 훨씬 강하며, 고

용권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을 비롯한 고용보호입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s)에 관한 판례의 해석에서도 아직까지 그 전통이 남아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을 살펴보면, 영국은 1833년 공장법(Factory Acts)을 통하여 근로시간에 관한 법적 규율, 즉 연령별 1일 근로시간 규율을 최초로 시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⁴⁷⁾, 노동법상 근로시간 규율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수립된 것은 유럽연합 지침을 수용한 1998년 이후일 만큼 법을 제정하는 대응이 늦었다. 특히 영국은 165여 년의 간격을 근로시간에 일반법이 아닌, 집단적 자치주의와 산업별·분야별 입법을 통해 대응했다(남궁준·김근주·구미영(2019, 7-8) .

영국의 근로조건에 관한 초기 입법은 ‘면직업(cotton industry)’에만 적용되었다. 다른 산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은 1842년의 광업법(Mines Act)이었다. 이처럼 공장법의 적용 범위는 면직업을 시초로 점차 다른 산업들로 확대되어 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갔다. 공장법 체계의 시초는 1802년 제정된 견습생의 건강과 도덕적 의무에 관한 법(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 1802)이다. 이 법은 방직공장 등 면직업에서 견습생들의 최소한의 노동환경 규제를 하기위한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9세 미만 아동들은 도제 시스템 내에서 견습생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9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일간 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야간근로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이 법의 규정들을 선언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는 이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물론 행정적인 이행·적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공장법은 각 적용 산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행정 이행 체계를 갖추어 동시에 연령별·성별(여성) 근로시간 제한의 세분화를 도모하였다. 공장법의 방식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 금지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에 법적으로 접근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공장법은 특수한 보호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이것이 노동법적 접근법의 시초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에 차이가 있긴 하다.

영국에서 가산임금에 대한 법적 규율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나타난 1945년 임금위원

47) 1833년 공장법은 9세 이상 13세 이하의 아동은 1일 8시간,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1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의 1일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회법(Wages Councils Act 1945)으로 구체화되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영국은 사회복지의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주창하면서 국민들의 승리를 보상해주고자 하였다. 다만 이를 추진할 국가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노사의 계약적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45년 임금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남궁준·김근주·구미영(2019, 12-15).⁴⁸⁾)

<표 4-9> 공장법의 전개와 주요 내용(아동·청소년 노동 관련 법안 중심)

법령명	주요내용
1819년 면직공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직공장에만 적용 •9~16세 연소자의 주간 근로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 •9세 미만의 아동은 도체가 될 수 없음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음
1831년 면직공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직공장에만 적용 •18세 미만 연소자의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21세 미만의 야간근로 금지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음)
1933년 공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세 미만의 아동 고용 금지[실크 공장 제외] •9~13세 연소자는 하루 2시간의 수업을 포함하여, 1일 9시간 1주 48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 •아동과 연소자는 5:30 ~ 20:30 외에는 근로금지 •처음으로 공장감독관 임명
1842년 광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세 미만의 아동과 여성들의 지하 근로 제한
1844년 공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산업에만 적용 •8~13세의 아동노동을 1일 6.5시간으로 제한
1845년 Calico 인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직물에 디자인을 인쇄하는 공장에 적용 •8세 미만의 아동 고용 금지 •13세 미만과 여성의 야간노동(22시~6시) 금지 •13세 미만의 연소자는 6개월에 30일간은 학교에 출석
1847년 공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은 공장 •9~13세의 아동노동은 하절기 6~18시, 동절기 7~19시로 제한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도 6~18시로 제한
1867년 작업장 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미만 사업장에 8세 미만 아동 고용 금지 •8~13세 아동은 반시간 근로로 제한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과 30분의 식사 시간 보장 •아동, 연소자와 여성은 토요일 오후 2시 이후 5명 이상의 시설에 고용 금지 •아동근로자는 주 10시간 학교 출석 보장

1874년 공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에 9세 미만 아동 고용을 금지 •1875년에 연령제한을 10세로 상향 •다만 8세의 아동은 여전히 작업장과 비섬유공장에 고용될 수 있었음
1875년 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세까지 학교 출석을 의무화 •10세를 넘는 아동은 노동 허가서 발급 •1870년의 포스터의 교육법은 학교 출석을 의무화하거나 무료로 하지 않음
1878년 공장과 작업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로 가동되는 섬유, 비섬유 공장을 포괄 •작업장은 비섬유 공장으로 취급 •국내 작업장은 아동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비섬유 공장으로 취급
1891년 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시간 근로의 연령제한을 11세로 상향 •반시간 근로체계는 1918년까지 지속

출처 : 남궁준·김근주·구미영(2019, 15-16) 재구성

현재 영국은 1998년 근로시간 시행령의 틀 속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의 근로시간 규율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수립되어 오지 못했던 역사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노동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아동에 대한 교육, 복지, 노동 법안과 규제를 마련했다.

2) 아동·청소년 노동·교육 관련 법률

(1) 연소자 보호 법률

임금위원회를 통한 근로시간의 간접적인 제한 외에도, 전후 영국에서는 공장법 이후 나타났던 산업별 접근법과 여성 및 아동의 특별한 보호 방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과 연소자에 관해서는 연령 보호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그 속에서 노동관계를

48) 임금위원회는 어떤 산업에서 단체교섭 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사대표 위원회와 공익위원회를 구성원으로 설치하고, 단체교섭이 확립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라기보다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약에 의한 규제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규제의 적용을 수용하는 근로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1933년 아동과 연소자에 관한 법률(Children and Young Person Acts 1933)이 그에 해당한다. 이 법률은 총 4차례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소자와 아동에 관한 보육과 복지 서비스, 고용과 근로관계에서의 원칙, 소송상의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2장에서는 아동과 연소자의 고용(employment)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노동의 금지(오전 6시 이전 또는 오후 8시 이후의 노동)와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준야간노동(오전 6시 이후 7시 이전 또는 오후 7시 이후 8시 이전의 노동)의 허용, 16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한 공연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남궁준·김근주·구미영, 2019, 24).

또한 영국에는 1억 1천 명의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 있고, 그 중 학대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은 5만 7천 명이며 9만 3천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2015년 기준). 또한 2015년 한해 동안 2만 3천명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아동전화상담소에 학대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1만건 이상의 학대와 방치 사건이 조사된 바 있다. 영국에서는 교육부가 아동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아동 보호 시스템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정책, 법률, 법령 지침을 수립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관리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에는 지방 당국, 건강 기관, 경찰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기관들까지도 포함되고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 정책, 절차, 지침에 책임을 지고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은 민법과 형사법의 두 가지 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민법은 다시 아동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스템과 과정을 규정한 것과 이혼과 접촉과 같은 가족 관련 소송절차를 다루고 있고, 형사법은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를 다루고 있다(나채준,2017,66). .

1933년 아동 및 청소년 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첫 법률로 영국의 아동은 약 80년 전부터 영국 정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 왔다. 동 법률은 현재까지 적용되어지고 있고, 동법은 Schedule 1 범죄행위로 언급되는 아동학대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아동 보호 시스템은 1989년 아동법에 기초하고 있다. 동

법 section 1은 기본원칙으로 아동의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복지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원은 아동의 원하는 바와 감정을 고려해야하고 아동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9년 아동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 당국과 법원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00년 8살 빅토리아 크라이백비아(Victoria Climbié)이 사망한 이후로 정부는 영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과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였다. 2004년 아동법은 1989년 아동법을 대체하거나 수정하기 보다는 독립된 법으로 존재하고, 대신에 그 전에 규정하지 않았던 아동에 제공되는 통합된 과정을 명시하고, 1989년 아동법에서 아동 감독관의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지방당국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책임자 및 주요 구성원을 지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아동에 대한 방치(neglect)와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에 문제되자 영국 교육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체벌뿐 아니라 방치 및 정서적 학대의 위험성을 제기하였고, 영국의회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에 대한 학대의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법률인 일명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⁴⁹⁾을 제정하게 된다. 동 법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를 했을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동 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관련 법령인 ‘아동 및 청소년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을 보완하게 됐다(나채준, 2017, 67).

(2) 어린이·청소년 고용 규정

① 일할 수 있는 최연소 아동, 13세⁵⁰⁾

- 파트 타임 고용

49) 2015년 ‘신데렐라법’은 우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개인적 범죄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학대의 정도에 따라 아동 학대 전문교육과 상담 및 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50) <https://www.gov.uk/child-employment>

영국에 모든 아동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13세이다. 단 텔레비전·연극·모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

그리고 방송·연극·모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아동은 아동 공연 면허를 최소 21일 전에 지역 의회에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가 필요한지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의회에 문의를 해야 하며 어린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위임받은 성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잉글랜드의 경우, 여름 방학이 끝날 때 16세가 되면, 6월 마지막 금요일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그리고 18세가 될 때까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⁵¹⁾

·풀 타임 교육을 하는 대학(college)에 다니기

·인턴십 또는 연수를 시작하기

·파트 타임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동안, 주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 활동하기

스코틀랜드의 경우, 3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6세가 되면 그해 5월 31일 이후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16세가 되면 해당 학년도의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될 때 퇴사할 수 있다.

웨일즈의 경우, 해당 학년도의 여름방학이 끝날때 16세가 되는 경우, 6월 마지막 금요일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학기 중 (9월 1일에서 7월 1일 사이) 16세가 되면, 6월 30일 이후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7월 2일과 8월 31일 사이에 16세가 되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학교를 떠날 수 없다.

- 풀 타임 고용

아동은 최소 의무교육 완료 연령에 도달한 후에만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해당 아동은 최대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PAYE⁵²⁾에 임금을 지불

51) 잉글랜드의 경우, 16-19세의 경우 학비 보조금(Bursary Fund)을 신청할 수 있고,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교육 유지 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EMA)을 신청할 수 있다.

52)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PAYE를 운영해야 한다. PAYE는 고용에서 소득세와 국민 보험을 징수하는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 시스템이다. (출처: <https://www.gov.uk/payee-for-employers>)

해야 할 수도 있고, 18세가 되면 성인 고용 권리와 규칙이 적용⁵³⁾된다. 잉글랜드의 경우
○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파트 타임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아동과 청소년 임금⁵⁴⁾

- 16세 미만인 경우

학령기 아동은 국가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다. 16세 미만의 아동은 국민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총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세금이 면제되는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급여에 포함하면 된다.

- 16세 이상인 경우

16-17세 아동 근로자는 시간당 최소 4.55파운드를 받아야 한다. 등록된 고용주인 경우 급여 실행의 일부로 급여를 기록 보고해야 한다. 주당 수입이 120파운드 이상인 경우, 공제와 같은 다른 일반 PAYE 작업도 수행해야 한다. 직원에게 주당 120파운드 이상을 지불하는 고용주는 고용인을 등록하고 PAYE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 면허와 어린이를 위한 감독⁵⁵⁾

- 아동 공연 면허

아동이 의무교육 완료 나이(school leaving age)⁵⁶⁾, 또는 미만이면, 면허가 필요하다.

- 유료 청중이 있고 허가받은 장소의 영화, 연극, 콘서트 또는 대중 공연
- 아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스포츠 행사 또는 모델링 과제

- 아동 보호와 감독

아동이 부모, 학교 교사 또는 가정 교사와 함께 있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한 보

53) <Employment contracts> <https://www.gov.uk/employment-contracts-and-conditions>

54) <https://www.gov.uk/child-employment/paying>

55) <https://www.gov.uk/child-employment/performance-licences-for-children>

56) 의무교육 완료 나이는 아동의 거주지역 규정에 따라 다르다.

<https://www.gov.uk/know-when-you-can-leave-school>

호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는 의회에 보호자 위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아동 고용제한⁵⁷⁾

- 아동이 일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가지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 조례에 따라 지역 의회에서 요구함에도, 지역 의회 교육 부서에서 발급한 고용 허가가 없는 경우

·공장이나 산업 현장과 같은 장소

·학교 수업 시간 동안

·오전 7시 전, 오후 7시 이후

·등교 1시간 전 이상 (그 외 지방법을 따름)

·적어도 1시간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이상을 일할 때

·건강, 웰빙 또는 교육에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업무

·매 해 방학 기간 동안 일하는 곳에서의 2주 휴가가 없는 경우

물론 학기 시간과 방학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을 수 있다.

<학기 중 규칙>

학기중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 일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수업일과 일요일에 최대 2시간

·13-14세의 경우 토요일 최대 5시간, 15-16세의 경우 8시간

<방학 중 규칙>

13-14세 아동은 방학 기간 일주일에 최대 25시간 일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평일 및 토요일 최대 5시간

·일요일 최대 2시간

15-16세 아동은 방학기간 일주일에 최대 35시간 일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평일 및 토요일 최대 8시간

57) <https://www.gov.uk/child-employment/restrictions-on-child-employment>

·일요일 최대 2시간

<아동의 노동 유형에 따른 지역 조례>

- 지방 조례에는 아동이 할 수 없는 일이 명시되어 있어 이 목록에 있거나, 최소 의무교육 완료 나이 미만의 경우엔 일을 할 수 없다. 지방 조례에는 근무시간, 근무 조건 및 고용 유형에 대한 기타 제한 사항이 담겨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의회의 교육 부서 또는 교육 복지 서비스에 문의할 것.

⑤ 아동 고용 허가에 대한 지역 의회 규칙 58)

- 대부분의 지방 의회는 취학 연령 아동을 고용하는 기업이 취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취업 허가 없이 아동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아동과 관련된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고용주는 지역 의회의 교육부 또는 교육 복지 서비스에 연락해 아동 취업 허가 필요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의 : 아동은 학교에서 준비할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

영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 그루밍 행위를 처음으로 처벌한 나라이다. 2003년 성범죄 법을 제정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적 그루밍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법 제정 당시 영국 정부는 법 해설서를 통해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어디서나 통신을 통해 아동과 연락을 취하거나 아동의 신뢰를 얻어서 아동을 상대로 '관계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접촉(만남) 이전의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성적인 행위를 할 의도로 18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만나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을 포착해 미연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영국 성범죄 법 제15조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

58) <https://www.gov.uk/child-employment/local-council-rules-for-child-employment-permits>

한 뒤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12세~16세 사이의 피해자 3명을 그루밍한 후 강간한 혐의로 32세~39세 남성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⁵⁹⁾.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타율·자율 규제

1) 오프콤 규제

오프콤의 <Broadcasting Code>(방송 규정)는 18세 이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방송프로 그램에 출연할 때에는 출연자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와 품위를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이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걱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오프콤의 제작 지침(Guidance Notes) 1.28과 1.29 조항에 따르면⁶⁰⁾ “18세 미만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신체적·정서적 안녕과 존엄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가 프로

<표 4-10>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타율·자율 규제

오프콤 규제 (타율)	BBC 자율규제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규정(Broadcasting Code)의 '18세 이하 보호' 규정 - 제작 지침(Guidance No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Policy, 2019 개정)의 “BBC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 내부 규정 - 제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s)의 9절.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온라인 상호 소통 부분 추가)

59)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47118

60) https://www.ofcom.org.uk/__data/assets/pdf_file/0017/24704/section1.pdf

그램의 출연이나 그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오프콤 2019년 <방송 규정> 1장 1절의 원문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 오프콤 2019 <Broadcasting Code> 1장. 1절. “18세 이하 보호” 규정⁶¹⁾

오프콤의 <원칙 : 18세 미만 보호>

- 일정 및 콘텐츠 정보 1.1 ~1.9
- 마약, 흡연, 용제 및 알코올 1.10
- 폭력과 위협한 행동 1.11~1.13
- 공격적인 언어 1.14~1.16
- 성관련 자료 1.17~1.20
- 나체 1.21~1.26
- 엑소시즘, 주술, 초자연적 행위 1.27
- 18 세 미만의 프로그램 참여 1.28~1.30.

오프콤의 방송 규정 1장 1절은 2003 커뮤니케이션법 sections 3(4)(h), 319(2)(a), (f)와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AVMSD> 27조 그리고 BBC 칙허장과 협정서(BBC Charter and Agreement)에 근거해 시행 효력을 가지고 있다. 1.1 ~1.27은 18세 미만 시청자 즉 아동 시청자 보호를 위한 조항들로 프로그램 내용과 묘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18세 미만의 프로그램 참여> 조항

1.28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18 세 미만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 (emotional welfare)와 존엄성(dignity)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이는 참가

61) Ofcom, 2019. <The Ofcom Broadcasting Code : with the Cross-promotion Code and the On Demand Programme Service Rules> Section one : Protecting the under-eighteens
<https://www.ofcom.org.uk/tv-radio-and-on-demand/broadcast-codes/broadcast-code>

자 또는 부모, 보호자(guardian) 또는 18 세 이상의 부모가 동의 한 내용과 무관하다.

1.29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프로그램 참여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distress)이나 불안(anxiety)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1.30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품(Prizes)은 대상 청중과 참가자 모두의 연령대에 적합해야 한다. (섹션 2 : 유해 및 범죄의 규칙 2.16 참조)

2) BBC 자율 규제

영국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오프콤의 규제가 타율적이라면, 공영방송 BBC의 관련 규정은 대표적 자율규제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방송 방송사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BBC의 경우 우선 아동 인권, 복지, 교육 등 관련 법안을 모두 고려해 만든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이 2019년 개정되어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는데, 9장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규정은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구체적 이슈와 상황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 BBC,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 (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policy)” (2019 개정)⁶²⁾

2019년 개정된 BBC의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 서문은 다음과 같다. ⁶³⁾

“BBC가 젊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 방송사로서의 임무의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BBC는 콘텐츠, 배우 또는 공연자, 쇼 및 이벤트의 관중, 건물 방문자로서 어린이 및 청소년과 직접 협력한다. BBC를 대신하여 아동과 직접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은 아동 보호 정책(Child Protection Policy),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및 BBC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기 위한 지침(Guide)을 준수해야 한다.

BBC를 위해 일하는 직원, 프리랜서, 재능, 지원 아티스트 또는 BBC의 외부 제작 또는 이

62) <https://www.bbc.com/aboutthebbc/reports/policies/childprotection>

63) 본 정책에서 아동(child and young people)은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벤트에 참여하는 계약자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연공이나 역할과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물론 BBC는 법정기구는 아니지만 상호작용의 성격에 관계없이 상호 작용하는 모든 아동을 돌볼 의무가 있으며, 위험이 BBC 외부에 있더라도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 할 책임이 있다. 18세 미만의 복지 보호에 대한 정책은 BBC의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직원, 프리랜서 및 계약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표 4-11> BBC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 목차 구성

Part A. 1.0 도입	2.0 목표 3.0 역할과 책임 4.0 정의
Part B. 아이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 걱정의 유형 6.0 온라인 아동 보호 7.0 성인과 어린이 접촉이 걱정될 경우 무엇을 해야해야 할까요 8.0 혐의 절차 9.0 지정 관청(DO)역할 10.0 범죄경력조회원(DBS)과 스코틀랜드 공개 조회원에 요청하기
Part C. 보호	11.0 편집과 보호 고려사항들 12.0 행동강령 13.0 현장에 아동 이동시키기 14.0 BBC 제작과 행사 손님들 15.0 범죄 경력 확인 16.0 연수 17.0 독립제작사들 18.0 위험 평가 19.0 동의 20.0 아동 공연 면허 21.0 샤프론 22.0 청중 통제 23.0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24.0 업무 절차 흐름

Part D. 법률 배경	25.0 법과 지침서 26.0 범죄 경력 확인 27.0 아동 공연 면허 - 주요 법안
---------------	---

<표 4-11>은 BBC의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의 전체 목차이며, 각 파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A. 도입

BBC가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은 PSB 방송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BBC는 매년 약 6백만 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청중, 배우, 공연자, 방문자로 교류하고 있다. BBC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나이, 장애, 성별, 인종적 유산,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에 관계 없이,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데, BBC는 아동 보호 정책에 따라, 아동 학대⁶⁴⁾와 관련 행위 또는 이미지를 유포하는 것, 소지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⁶⁵⁾을 포함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BBC의 아동 보호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BBC는 오프컴의 <방송규정>과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에 참여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작 정책은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둘째, 어린이가 유해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BBC는 <아동보호 및 보호

64) 아동 학대(child abuse)는 성인이나 다른 아동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온라인 학대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방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무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성적 학대는 아동이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으로, 신체적 접촉이 아니어도 아동이 보고 있거나 아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성적 이미지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학대를 조장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성인 남성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 온라인 학대는 소셜 네트워크나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성적 학대를 말한다.

65) 그루밍(grooming)은 성적 학대, 성적 착취 또는 인신매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 또는 가족과 같은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을 뜻하며, 온라인과 직접 대면을 통해 행해진다.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자는 강력한 조치와 위험 상황 조치와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합의되어야 하며, 기록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상황은 직접 목격했거나 듣게 된 경우 사실 인지가 있었는 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지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혹과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를 직접 상대하는 누구라도 우려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아동 보호팀에게 직접 또는 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 그루밍 또는 아동과 관련된 온라인 보호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BBC 어린이 보호 책임자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BBC의 모든 부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 자문 네트워크’(Children Adviser Network, WCA)를 설립해, 어린이와 일해야 하는 모든 경우 연락 창구로 단계적으로 활용한다. WCA는 어린이 보호 문제를 포함해 직원들을 상대로 아동 인권과 보호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 대상은 BBC와의 계약 및 근무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특히 아동 보호팀(Safeguarding Team)⁶⁶은 ‘환경, 보건 및 안전’부서의 책임자가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와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최신 교육, 정책, 지침 및 규정 준수)을 책임진다.

Part B. 아이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걱정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상처가 났거나, 또래 간 혹은 어른과 어린이의 상호교류를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모바일 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괴롭힘(bullying)을 당했을 때, 아동 성 학대 이미지를 접하거나 누군가와 공유할 때 또는 아동이 이러한 일을 말하면서 ‘비밀’이라 말할 때,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통의 비밀처럼 함부해서는 안된다.

BBC <아동보호 및 보호 정책>의 Part B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아동에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았다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아동이 무엇을 말하는 지 귀담아 들어야 하며, 아동에서

66) 어린이 보호(safeguarding)이란 어린이가 최소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린이 학대와 인력 남용, 어린이의 건강과 개발에 유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가 안전과 효과적 보호받으며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을 상기시킬 질문을 상세하게 혹은 추측하듯이 앞서나가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표현해야 하며, 그 일을 알아야 할 사람에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전달한 후, 이후엔 어떤 대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하는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반드시 규정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BBC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정 중 하나로, 부서 내 어린이 자문 네트워크와 긴밀해 협력해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개인이 판단하기보다 이메일로 보고해야하며, 아동 성 학대 이미지나 동영상은 ‘인터넷 감시 기구’(Internet Watch Foundation)에 즉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와 소통을 하려면 이들과 일하는 조력자들 즉 매니저, 동료, 친구, 샤프론(chaperone)⁶⁷과 접촉해야하며, BBC 내 ‘환경, 보건 및 안전’부서의 책임자가 운영하는 아동 보호 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BBC는 내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례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긴급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999)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BBC의 ‘어린이 서비스’ 팀에서 어린이를 위한 추가 보호가 필요인지 판단해 대처하도록 한다. BBC 내 아동 안전에 관한 문제는 ‘환경, 보건 및 안전’부서 책임자, ‘BBC 아동 보호팀 책임자, 조사팀 책임자, HR 책임자에게 모두 즉각 보고되어야 하며, 책임자들은 사안에 따라 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향후 발생할 문제를 위해 어린이 서비스 센터 또는 지정 관청(Designated Office)으로 사건을 이양해야 한다.

BBC는 아동에 관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고용인을 범죄경력조회원(Disclosure & Barring Service, DBS)와 스코틀랜드 공개 조회원(Disclosure Scotland)에 보내 정식 조사를 받게 해야 하는데, 이는 BBC가 고용주로서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 즉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고,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된 당사자가 먼저 사임하지 않으면 해고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3개월 내 처리되어야 한다.

67) 아역 배우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전문 기술을 가지고 부모를 대신하는 직업을 말한다. 이들은 아동 공연 규정과 현장이 맞게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공연자나 방청객으로 BBC에 방문할 경우 감독을 한다.

Part C. 보호

BBC는 <어린이 보호 행동강령>(Child Protection Code of Conduct)⁶⁸을 따라야 하는데, 첫째 일터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방문자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되도록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나와야 할 경우 상급자에게 채택 근무를 요청해야 하며, 사무직인 경우 반드시 아이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직장 동료에게 아이를 대신 돌봐 줄 것을 절대 요청해서는 안되면, 부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한 후 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자녀를 이벤트나 제작 현장에 데리고 오고자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사전에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어린이가 방송국에 방문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부모(보호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으며, 이벤트나 출연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탈의실, 그린 룸, 백 스테이지에서 대기하는 것은 금지한다. 단 부모가 공연 및 출연 중인 경우엔 사전에 담당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범죄경력조회원(DBS)와 취약 계층 보호 정책(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PVG)는 어린이와 함께 일할 직원을 채용할 경우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이와 일하는 직업은 예를 들어 교육, 훈련, 감독, 개인 도우미(의상 착용, 화장 지우기 등), 감독없이 어린이만을 위한 차량 운전,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주로 아동이 사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또는 서비스 모니터링, 의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등록된 전문가 그리고 이들을 감독해야 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들이 BBC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때는 성범죄 법 2003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증명서는 18개월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출연 및 고용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 BBC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일해야 할 경우, 우선 온라인으로 아이와 함께 일할 경우 주의해야 할 것들 특히 모범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장기간 아이들과 직접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어린이와 일하는 것에 대한 심층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규정은 BBC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모든 독립 제작사에게도 해당되며 문

68) <https://www.bbc.co.uk/delivery/working-with-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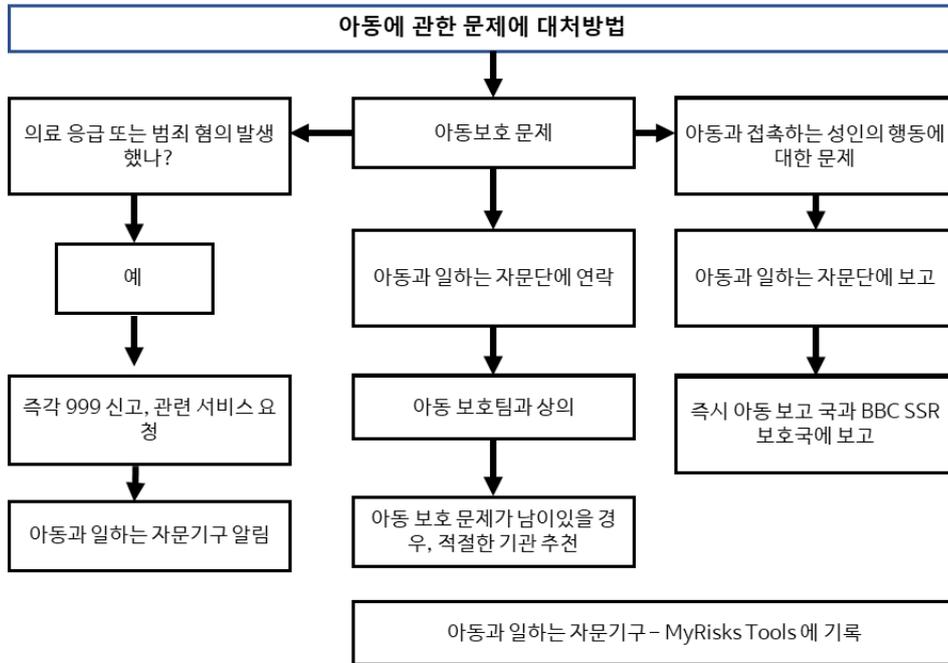
제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 의뢰받은 운영팀(Commissioning Executive)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작진은 어린이와 함께 일하기 전 법적 보호자나 부모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16~17세 어린이의 경우 직접 사인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가 공연 또는 이벤트를 계획할 경우, 가장 최근 무대에서 면허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아동 공연 면허 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공연 및 유료 스포츠와 공연에는 어린이를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부모를 대신해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되는 샤프론은 BBC의 아동 보호 규정과 행동 강령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 현장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를 하게 된다. 때문에 방송사는 샤프론이 방송 제작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자 지침을 제공한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청중으로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성인과 동행해야 하며, 예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BBC는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정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아동 출연자의 경우 소셜 미디어 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할 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셜 커뮤니티 계정을 가질 수 없는데 일부 10~12세 아동이 계정을 갖고 있을 경우, 제작진은 보호자와 어린이에게 안전한 온라인 사용에 대해 숙지시킨다. 이는 컴퓨터, 모바일 폰, 비디오와 디지털 카메라 또는 어떤 전자 장비들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BBC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한다.

다음 [그림 4-1]은 BBC 아동 보호 정책 시행 흐름도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응급 의료 지원이나 형사상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또는 어린이와 접촉하는 성인에 대한 태도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먼저 판단한 후, 이후 어떤 부처와 소통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BBC는 아동 보호 정책을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다음은 직원들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으로 현장 체크리스트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림 4-1] BBC의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 업무 절차 흐름

<표 4-12> BBC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Work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the BBC)> 보고서의 체크리스트

- ※ 체크리스트 질문
- 본 체크리스트는 당신이 BBC 일원으로 혹은 대신해서 아동과 일해야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을 확인하셨나요?
- BBC <어린이 보호 정책>
 - BBC 어린이와 일할 경우에 대한 <행동 강령>
 - 온라인 안전 가이드라인
 - 당신은 아동 보호를 위한 BBC 지역 연락처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
 - 프로젝트에서 어린이와 직접 작업하는 모든 사람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직원 확인을 수행했나요?

- 적절한 동의 기록이 있나요?
- 장소에 맞는 올바른 아동 공연 면허를 가지고 있나요?
- 당신의 위험 평가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위험들을 고려하고 있나요?

체크리스트는 현장에서 어린이와 일을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주요 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먼저 제작자가 어린이 보호 정책과 행동 강령, 온라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 조치에 따라 연락을 했는지, 관련 직업군은 적절하게 구성했는지, 서면 동의와 공연 면허 그리고 위험 요소 평가는 했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2) BBC 제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s)

9절.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Section 9.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관련 조항들 69) 70)

BBC는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을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시켜 자율규제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9절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조항 중 ‘온라인 아동 안전’은 최근 추가된 내용으로 영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청소년의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이용, 온라인 그루밍 같은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 보호 (Safeguarding the Welfar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규정 중 온라인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상호작용(Guidance: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진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가 담겨 있다. 71)

69)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elines/children-young-people>

7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영국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 사례>

71)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children-young-people-online>

<표 4-13> 온라인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상호작용 지도 목차

도입
1부 : 온라인 아동 안전
- BBC 아동 보호 정책
- 그루밍으로 의심되는 경우
- 사이버 괴롭힘
-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신고
- 중재자, 주최자 및 법적 확인
2부: 위협, 프라이버시와 동의
- 개인 정보
- 부모 동의
3부: 콘텐츠
- 조정
- 검색
- 연결

<표 4-13>은 온라인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상호 지도에 관한 목차로 제작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BBC가 최근 중요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총 3부로 되어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부: 온라인 아동 안전

그루밍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루밍”은 아동을 학대하려는 사람이 사용하는 과정으로 이후 학대를 하게 될 아이를 준비시키는 행위이다. 일부 아동 학대자는 소셜 미디어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아동을 찾고, 만나는데, 이들은 종종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의 신뢰를 얻고 비밀의 세계로 유인한다. 일반적으로 친구, 가족 또는 부모와 같은 지원의 출처로부터 분리하려고 한다. 이“그루밍”과정의 결과로 어린이들은 의사 소통과 학대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종종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렵다는 생각한다.

일부 어린이는 자신이 "그루밍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비전문가가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비스듬한 또는 잠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행동의 빈도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루밍"이 의심되는 모든 사건은 즉시 적절한 당국에 보고 할 책임이 있는 보호, 정책 및 규정 준수 책임자 에게 즉시 회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팀은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 (이하"CEOP") 및 NSPCC와 합의한 의심되는"그루밍" 및 아동에 대한 기타 심각한 온라인 위협에 대한 단계적 프로토콜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BBC 사이트 사용자는 의심되는 그루밍 사건을 CEOP에 직접보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불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행동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어디에서나 어린이를 개인 온라인 공간으로 따라 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사이버 괴롭힘은 메시지를 매우 광범위한 청중에게 즉시 전파하며 종종 자신을 식별하지 않고 이를 수행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BBC 공간의 사전 조정은 가정 규칙을 위반하는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확대 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자가 심각한 사이버 괴롭힘 사례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괴롭힘이 지명 된 개인을 희생시키기 위해 혐오 사이트 (BBC 온라인에 있지 않을 수 있음)를 설정 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책임자에게 회부해야한다. 보호, 정책 및 준수 즉시 관련 당국에도 보고하며 부서별 아동 협력 고문에게도 알려야 한다.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신고

BBC 담당자가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또는 비디오가 업로드 되거나 이메일로 전송되었거나 일반인이 BBC 전자 공간에 보낸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보호, 정책 및 준수 책임자에게 연락하고,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BBC 담당자는 관련 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유 공간에 저장하거나 앞으로 전달해서는 안되며, 지명 된 아동 보호 정책 관리자에게 알려야한다. BBC 직원이 BBC가 아닌 공간에서 그

러한 자료를 발견하면 인터넷 감시 기구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유 공간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직원은 또한 사고에 대해 관리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인터넷 감시 기구는 누구나 전 세계 어디서나 호스팅되는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를 신고 할 수 있는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재자, 주최자 및 법적 확인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BBC 플랫폼의 모든 대화방과 메시지 보드는 사전 조정되어야한다. 중재자는 사내이든 외부 상업 회사에 고용되어 있든 관계없이 18 세 미만 아동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확인되어야하는 정부의 공개 및 금지 서비스를 통해 적절하게 조사되어야한다. 스코틀랜드와 북 아일랜드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된다.

2부: 위험, 개인 정보 보호 및 동의

개인정보

우리는 정보 권리 팀의 조언을 받아 어린이들로부터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양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BBC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 할 때 편집 상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야 한다.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어린이, 특히 어린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매우 민감해야 한다. 서면 정보와 시각적 정보의 조합은 특히 민감한 영역이다. 편집 정책은 어떤 정보를 공개하기에 적합한지 조언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보내도록 어린이를 초대하는 경우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 어린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를 쉽게 공개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어린이가 당사에 보내는 모든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 필요한 기간 동안만 안전하게 보관 해야한다.

-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BC를 위해 일하는 계약자 또는 독립 제작 회사가 아닌 한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참여를 설명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영국 데이터 보호법의 동의 연령은 13세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추가 편집 정책 고려사항이 있다.

BBC 기능 또는 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콘텐츠를 BBC에 제출하는 경우 부모는 일반적으로 활동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제공한다. 부모의 동의에 의존하는 경우 법적으로 부모는 해당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부모에게 보내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부모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콘텐츠에 13세 미만의 다른 어린이가 포함된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편집 내용의 성격과 획득 방법에 따라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콘텐츠에 13 ~ 17세 아동 및 청소년의 자료가 포함된 경우, 콘텐츠가 논란이 많거나 민감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의 동의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

- 정보의 양과 민감도
-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 그들은 우리가 보내길 원하는 정보 나 기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것인가?
- 아동의 기대와 우리의 사용은 그들이 BBC에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 정보의 민감성(sensitivity)
- 정보 전송 또는 콘텐츠 게시와 관련된 위험.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 편집 맥락

정보 권리는 제안에 따라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 할 수 있으며 편집 정책도 참조할 수 있다. 다음은 다양한 동의 방법을 다루는 네 가지 예시로 참고할 수 있다.

사례 1 - 어린이 프로그램 <블루 피터>의 뉴스레터 메일 수신 요청 시

18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방송사로부터 정기 이메일을 수신하는데 동의하고자 할 경우, 제작진은 자녀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수집된 이메일과 제공되는 링크는 아동에게 맞는 내용이어야 한다.

사례 2 - <닥터 후 코믹> 제작자

BBC 제작진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부품 장비를 사용하여 자신의 닥터 후 연재 만화를 만들고 게시하도록 했는데, 만화에 추가된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는 아동의 경우에 대해 메일과 전화를 통해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거나, 부모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수락했다.

사례 3 - 온라인 비디오를 제작하는 어린이

자녀가 온라인 게시 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보낼 경우, 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작진이 자녀의 휴대폰 번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례 4 - BBC 애니메이션 <버그베어스>

제작진이 녹음된 어린이 목소리를 사용할 경우, 그 아동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전에 신중한 계획을 세워 부모에게 자녀의 개인정보 사용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 제작진의 자료 이용은 제한이 된다. 제작진과 부모는 정보 권리 및 편집 정책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고 받아야 한다.

자녀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안전, 보안 및 탄력성에서 자녀와 함께 일

하는 사이트의 부모 및 어린 기고자에게 보낼 소셜 미디어 지침 템플릿이 있다.

3부: 콘텐츠

조정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어필하도록 설계된 게시판을 운영 할 때 콘텐츠, 접촉 및 행동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심을 끌도록 설계된 BBC 공간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조정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다른 형태의 중재를 사용하려는 모든 제안은 높은 수준의 아동 보호가 제공됨을 입증해야하며 편집 정책을 참조해야한다.

일반인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게시하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사전 조정됩니다. 다른 형태의 중재를 사용하려는 모든 제안은 편집 정책을 참조해야 한다. 때에 따라 내용이 매우 개인적이거나 아동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가정 규칙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적절한 온라인 지원 또는 헬프 라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BBC 중재자는 이메일 주소, 소셜 미디어 사용자 이름 또는 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 된 메시지를 게시하지 않는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아동용이 아닌 BBC 공간에 이메일 주소를 게시 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중재자는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다.

검색

BBC가 특히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검색을 제공하는 경우 각 사이트 및 관련 하위 사이트가 적합해야한다. 당사가 어린이에게 적합하다고 선택한 사이트에는 중재되지 않은 댓글, 비공개 메시지 기능 또는 동적 광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포함되도록 모든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사용자는 BBC 사이트를 떠나려고 할 때를 명확하게 알리고 BBC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삽입 광고를 확인해야한다.

사용자는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자료가 포함 된 승인 된 사이트를 발견하면 BBC 검색 엔진의 편집 소유자에게 경고 할 수 있어야한다. 적절한 사이트의 선택과 평가는 BBC 편집

자가 수행하지만 기술적 조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 키워드 알림은 승인된 사이트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검색 엔진의 편집자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지 (예 : CBBC 페이지)에서 개별 외부 링크를 선택하는 경우 아동을 위한 검색 서비스에 포함 할 외부 링크를 선택할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어린이용 페이지에 나타나는 글로벌 탐색 페이지의 링크는 일반 사용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최소 참여 연령이 13 세 이상인 사이트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나 사이트에 외부 자선 단체 링크를 포함하여 온라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어려운 이야기 나 문제가 있는 경우 CBBC는 어린이에게 적합한 외부 사이트를 조언 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 사례

영국 공영방송 BBC는 미취학 아동과 취학 어린이를 위한 전문 어린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제작되는데, 2012년 BBC의 국민 MC라고 불리우던 지미 새빌(Jimmy Savile)이 방송국에서 장기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영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미 새빌은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수많은 어린이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자선 활동도 했는데 2011년 사망한 뒤 ITV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서 그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450명 (당시 70%가 미성년자)이 그의 만행에 대해 증언을 한 것이다. BBC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 아무도 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과 BBC 방송을 위해 출연한 수 많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보도국에서 지미 새빌의 범죄를 파헤치는 탐사보도를 제작하려 했고 BBC 경영진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제작 규정들을 정비했다. 하지만 지미 새빌의 BBC 탐사보도는 방영되지 않았고, BBC는 그의 성추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강력한 내부 규제를 만들겠다 약속해 지금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The Guardian, 2012.12.23.).⁷²⁾ 지미 새빌 사건 이후, 영국 사회는 방송사의 출연 관련 보호 및

규정 그리고 제작진 교육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 지금의 타율과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약 10만 명이 아동 성 학대 영상을 시청하며, 경찰은 매달 400~450명을 체포하는데 대부분은 남성이며 아동 성 학대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왓츠앱은 매달 아동 성 학대물을 유포하는 계정 25만 개를 삭제한다고 한다. 즉 소셜 미디어를 통해 깊숙이 파고든 아동 성 학대는 최근 영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정부는 6개의 주요 IT 기업과의 논의 후에 인터넷 아동 성 착취 및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 산업에 대한 '자발적 원칙'을 발표해 아동 성 학대에 관련된 검색 방지, 자료 유포 방지, 위협에 대한 데이터 공유 등의 문제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BBC News, 2020.3.27.)

72) The Guardian, 2012.12.23. The Jimmy Savile child abuse scandal breaks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2/dec/23/jimmy-savile-child-abuse-scandal>

4. 시사점

18세기 산업혁명을 일찍 경험한 영국엔 임금이 비싼 숙련된 성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여성과 아동을 고용했는데, 이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택했던 어린이들이 장시간 일하느라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사회 계층간 빈곤이 악순환되었고, 아동청소년 노동과 교육에 관한 법률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개정되고 발전되었다.

영국에서 노동법(Labour Law 또는 Employment Law)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20년대 이후로, 공장법 체계는 노동법 성립 이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법 체계를 통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도한 국가이다. 그러나 계약법적 전통을 계승한 영국의 법적 불간섭주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관계 규율 원칙은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근로시간에 관한 법률들은 산업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근로시간 규제, 또는 여성, 아동 및 연소자와 같이 인적 속성에 따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 현재는 1998년 근로시간시행령의 틀 속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의 근로시간 규율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했던 역사적 흐름들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원칙들이 수립되어 있는 현재에도,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에 관한 변경 등에 관해서도 권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과 달리 기업 내 절차를 중시하는 개별적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영국의 근로시간 규율에서 보편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위원회를 통한 근로시간의 간접적인 제한 외에도, 전후 영국에서는 공장법 이후 나타났던 산업별 접근법과 여성 및 아동의 특별한 보호 방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과 연소자에 관해서는 연령 보호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그 속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1933년 아동과 연소자에 관한 법률(Children and Young Person Acts 1933)이 그에 해당한다. 이 법률은 총 4차례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소자와 아동에 관한 보육과 복지 서비스, 고용과 근로관계에서의 원칙, 소송상의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일반법 형태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연예오락 산업에 종사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의 지도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아역 배우 등의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아동의 교육이 방해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항목이 있다. 영국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보호자나 후견인이 허가를 받는 절차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고용주인 어린이·청소년이 참가하는 공연의 제작 책임자, 이벤트 조직 책임자, 어린이·청소년 모델의 고용자가 공연 개시 21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청소년의 거주지 지방교육당국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공연이나 대가가 지불되는 운동경기, 모델업무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 그루밍 행위를 처음으로 처벌한 나라이다. 2003년 성범죄 법을 제정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적 그루밍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들들도 그루밍에 관련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와 방송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타율규제를 대표하는 오프콤의 규제는 첫째 방송 규제의 '18세 이하 보호'규정과 제작 지침이 있다. 내용을 보면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이 방송프로 그램에 출연할 때에는 출연자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와 품위를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이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걱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엔 제한시청시간대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마약, 흡연, 용제, 알코올, 폭력, 공격적 언어, 성적인 부분, 나체, 엑소시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 18세 미만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복지(emotional welfare)와 존엄성(dignity)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과 프로그램 참여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distress)이나 불안(anxiety)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 마지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품(Prizes)은 대상 청중과 참가자 모두의 연령대에 적합해야한다는 조항만을 담고 있다. 영국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오프

콤의 규제가 타율적이라면, 공영방송 BBC의 관련 규정은 대표적 자율규제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방송 방송사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BBC의 경우 우선 아동 인권, 복지, 교육 등 관련 법안을 모두 고려해 만든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이 2019년 개정되어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는데, 9장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규정은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구체적 이슈와 상황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BBC의 아동 보호 정책의 핵심은 첫째, BBC는 오프콤의 <방송규정>과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에 참여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작 정책은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둘째, 어린이가 유해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BBC는 <아동보호 및 보호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자는 강력한 조치와 위험 상황 조치와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합의되어야 하며, 기록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상황은 직접 목격했거나 듣게 된 경우 사실 인지가 있었는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지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혹과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를 직접 상대하는 누구라도 우려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아동 보호팀에게 직접 또는 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 그루밍 또는 아동과 관련된 온라인 보호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BBC 어린이 보호 책임자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BBC는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을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시켜 자율규제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9절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조항 중 ‘온라인 아동 안전’은 최근 추가된 내용으로 영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청소년의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이용, 온라인 그루밍 같은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 보호 (Safeguarding the Welfar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규정 중 온라인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상호작용(Guidance: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진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다.

결국 영국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자율과 타율규제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규제의 대상은 분명하고 방향은 포괄적이다. 제작현장 및 관련한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에서, 방송에 의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대우

를 받아야 하는가를 위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자율과 타율규제 모두 느슨하게 접근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BBC 모두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규제의 경우엔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일본의 아동·청소년의 출연자 권익 보호 현황

일본은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행정관청(노동기준감독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출연시간을 제한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출연시간을 금지해왔다. 이처럼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출연시간 제한은 장시간 촬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소속된 예능프로덕션에 의해 스케줄이 결정되는 종업원(노동자)으로 취급되어 생방송은 물론 녹화, 사전미팅, 리허설 등에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8년 6월 중학생 2명을 포함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히카루 겐지(光GENGI)가 오후 8시 이후의 생방송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회적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동년 7월 당시의 노동성(현재 후생노동성)은 다음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노동자가 아니라 표현자로 취급하여 방송출연이 가능하다는 통달을 발표했다(昭和63.7.30基収355号). 그 주요내용은, ①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비대체성), ②시간급료가 아닐 것(비시간급), ③개인사업주로서 독립한 사업주체일 것(비구속성), ④고용계약이 아닐 것(비고용계약)이다. 이후 2005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노동기준법에 따라 의무교육 종료 전의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어 온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의 방송출연 금지 원칙도 '후생노동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연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확대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심야시간 방송출연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방송업계와 엔터테인먼트업계 등에서는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폭언 및 비속어 등 폭력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아동·청소년의 복지' 관점에서 노동기준법을 준수하는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방송업계의 경우, 공공방송의 일본방송협회(NHK)는 「방송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취재와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연)은 「방송기준」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배려, 표현상의 배려, 폭력표현 등에 관한 유

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방송사업자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NHK와 민방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는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폭언 및 비속어 등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동·청소년이 소속하는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경우, 일반사단법인 일본모델에이전시협회(JMAA)와 오너먼트 프로모션 등은 방송 제작과정은 물론 방송광고 제작에서의 안전관리, 구속시간, 출연시간,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한 「연소자·아동의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본의 각종 법률과 방송업계 및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적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규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법적규제

1) 노동기준법

노동기준법(1947년 제정)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로 정의하고(제9조), 이러한 노동자 가운데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최저 연령, 노동계약 체결 및 임금, 노동시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최저연령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아동은 만 15세에 달한 날로부터 3월 31일이 종료할 때까지 고용이 금지된다(제56조제1항). 다만, 만 1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 및 복지에 유해하지 않고 그 노동이 대수롭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면학 시간 외에 고용할 수 있으며, 영화 제작 또는 연극 사업의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제56조제2항). 이러한 아동을 고용한 사용자는 면학에 지장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의 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제57조제2항)⁷³⁾.

73)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할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제57조제1항).

다음으로 노동계약 체결 및 임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며(제58조제1항), 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는 행정관청은 노동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8조제2항). 또한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59조). 이러한 임금의 범위는 임금, 급여, 수당, 상여 그 외의 명칭을 불문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마지막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아동에 대해서는 면학시간을 통산하여 1주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60조제2항). 또한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1주일의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노동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1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60조제3항). 또한 심야시간과 관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고용이 금지되며(제61조제1항), 후생노동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연장된다(제61조제2항). 다만, 영화 제작 또는 연극 사업에 고용된 아동은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노동시간이 금지되며, 후생노동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연장된다(제61조제5항). 이러한 연소자의 심야 노동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19조). 또한 노동기준감독서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을 종료하지 않은 연소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18조).

<표 4-14> 노동기준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노동 가능 범위

시간대	만 13세 미만	만 13세 ~ 의무교육기간	의무교육 종료 ~ 만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05:00 ~ 20:00	영화 제작 또는 연극 사업의 경우 가능 (노동기준감독서 장 허가 필요)	제조·건설 등 이외의 사업의 경우 유해하지 않거나 힘들지 않은 것은 가능 (노동기준감독서 장 허가 필요)	취업가능	취업가능
20:00 ~ 21:00	영화 제작 또는 연극 사업의 경우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역 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	힘들지 않은 사업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역 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		
21:00 ~ 22:00	취업불가	취업불가		
22:00 ~ 23:00			취업불가	
23:00 ~ 05:00			취업불가	

자료: 厚生労働省 労働條件分科會, “演劇子役の就勞可能時間の延長について”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1947년 제정)은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따라 적절히 양육될 것, 생활을 보장받을 것,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 심신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자립 도모, 그 외의 복지를 평등히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아동이 양호한 환경에서 태어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정도에 따라 의견이 존중되고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심신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심신이 건강하게 육성되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심신이 건강히 육성되는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제2조).

한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제44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일본은 1990년 9월 21일 서명하고 1994년 4월 22일 비준함에 따라 동년 5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일찍 성년이 된 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만 1세 미만의 자를 영아, 만 1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유아, 초등학교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제4조).

3) 아동매춘·아동포르노 처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은 계약국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에게 권유 또는 강제하는 것, 매춘 또는 다른 불법적인 성적 업무에 아동을 착취적으로 고용하는 것, 외설적인 연기 및 사물에 아동을 착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9년 5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과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동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아동의 권리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을 규제하고 이들의 행위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이들 행위 등에 따라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제2조), 아동매춘과 아동포르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매춘이란 아동, 아동에 대한 성교 등의 주선을 한 자,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을 그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

속을 하여 해당 아동에 대해 성교 등⁷⁴⁾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포르노란 사진, 전자적 기록⁷⁵⁾에 관한 기록매체 등으로서,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첫째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아동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에 관한 아동의 자태, 둘째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에 관한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셋째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용하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서 특히 아동의 성적인 부위(성기 등 또는 그 주변부, 둔부 또는 흉부를 말함)가 노출되거나 강조되어 있는 것 또는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법은 누구나 아동매춘을 하는 것, 합부로 아동포르노를 소지하는 것,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묘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는 것, 그 외에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또는 성적 학대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의2), 다음과 같은 벌칙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아동매춘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4조), 아동매춘을 주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아동매춘을 주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제5조). 또한 아동매춘을 주선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6조).

둘째 자기의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자(자기의 의사에 따라 소지하기에 이른 자이며, 또한 해당자라는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자에 한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기의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

74) 성교 등이란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를 하거나 자기의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말함)을 만지거나 아동에게 자기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75) 전자적 기록이란 전자적 방식, 전기적 방식 그 외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으로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묘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자(자기의 의사에 따라 보관하기에 이른 자이며, 또한 해당자라는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자에 한함)도 동일하다. 또한 아동포르노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묘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 그 외의 기록을 제공한 자, 이러한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수출한 자, 이러한 목적으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자, 그 외에 아동에게 자태를 취하게 하여 사진,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 등에 묘사함으로써 해당 아동에 관한 아동포르노를 제조한 자도 동일하다. 게다가 아동포르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진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하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 그 외의 기록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자, 이러한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수출한 자, 이러한 행위의 목적으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자, 이러한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외국에 수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출한 일본국민도 동일하다(제7조).

4)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보급·발달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자살 관련 사이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국민 공동의 필터링 제도 도입과 이에 대한 주지·계몽활동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이 안전히 안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제정되었다.

동법은 인터넷에서 청소년(18세 미만)에 대한 유해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에 필요한 조치와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성능의 향상 및 이용의 보급 그 외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기회를 가능한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히 안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권리 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의 열람(시청을 포함)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직접적 또는 명시적으로 청탁, 중개, 유인하거나 자살을 직접적 또는 명시적으로 유인하는 정보, 둘째 타인의 성행위 또는 성기 등의 외설적인 묘사 그 외의 현저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하는 정보, 셋째 살인, 처형, 학대 등의 장면의 처참한 묘사 그 외에 현저히 잔학한 내용의 정보가 해당된다.

이러한 청소년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동법은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와 ISP에 대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제17조~제18조), PC와 게임기 등 무선 LAN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과 접속하는 기능을 보유한 모바일 단말기(휴대전화 단말 및 PHS 단말은 제외함)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제19조). 또한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와 필터링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는 필터링 기능을 높여 유해정보만을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제20조제1항~제2항). 게다가 게시판과 서버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리 서버 등에서 유해정보가 발신된 경우 청소년 열람방지 조치(송신방지 조치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는 회원 사이트로의 이행이나 필터링 소프트웨어와의 연동도 포함)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제21조~제23조).

5) 대화방 사이트 규제법

일본에서는 1999년 2월부터 NTT 도코모가 i-mode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화방 사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 '대화방 사이트'를 통한 아동(18세 미만)과의 원조교제와 아동매춘·아동포르노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대화방 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6월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과 동시에 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등에 의해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 이용에 기인하는 아동매춘 그 외의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은 이성교제(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말함. 이하 동일)를 희망하는 자(이하 이성교제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 여기에 전달하거나 해당 정보의 전달을 받은 이성교제희망자가 전자메일 그 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에 관한 이성교제희망자와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동법은 누구나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이하 금지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첫째 아동을 성교 등(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를 하거나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말함. 이하 동일)을 만지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함. 이하 동일)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둘째 사람(아동을 제외함)을 아동과의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셋째 대상을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고 아동을 이성교제(성교 등을 제외함)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넷째 대상을 받을 것을 제시하고 타인을 아동과의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섯째 전 각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아동을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타인을 아동과의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6) 풍속영업법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여성 등에 의한 매춘 관련 범죄의 증가와 컴퓨터·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수단의 보급·발달에 따라 성을 상품으로 하는 무점포형의 성풍속영업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1998년부터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1948년 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외설표현을 규제해 왔다.

동법은 선량한 풍속과 청정한 풍속 환경을 보전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영업 및 성풍속 관련 특수영업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고 연소자를 이들의 영업소에 출입시키는 것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풍속

영업의 건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에 대하여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장면 또는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의 영상을 보이는 영업으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영상을 전달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에 의해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공안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제31조의7), 가두에서의 광고 및 선전이 금지된다(제31조의8).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는 해당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을 하는 장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또는 청정한 풍속 환경을 해치는 행위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외설적인 영상 또는 아동포르노 영상을 보인 경우 해당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을 하는 자에 관한 자동공중송신장치 설치자가 전조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 설치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는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 설치자에 대하여 동항의 규정이 준수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안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자동공중송신장치 설치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대신과 협의해야 한다(제31조의9).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하여 제31조의8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는 해당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고객으로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31조의10).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1) 방송업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본의 방송업계의 자율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방송의 NHK는 1998년 5월 26일 「국내프로그램 기준」(1959년 7월 21일 제정)을 개정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⁷⁶⁾. ①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풍부한 정조와 건전한 정신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②아동이 흉내를 내는 것에 따라 해가 되는 방송과 아동에게 취지가 오해되기 쉬운 방송을 하지 않는다. ③아동에게 이상한 공포를 주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④아동에게 해를 주는 미신을 다루지 않는다. 또한 NHK는 2020년 2월 28일 「방송가이드라인2020」을 공표하여 미성년자의 취재와 프로그램 출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미성년자의 취재나 프로그램 출연에 있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을 것, ②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취재나 출연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압박과 불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③프로그램의 수록이나 촬영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법령에 따라 수록 시간이나 스케줄 등을 정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방송의 경우는 방송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준수하고 있는 민방연의 「방송기준」(1951년 10월 12일 제정)이 있다⁷⁷⁾. 2015년 11월 9일 개정된 민방연의 「방송기준」은 제3장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배려’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아동을 출연시키는 경우에는 아동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시키지 않으며, 특히 보수 또는 상품을 동반하는 아동 참가 프로그램에서는 과도히 사행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배려’에는 ①아동 및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공헌하고, 좋은 습관, 책임감, 올바른 용기 등의 정신을 존중하도록 배려할 것, ②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아동의 품성을 해

76) NHK 홈페이지(www.nhk.or.jp) 참조.

77) 민방연 홈페이지(<https://j-ba.or.jp>) 참조.

치는 단어와 표현을 피해야 할 것, ③아동 대상 프로그램에서 악덕 행위, 잔인, 처참 등의 장면을 다룰 때는 아동의 기분을 과도히 자극하거나 상처주지 않도록 배려할 것, ④방송 시간대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시청에 충분히 배려할 것, ⑤무력이나 폭력을 표현할 때는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 ⑥최면술, 심령술 등을 다루는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이 안이하게 모방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 ⑦미성년자의 흡연, 음주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방연의 방송기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방송기준의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아동 대상 광고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이 출연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표현에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은 인격형성이 미숙한 연소아·유아(일반적으로 12세 이하)로 정의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는 상품·서비스 광고와 프로그램 광고로 구분하고 있다. ‘아동 대상의 상품·서비스 광고’는 통상적으로 아동이 스스로 많이 구매하는 상품·서비스로서, 예를 들면 완구, 과자류, 문방구 등의 광고가 해당된다.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 광고’는 오로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동화·드라마·게임 등의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타임CM, PT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대상의 광고’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여 아동의 품성을 해치는 것, ②아동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 ③아동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 ④폭력을 긍정하거나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를 암시하는 것, ⑤가정 내의 화제로서 부적당한 것,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 술이나 담배에 관한 것을 각각 다루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대상의 상품·서비스 광고’에 대해서는 ‘아동 대상의 광고’의 유의사항에 더해, ①그것을 갖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것 같은 아동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과도히 이용하는 표현, ②상품의 성능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과도히 과장하거나 과대평가시키는 표현, ③부모, 교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나 저명인 등에 대한 아동의 신뢰감을 부당히 이용하여 구매를 강요하는 표현, ④현상·경품에 대한 아동의 사행심이나 구매욕을 과도히 부추기는 표현(이를 위해 경품표시관계법령이나 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하는 것 외에, 현금이 그 장소에서 얻어질 것 같은 경품기획을 표시하는 것도 포함), ⑤아동에게 위험·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경품 제공 표현, ⑦‘일본 제일’, ‘가장 좋은’, ‘지금 가장 팔리고 있는’ 등의 최상급 표현을 각각 금지하며, ⑧통신판매는 보

호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방연의 방송기준 외에도 민간방송사업자들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별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니혼TV는 「취재·방송규범」으로 과도한 폭력 표현과 노골적인 성표현을 피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26일에는 「방송프로그램 기준」(1959년 7월 20일 제정)을 개정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실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⁸⁾. ①성을 다루는 경우에는 품격 있고 신중히 표현하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주도록 다루어서는 안 될 것, ②법률 및 정의에 반하는 범죄 또는 악덕 행위는 시청자에게 공감을 주거나 모방의 욕망을 시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될 것, ③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명랑한 사회생활 및 공정한 도덕관념을 조장하는 것이어야 할 것, ④교육프로그램은 학문·예술·기예·직업 등 전문적인 내용을 계통적이고 흥미를 줄 수 있도록 다루며 각각의 시청대상에게 필요한 지식·기능을 계발·지도하는 것이어야 할 것 등이다.

TBS는 1992년 4월 1일 「방송기준」(1951년 10월 10일 제정)을 개정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동의 건전한 상식과 풍부한 정조를 양성하도록 노력하며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다루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⁷⁹⁾, 후지TV와 TV아사히는 「프로그램기준」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⁸⁰⁾.

TV도쿄는 1999년 7월 12일 「17시부터 21시의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제작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⁸¹⁾. ①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육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양식 있는 태도로 임한다. ②사회적으로 위법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이지메’ 개그와 성적인 웃음은 적극 배제하며 특히 노골적인 성표현은 삼간다. ④드라마 등에 대해서는 과격한 폭력과 노골적인 성표현을 피하며 부득이한 경우

78) 니혼TV 홈페이지(www.ntv.co.jp) 참조.

79) TBS 홈페이지(www.tbsholdings.co.jp) 참조.

80) 후지TV 홈페이지(www.fujitv.co.jp), TV아사히 홈페이지(<https://company.tv-asahi.co.jp>) 참조.

81) TV도쿄 홈페이지(www.tv-tokyo.co.jp) 참조.

에는 가능한 억제된 표현으로 하고 흥미위주의 관심과 불쾌감·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⑤특히 아동이 시청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 시에는 학교생활 등에서 ‘차별’과 ‘이지메’가 조장되는 표현을 피한다. ⑥극장용 영화의 TV방송 시에는 제작자의 권리에 배려하면서 과격한 폭력 장면이나 과도한 성적 표현을 피하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저작권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필요한 처리(모자이크, 커트 등)를 한다.

또한 TV도려는 2013년 10월 1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기준」(1999년 7월 12일 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17시부터 21시의 시간대는 아동 및 청소년(15세 이하)의 시청에 배려하고 ‘폭력표현’과 ‘성표현’ 등에 특히 주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②예외적인 경우는 사전에 시청자에 대한 고지를 철저히 하여 방송한다. ③‘폭력표현’과 ‘성표현’ 등 청소년에게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내의 체크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한다⁸²⁾. ④청소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때에는 TV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동종의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표현’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성국장의 판단에 따라 ‘표현’의 수정, 삭제 및 ‘프로그램’의 방송 연기, 휴지의 조치를 강구한다. ⑤1주일에 3시간 이상 청소년의 지식과 이해력을 높이고 정조를 풍부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⑥프로그램 개편 시기별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기의 1주일 3시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등 새로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 개발한다. ⑦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능한 사전에 홍보국의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주지하도록 노력한다.

칸사이TV방송은 2012년 10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제2장의 제작·연출에서 연소자의 출연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⁸³⁾. 노동기준법에서는 원칙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61조의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 이하 연령 아동의 근로는 원칙으로 금지

82) 현재 ‘청소년에게 배려해야 하는 시간대’의 프로그램은 편성국 편성부, 편성국 프로그램심사부 등에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83) 칸사이TV방송 홈페이지(www.ktv.jp) 참조.

되지만, 아역으로서의 TV 출연은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학교장의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중학생 이하의 출연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다는 것을 프로덕션 등에 확인하고 허가를 얻더라도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⁸⁴⁾.

한편 위성방송사업자 WOWOW는 2017년 1월 20일 정오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1월 21일에는 정오부터 익일 오전 5까지의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6세 여자 아이를 심야시간까지 장시간 촬영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후 재발방지책으로 업무 항목과 관리·교육체제 개선강화를 발표했다⁸⁵⁾. 전자의 업무 항목으로는 ①촬영현장 이외의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현장에서 ‘안전제일’을 준수하고, ②장시간 촬영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배려하며, ③15세 이하의 아역에 대해서는 출연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정신적인 압박과 불안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명시했다. 후자의 관리·교육체제 개선·강화에는 다음과 같이 6가지를 공표했다. ① 「고사헨드북」의 일부인 제작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새로운 「WOWOW 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아역배우의 출연 가능 시간 및 과중노동 방지에 관한 최소한 준수해야 할 기준 등 프로그램 제작상의 규칙을 명확화하며, 사외의 프로그램 관계자에게도 공유한다. ②관련부서가 연계하여 직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사명을 자각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윤리위반 방지, 법령, 사회상식과 규범 준수를 철저히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내교육체제 구축 및 강화한다. ③사내의 프로그램제작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④관련부서가 연계하여 본건 문제를 포함하여 인권과 법령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한 과거 사례와 상담창구의 문의내용 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기획 결정 시 노동환경과 아동복지, 법령준수 시점의 체크항목을 추가한다. ⑤계약관계 정리 및 계약내용 수정,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⑥관리·보고·책임체제의 명확화, 리스크 발생 시 상사에 즉시보고를 철저히 한다.

84) 이에 대한 실천 사례로는 평소 녹화방송으로 제작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특별기획으로 심야시간에 생방송으로 제공된 가운데 18세 미만의 출연자 부분만 녹화방송으로 출연했다.

85) WOWOW(2017.4.28.), 番組制作時に生じた問題の再発防止策について(URL: <https://corporate.wowow.co.jp>)

2) 엔터테인먼트업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본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자율규제는 방송업계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1993년 4월 일본패션모델협회와 일본모델사업자협회가 합병하여 국내 유일의 업계단체로 발족한 일본모델에이전시협회(JMAA)는 2020년 8월 현재 총 65개의 회원사에게 「연소자·아동의 출연과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 외에는 출연자가 소속하는 사무소의 규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⁶⁾.

JMAA는 모델 및 모델에이전시의 사회적 지위 확립·향상과 업계의 발전을 취지로 하여 특히 초상재산권(퍼블리시티권)의 확립·유지·옹호, 관련단체와의 원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JMAA는 초상재산권의 확립·옹호·계몽, 모델사업에 관한 연구·환경정비, 모델사업에 관한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모델사업에 관한 상담장구, 모델사업자와 모델에 관한 정보의 일원화·정보네트워크 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JMAA의 주요 실적으로는, ①초상권·초상재산권에 관한 계몽활동, ②직업 소개와 모델 매니지먼트업의 모순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 ③초판의 「모델기준표」에서 현행의 「출연과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과 개정, ④ 「연소자·아동의 출연과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책정과 개정 등이 있다.

JMAA의 「연소자·아동의 출연과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 모델·탤런트의 수요 증가와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어린이들의 보호와 건전히 성장하는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JMAA는 기업으로서 어른으로서 법률과 조례에 위반하지 않고 어린이들의 꿈의 실현을 지원하고 건전히 성장하는 것을 매니지먼트의 기본자세로 삼도록

86) JMAA 홈페이지(www.j-m-a-a.com) 참조. JMAA의 회원사 가운데 도쿄에 소재하는 Sugar&Spice는 「연소자·아동의 출연과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동사는 1989년 10월 2일 설립되어 모델·탤런트의 매니지먼트 및 관리업무, 모델·탤런트의 양성업무, 광고 선전의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일체 업무, 모델·탤런트 및 캐릭터 등의 저작물·상표 등의 지적재산 관리 및 판매업무, 이벤트·웹사이트의 기획·제작·운영에 관한 일체 업무, 그 외에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Sugar&Spice 홈페이지(www.sugar-spice.co.jp) 참조.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첫째 회원사가 연소자의 출연을 기용할 때 동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연소자 보호를 위해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연 내용을 조정하며 매니지먼트와 제작에 관한 공통 인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영유아, 초등학생은 물론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들에게는 성장과정에서 토탈트와 모델 이외의 길도 선택지에 추가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활약하여 각광을 받아 온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받고 진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아이들의 저연령화, 어린이 토탈트의 활약에 따라 토탈트와 모델을 지향하는 어린이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의 관심도 높은 점에서 일단 어린이 출연자가 사고나 사건에 직면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와 양성기관, 모델 에이전시가 다양한 각도에서 책임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JMAA의 가이드라인은 영유아(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와 아동(0세부터 중학생)으로 구분하여 광고출연 등의 안전관리, 출연 조건에 대한 배려, 장기·복수에 걸친 출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광고출연 등에서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영유아·아동(특히 12세 미만)은 원칙으로 오디션·현장에 보호자가 동반하며, 출연자 본인은 물론 동반자도 포함하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배려한다. ②현장 상황에 따라 동반자도 상해보험 등 보상대상으로 한다. ③오디션이나 촬영 시에는 보호자 등에 의한 픽업,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의 확보에 배려한다. 이 가운데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는 이동·대기·촬영·수륙 등 정식 촬영에 필요한 시간이 신체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동하는 보호자의 건강상태에도 배려하며, 영유아는 일상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진행 스케줄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면(낮잠)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아동은 교육을 우선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 촬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요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외설적인 이미지를 환기하는 촬영 설정의 영상, 화상으로의 출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영화·드라마의 연기 장면에 대해서는 제작회사, 출연자 소속 사무소 쌍방이 신중히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폭력·성묘사·이지

매·차별·음주·흡연 등)이 있는 출연은 거절할 수 있으며, 영화·드라마의 연출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출연 조건에 대한 배려에는 구속시간, 시간대, 대기 장소의 환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속시간에 대해서는 촬영지로의 이동·대기·휴식·정식촬영을 종합하여 구속시간에 배려하며, 촬영이나 수록 현장에서의 구속시간은 연령과 개인별 인내력(신체적·정신적)을 고려하고 아래의 시간을 참고하여 스케줄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영아(1세 미만)는 2시간 정도, 유아(6세 미만)는 3시간 정도, 아동(초등학교 저학년)은 4시간 정도, 아동(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 6시간 정도이며, 의무교육 중의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대에 대해서는 촬영이나 수록 현장의 집합(개시) 시각은 오전 7시 이후, 해산(종료) 시각은 오후 8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시간 외의 집합 시각, 종료 시각이 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 등의 준비, 숙박 준비, 그 설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집합(개시) 시각은 출연자의 교통공공기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 장소의 환경에 대해서는 촬영이나 수록 현장, 무대 출연 현장의 어린이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등은 건전한 환경(흡연 장소, 소음, 위험을 동반하는 기자재 등의 부근은 피한다)으로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연극·영화 등의 장기·복수에 걸친 출연 등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작회사, 흥행 등의 운영회사 등 현장 담당 회사가 사용자로서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 시의 용도로 취득한 연소자와 그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토에 소재하는 예능사무소로서 만 20세 미만의 텔런트·아티스트 등이 많이 재적하고 있는 오너먼트 프로모션은 2014년 7월 23일 「연소자·아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⁸⁷⁾. 동 가이드라인은 ①저연령자의 노동 범위가 노동기준법 등의 법률과

87) 오너먼트 프로모션은 2011년 5월 1일 설립되어 서버 운영·관리, 콘텐츠 제작·운영·관리, 모델·텔런트 발굴·육성·프로모션 및 매니지먼트, 프리 텔런트 및 타사 소속 텔런트 캐스팅·외부매니지먼트, 자사 이벤트·라이브콘서트·촬영회의 기획·제작·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오너먼트 프로모션 홈페이지(URL: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의 공통인식에 의해 준수되고 있는 점, ②학업 우선이라는 점은 물론 야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저연령의 탤런트는 전무하며 아동 복지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③만일 저연령의 출연자가 사고나 사건에 직면하게 된 경우에는 이벤트 등의 주최자와 제작사뿐만 아니라 출연을 중개한 자와 소속 사무소, 운영책임자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숙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①저연령자를 사무소에 소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신분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입장과 생활환경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②그 장소에 부모가 없는 경우나 인솔하는 경우 등은 현장 매니저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호자로서의 역할(대리자)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의 관점에서도 관계자들에게 특단의 배려를 권고하고 있다.

오너먼트 프로모션의 「연소자·아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미성년자를 만 20세 미만자, 연소자를 만 18세 미만자, 아동을 만 15세에 달한 날로부터 3월 31일까지의 자(중학생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노동기준법 제56조 제2항과 제61조 제5항, 각 지자체의 조례, 과거의 판례 해석에 따라 당일 20시 이후부터 익일 5시 이전의 출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화 제작이나 연극 사업 등에서 예술성이 높은 안전에 대해서는 필요 서류에 의한 등록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21시까지의 출연을 인정한다(음악이나 연극의 라이브 상연,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은 포함하지 않음). ②구속시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4시간 이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영유아 및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보호자를 출연 현장에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출연 종료 후 심야에 혼자 귀가하거나 전철·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⑤익일의 학업과 취침시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행사나 방송·방영 안전에 대한 출연은 금지하며, 평일 심야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⑥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아동은 특히 취학을 최우선으로 한다. ⑦장기공연의 경우에는 등록 서류 등에서의 조정이 필요하여 상담한다. ⑧특별한 사정에 의한 조조촬영은 취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요일에 한다. ⑨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폭력, 성묘사, 이지메, 차별, 도

<http://ornament-pro.com>) 참조.

박, 음주, 흡연, 목욕장면, 사망연기 등)은 기본적으로 거절한다. ⑩환경이 현저히 나쁜 장소(야간의 변화가, 러브호텔, 해충이 많은 장소, 산속 등)에서의 수록·행사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⑪연기나 연출이 아동의 향후 인생에 심적 외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록은 거절한다(그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름). ⑫수영복 화보나 수영복 촬영이 있는 안건은 기본적으로 거절한다.

다음으로 연소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노동기준법 제56조 제2항과 제61조 제1항, 각 지자체 조례, 과거의 판례 해석에 따라 당일 22시 이후부터 익일 5시 이전의 출연은 금지한다. ②구속시간은 8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③출연 종료 후 심야에 혼자 귀가하거나 전철·버스로 귀가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④익일의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행사나 방송·방영 안건에 대한 출연은 금지한다. ⑤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폭력, 성묘사, 이지메, 차별, 도박, 음주, 흡연 등)은 기본적으로 거절한다. ⑥환경이 현저히 나쁜 장소(야간의 변화가, 러브호텔, 해충이 많은 장소, 산속 등)에서의 수록·행사에는 출연을 금지한다. ⑦수영복 촬영 및 소위 착의 에로티시즘 등의 수록은 거절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①기본적으로 학업을 우선시하고, ②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음주, 흡연, 각성제 등)은 기본적으로 거절하며, ③아이돌 비디오나 풍속관련지 등에 대한 출연·수록은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서널 텔런트 에이전시로서 외국인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에 종사하는 Free Wave(이하 모델사무소)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객(이하 클라이언트)이 준수해야 하는 「출연에 관한 규약」을 마련하고 있다⁸⁸⁾. 동 규약은 고객과의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거래가 성립한 때에는 기본계약서, 개별계약서를 체결하

88) Free Wave는 1992년 댄스 에이전시로 창업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외국인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고물·TV·영화 등에 대한 외국인 모델·텔런트·배우·엑스트라 등의 매니지먼트, 외국인 내레이터 캐스팅·매니지먼트 및 내레이션 데이터 납품업무, 외국인 및 일본인 댄서·뮤지션·퍼포머 매니지먼트 및 코디네이트, 외국인 모델 초빙, 외국인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이벤트 등에 대한 외국인 뮤지션·퍼포머 등 캐스팅 및 코디네이트 등이다. Free Wave 홈페이지(<https://f-w.co.jp>) 참조.

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약은 클라이언트 또는 그 광고주로부터 기획·제작을 위탁받은 광고 또는 프로그램(TV, 라디오 등의 방송, 스틸사진, 동영상, 음성수록, Web 등 매체에서의 소재를 말함)에 대한 모델사무소 소속 모델(텔런트)의 출연 및 해당 출연에 관련되는 제작물의 사용 승낙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약에는 ①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모델사무소 모델(텔런트)의 출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모델사무소는 클라이언트에게 신속히 보고한 후 대체 모델(텔런트)의 준비 등에 관한 조치를 협의할 것, ②클라이언트는 모델(텔런트)의 제작물 사용 시 소속 모델(텔런트)의 품위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 ③모델(텔런트)은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의 광고주의 품위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을 것, ④클라이언트 또는 모델사무소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체결되는 개별 안건은 클라이언트와 모델사무소의 개별계약에 따라 적용되며, 개별계약 체결에서는 모델사무소와 소속 모델(텔런트) 간에 체결되는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모델사무소가 개별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권한(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용자는 ①사용내용, 사용기간, ②출연매체, ③출연료 및 초상사용허락요금 및 이들의 지불조건, ④경쟁의 유무 및 조건 그리고 그 외에 을이 부담하는 의무, ⑤사용지역, ⑥경쟁조건, ⑦출연료(초상사용허락요금을 포함한다), ⑧지불조건을 모델(텔런트)에게 사전에 제시하고 별도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Free Wave의 「출연에 관한 규약」은 외국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또는 클라이언트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①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에 준하는 구성원, 폭력단 관련 기업, 협잡꾼 등, 반사회적 세력에 관련되는 단체와 개인 클라이언트, ②출연자의 신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 ③모델(텔런트), 모델사무소의 신용·명예·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④포르노를 포함하는 표현(성인비디오를 포함한다) 또는 외설적인 표현, ⑤출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⑥진실로 꾸미고 있는 소위 “날조” 등 허위 행위의 출연, ⑦모델사무소, 모델(텔런트) 외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⑧공서양속과 법령에 위반하는 활동 등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⑨모델사무소의 허가 없이 모델(텔런트)와 직접 연

락을 취하거나 교섭하는 것, ⑩당사의 서비스에 경쟁하는 업자, ⑪스톡사진 등의 사용기간과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 ⑫15세 이하 모델·아역의 8시간을 초과하는 촬영 및 20시를 초과하는 촬영 등이다.

또한 동 규약은 기타 주의사항으로 출연료, 구속요금, 구속시간, 경쟁, 연장, 매체·지역 추가, 아카이브, 지불, 취소, 안전 확보와 보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①출연료·사용료는 사용매체·기간·지역, 구속일시, 오디션과 경쟁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며, 소비세는 출연료와 별도 접수를 받는다. ②본 촬영일 이외의 출연자 구속(리허설, 날씨 대비, 이동일, 피팅 또는 내레이터의 오디션 본방 등)에는 별도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협의 후 결정한다. ③1일 구속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15세 미만은 20시까지, 18세 미만은 22시까지), 지정된 구속시간을 연장한 경우는 연장 요금을 청구하며, 심야에서 아침에 이르는 촬영의 경우는 사전에 상담하고 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비용 부담으로 택시로 이동한다. ④경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전의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며, 지역(일본 국내, 전 세계)도 명확히 알린다. ⑤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취지를 알리고, 만일 갱신의 공지가 1개월 이내로 남게 된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계속 게재된 경우는 페널티가 발생함과 동시에 계약 연장을 책임지지 않으며, 갱신에 관해서는 조건 등의 이유로 연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⑥지역이나 매체가 추가되는 경우는 별도의 사용료가 발생하며, 계약 연장과 같이 1개월 전까지 조건 등을 제시한다. ⑦계약 기간 중에 발신한 SNS, 인터넷 상의 아카이브에 관해서는 경쟁 등 캐스트의 사정으로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⑧거래 실적이 없는 클라이언트, 개인 클라이언트는 촬영일 전날까지 지불하며, 이미 거래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방법에 관해서는 촬영이 결정되기 전에 마감일, 지불일 등 사전에 확인한다. ⑨결정 후의 취소에 관해서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전날과 당일은 100%, 그 이전의 취소는 50%~). ⑩출연 시에는 출연자의 안전에 충분히 배려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계약을 하는 것 외에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전부 부담한다.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 사례

1) 공적규제기관

일본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위한 공적규제기관은 노동기준법을 관장하는 후생노동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1999년 내각 기능의 강화, 성청 재편, 독립행정법인 제도의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성청 등 개혁관련법」이 성립됨에 따라 「국가행정조직법」의 일부 개정 및 「후생노동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2001년 1월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합하여 설립된 정부기관이다⁸⁹⁾. 이처럼 후생성과 노동성의 통합은 국민생활의 보장·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증진과 노동환경 정비, 직업안정·인재육성을 종합적·일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현재 건강·의료, 어린이·육아, 복지·간호, 고용·노동, 연금 등의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남녀 공동 참가,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고 사회보장정책과 노동정책을 일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후생노동성은 1980년대부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그 시작은 1988년 6월 당시 국민적인 아이돌 그룹인 히카리 GENJI가 오후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가요프로그램에 만 14세의 중학생 멤버도 함께 출연함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가 소속사무소를 조사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히카리 GENJI와 심야노동에 관한 문제는 당시 국회에서도 화제성의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당시 노동성은 히카리 GENJI의 중학생 멤버가 심야시간에 TV 출연할 수 없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1988년 7월 TV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아이돌과 가수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소위 “예능 토티트 통달”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①자신이 제공하는 가창·연기 등이 기본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고 예술성과 인기 등 자신의 개성이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비대체성), ②자신에 대한 보수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비시간급), ③리허설이나 출연시간 등 스케줄 관련에서 시간적 제약이 있더라도 프로덕션 등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경우(비구속성), ④

89) 후생성은 1938년 1월 내무성 위생국과 사회국 등을 통합하여 발족되었으며, 노동성은 1947년 9월 후생성에서 담당하고 있던 노동행정을 통합하여 발족되었다.

계약형태가 고용계약이 아닌 경우(비고용계약)로서, 이들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판단하지 않고 노동기준법에 의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히카리 GENJI를 비롯하여 SMAP, SPEED, 모닝무스메 등과 같은 아이돌 가수 그룹은 초·중학생 멤버도 심야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⁹⁰⁾.

이와 같이 노동성의 “예능 토틀트 통달”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그 대상의 차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1999년 12월 대형 프로덕션의 호리프로에 소속하는 15세 여성 토틀트가 마이니치방송의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호리프로와 마이니치방송의 사원이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서류 송검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00년 제147회 국회 중의원 청소년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도 히카리 GENJI 사건과의 불공평성에 대해 논의되었지만, 당시 노동기준 국장은 해당 아역 토틀트는 인기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예능 토틀트 통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⁹¹⁾.

한편 연극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연기하는 아역 배우가 오후 8시까지 연기를 마쳐야 함에 따라 마지막까지 무대에 남아 커튼콜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⁹²⁾. 이에 요코하마시와 공익사단법인 일본연극흥행협회는 2003년 6월 당시 코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특구의 하나로서 오후 10시까지 노동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아역 특구’를 제안했다. 이러한 ‘아역 특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구실과 규제개혁회의의 그리고 문화청이 예술을 지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재능 발현과 예술 진흥의 관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90)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예능프로덕션에 소속되어 있어 ‘노동자’에 해당한다. 이는 대체로 예능프로덕션이 소속 토틀트의 스케줄 관리와 일의 선택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토틀트의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능프로덕션의 종업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梅田康宏·中川達也 (2016), よくわかるテレビ番組制作の法律相談 第2版, 日本加除出版, pp.158-162

91)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토틀트의 계약의 실태, 내용, 소득의 과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결과, 이 사건의 토틀트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소득이 많은 토틀트 등과는 다르며, ‘인기 상승 중’ 또는 ‘그다지 매출이 확보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답했다. 2014.11.12. Kotto Dori Law Office 칼럼(<https://www.kottolaw.com/column/000893.html>)

92) (社)日本演劇興行協會(2007), 演劇子役の出演可能時間の延長について(要望)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지명도가 있는 가수와 탤런트 등 ‘주역’에 대해서는 노동자보다도 자영업자의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오후 8시 이후의 출연을 인정하고 있지만, ‘단역’은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했다⁹³⁾. 다만, 후생노동성은 노동기준법의 완화가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노동기준법의 해석을 일률적으로 변경하여 연극 사업에 대해서는 제61조 제5항의 ‘후생노동성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연기를 하는 업무”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중학생 이하의 연극 아역도 오후 9시까지 노동시간을 인정했으며, 이후에는 가수 등에도 확대했다⁹⁴⁾.

2) 자율규제기관

그러나 일본의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7월 NHK와 민방연이 제3자 기관으로 설립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roadcasting Ethics & Program Improvement Organization, BPO)가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BPO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시청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방송에 대한 고충이나 방송윤리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방송과 방송윤리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BPO는 방송프로그램의 취재·제작 방식과 내용에 대한 방송윤리 문제를 심리·심의하는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에 의한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청소년이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고충을 접수하여 심의하는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여 견해·제언·성명 등을 발표하고 있다.⁹⁵⁾

93) 社長のための労働相談マニュアル(URL: www.mykomon.biz/jikan/nensho/nensho_seigen.html)

94) 2017.6.22. Yahoo 기사(URL: <https://news.yahoo.co.jp/byline/konnoharuki/20170622-00072413/>)

95) 청소년위원회는 2000년 4월 1일 NHK와 민방연의 임의단체인 방송프로그램향상협의회 내부에 설립되었지만, 2003년 7월 1일 방송프로그램향상협의회와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로 통합됨에 따라 BPO 산하의 위원회로 계승되었다. BPO에 대해서는 한영학(2012), 일본 언론법 연구, 도서출판

또한 BPO는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의원의 선임 및 BPO의 예산·결산과 사업·업무를 의결하기 위해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4명의 이사를 방송사업자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고 6명의 이사는 NHK와 민방연이 선임하고 있다.

BPO의 회원사는 2020년 7월 현재 총 207개사(NHK, 민방연, 민방연 회원사 205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송사업자는 BPO의 각 위원회별 심의·심리 등에 협력함과 동시에 방송윤리 문제를 지적받은 경우 구체적인 개선책을 포함한 대응상황을 일정 기간 내에 보고하고, BPO는 그 보고 등을 공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시청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진 프로그램, 시청자 불만이 제기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현재까지 공표한 의견은 총 13건으로서,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2건이다.

<표 4-15> 청소년위원회의 견해·제언·성명

공표 일자	공표 제명
2000.11.29.	버라이어티 계열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2002.03.15.	충격적인 사건·사고 보도의 어린이에 대한 배려 제언
2002.06.19.	법에 의한 미디어 규제에 반대하고 방송업계의 자율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
2002.12.20.	소비자 금융 CM에 관한 견해
2004.03.19.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2004.12.08.	혈액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망
2005.12.19.	아동살상 사건 등의 보도에 대한 요망
2006.10.26.	소녀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요망
2007.10.23.	출연자의 심신에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견해
2008.04.11.	아동의 나체, 특히 남자 아동의 성기 노출에 대한 주의환기
2009.11.02.	청소년의 영향을 고려한 약물문제 보도에 대한 요망
2012.03.02.	어린이의 영향을 배려한 재난보도에 대한 요망
2013.03.04.	토카이TV 『행복의 시간』에 관한 위원장 답화

자료: BPO 홈페이지(www.bpo.gr.jp)

한울, 461-472쪽 참조.

먼저 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6월부터 소녀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TV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동의 인권·복지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년 10월 26일 NHK와 민방 각사에 배려를 요구하는 「소녀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망」을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TV프로그램에서 아동에 대한 에로티시즘의 과잉표현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함에 따라 소녀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풍조를 증폭시킬 위험성이 높은 점,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로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범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의 인권과 복지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으며, 청소년 문제에 관한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하여 방송국의 자주·자율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배려를 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망을 발표했다. 어린 소녀에게 과도히 성적인 자태를 연기시키고 이를 경쟁시키는 프로그램은 소녀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유소년기 때부터 과도하게 성적대상이 되는 것은 소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자아의식이 육체와 성에 고착된 피상적인 자기관심에 빠질 위험이 있는 점, 본래 성인에 의한 아동의 성적 착취 또는 성적 학대로 다루어져야 할 ‘원조교제’를 단순한 풍속 상의 관심으로만 다루는 정보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점 등 이들은 모두 아동의 성 및 성의식 발달에 관한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고, 아동의 권리조약 제34조와 아동매춘·아동포르노 처벌법에 저촉되며, 게다가 방송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송기준과 방송프로그램 기준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령 해당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출연자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경우 동일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위원회는 향후 아동을 출연시키는 프로그램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관하여 상기의 법률 및 기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출연자 및 시청자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질 것을 요망했다.

다음으로 청소년위원회는 2008년 4월 11일 남자 아동의 성기를 모자이크 등의 영상처리 없이 방송한 TV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의환기를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BPO에 접수되는 의견 중에서 “남자 아동의 전라와 성기 노출”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2005년도 6건,

2006년도 18건, 2007년도 42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시청자 불만과 아동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감안하여 2007년 11월부터 5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주의환기를 발표했다. TV에서 방송된 아동의 나체가 인터넷에서 악용된 확증은 없지만 인터넷 상에서 남자 아이를 포함한 아동포르노가 범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대화방 사이트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다양한 영상이 합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점에서도 TV에서 방송된 나체와 성기가 악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이 한번 인터넷에 이용되면, 그 영상은 반영구적으로 남으며 계속 복제되어 아동의 성장 후에 심한 마음의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으며,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TV화면 속에서 자신의 나체와 성기가 노출된 아동이 향후 친구들 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는 등 현저히 수치심을 느껴 상처를 받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청소년위원회는 이들 모두 아동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의 아동포르노를 둘러싼 상황을 우려하여 민방연 방송기준 제78조(전라는 원칙으로 다루지 않는다)를 고려하여 TV영상의 악용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TV관계자에게 주의환기를 요구했다.

4.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의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과 방송업계 및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적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규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은 방송법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아니라 노동기준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동기준법은 한국과 같이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최저 연령, 노동계약 체결 및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1980년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표현자’로 취급하는 “예능 토탈트 통달”을 공표하여 노동기준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005년에는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오후 8시

에서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이 오후 9시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극계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라이언 킹’과 같이 인기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첫째 상연시간이 휴식을 포함하여 2시간 50분에 이르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30분에 개시하면 종료시간이 오후 9시를 초과하게 되어 중요한 역할을 연기하는 아역이 커튼콜에 나올 수 없어 관객뿐만 아니라 아역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점, 둘째 평일의 공연개시 시간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은 방문할 수 없는 시간에 공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 후의 관람이 곤란한 점, 셋째 오후 9시 이후에 아역을 성인으로 대체하더라도 공연의 완성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⁹⁶⁾.

한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 문제는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이라는 관점도 필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라는 관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오후 8시 또는 오후 9시로 구분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는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예능 토탈통달”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청소년은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소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⁹⁷⁾.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송업계와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업계의 아동·청소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위성방송사업자 WOWOW는 2017년 4월 여자 아역배우의 심야시간 장시간 촬영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새로운 「WOWOW 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사외의 프로그램 관계자에게도 공유할 것을 공표한 이후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등 소극적·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96) (社)日本演劇興行協会 (2007), 演劇子役の出演可能時間の延長について(要望), 김경환 (2015). 일본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기준 및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동향, pp.68-76

97) 2014.11.12. Kotto Dori Law Office 칼럼(<https://www.kottolaw.com/column/000893.html>)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JMAA와 오너먼트 프로덕션, 그리고 Free Wave는 모두 출연일반규칙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구속시간, 안전규칙, 성보호에 관한 규정을 공통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더해 JMAA와 오너먼트 프로덕션은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동의, 학습권 보장, 장기복수 출연, 방송내용 관련에 관한 규정들도 마련하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와 주요함의

1.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환경 실태조사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정책 방안에 대한 방송 제작자,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에이전시 운영자, 아동인권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1차와 2차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답변자 다수의 동의와 높은 중요도 평균이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방송 제작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침해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항목들로 짧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해야하는 제작자와 보호자, 그리고 출연자 당사자들조차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방송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폭력장면 촬영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전문가의 판단과 사후 심리 상담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이 아동프로그램 출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문제점이다.

넷째,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장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제작비 문제로 인해 여러 날 촬영이 불가능하여 출연자가 불가피 장시간 대기를 하며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다.

여섯째,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성희롱, 욕설, 성적 접촉 등의 문제는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야간까지 지연되는 촬영시간이나 안전초치 미비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점이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장을 이루기 위해 개선되어야할 점을 답변자 다수의 동의와 높은 중요도 평균이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인 대상 프로그램 제작자를 포함하여, 현직 PD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방송이 편집되어 송출될 때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자의 동의나 책임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량영역을 지나치게 넓히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방송사가 범죄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을 인터뷰하는 경우, 화면 모자이크나 오디오 변조 등 신변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방송 제작진들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와 함께, 방송 후에도 온라인 악성 댓글 등으로 출연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강제성이 있는 법적 의무사항과 윤리적 지침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지침으로는 부족하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덟째, 현행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도울만한, 관련 모범 사례 및 피해야 할 예시와 같은 실무에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최신 사례집 등이 있어야 한다.

아홉째, 정부부처의 실질적 제도 마련과 함께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열째, 방송 제작자 뿐 아니라 연예기획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수칙과 에이전시 대상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경우 에이전시가 대신 계약을 하고, 구두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연료 지급에 대한 지침은 방송사 뿐 아니라 에이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반드시 적시되어야할 항목이라는 점이다.

열한째,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등의 새로운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동·청

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열두째,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캠페인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방송 제작 현장에서 지적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장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안들은 적지 않으나, 그래도 본 연구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 중 긍정적인 측면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촬영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도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또 하나 발견한 것은 현재 방송 제작현장에서는 제작비와 추가 인력이 특별히 투입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 방송제작자들은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권익 보장에 가급적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제작비 문제로 인한 야간 촬영 강행 문제도 지적했듯이, 제작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방송 제작 환경의 불완전성과 물리적·경제적 악조건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는 제작비 증액과 연동되며, 현재와 같이 방송 제작자가 최소한의 제작비와 최소한의 인력을 투여하는 한도 내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장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의 실질적인 실현은 제작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방송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실무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장 교육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한 제작비의 추가 지원 등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 분석

1)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주요 법률과 특징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된 법률은 세 가지로 나눠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법률로서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용역, 제작업, 기획업, 사업자 등의 주요 정의와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거나 표준계약서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근로기준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과 소년은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다섯째 미디어 관련 법률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률에서 정작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그 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연령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 최저연령은 15세 기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와 특징

첫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 용역의 계약과정, 용역 제공과정, 청소년보호 특별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계약 시 계약관계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에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권 보호 조치(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해서도 아니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계약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용역제공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설명 의무와 성매매 알선 권유 또는 유인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로는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유해물 광고에 용역 금지,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금지 직종이나 업종에 용역 알선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야간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금지, 15세 이상은 1주일에 40시간 초과금지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다음날이 학교 휴일일로 청소년과 친권자(후견인)이 동의 한 경우 야간 촬영이 가능하며, 15세 이상은 다음날 학교 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청소년과 친권자(후견인)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청소년의 보수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근로 최저연령, 근로계약 관련, 근로시간 제한 크게 세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며 시행령을 통해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가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하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제한, 휴일 및 야간 근로 금지 원칙을 적용하나 18세 미만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셋째 미디어관련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사항이다. 방송법은 음란·퇴폐 또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방송의 공적 책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 방송심의규정, 프로그램 등급제, 편성규제 등에서 일부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발견된다. 아

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해서는 방송심의규정에서 다루고 있는데 범죄사건 보도, 범죄묘사 장면, 사건재연 장면에서 어린이 출연 금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조항을 들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조항에는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 출연 금지 원칙, 성인 대상 프로그램 방청인 동원 금지, 부적합한 장소 출입을 긍정적으로 묘사 금지, 흡연·음주 장면 금지, 범죄사건 인터뷰 시 동의, 과도한 노출 복장이나 선정적 장면 연출 금지 등이 담겨있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보호, 근로자로서 보호, 미디어 관련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비교적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처럼 강하게 적용하기에는 선언적 문구가 많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강한 규범력을 갖지만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미디어법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관련된 조항이 대단히 빈약하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결국 여러 법률에 걸쳐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조항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느 법률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지침과 특징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지침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와 연기자의 표준계약서, 모범거래기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는 가수, 연기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계약 기간 설정,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수익분배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모범거래기준에는 청소년 및 여성 인권보호 조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금지행위의 항목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세분화하여 연습생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습생의 불공정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노력은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 모범거래기준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

동·청소년 출연자의 특수성에 기반한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는데 방송출연료, 촬영시간, 휴식시설, 미성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 기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4) 방송사 제작 가이드라인 현황과 특징

우선 주요 지상파방송의 가이드라인 특징이다.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적 장면을 촬영할 때 조치 등 필수적인 내용이 미비하거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준마저 모호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필수적 절차보다 제작진의 선택적 사항으로 남겨둔 조항도 다수 발견되었다. MBC는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다룸으로써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는 특징이다. SBS는 8가지의 수칙을 제정함으로써 간략하지만 중요점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BS의 가이드라인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연령을 세분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기준이 취약하고 많은 양을 담고 있지만 방송심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종합편성채널의 제작가이드라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TV조선은 타 방송사에 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가이드라인의 체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대부분 갖추고 있었다. 연령별 권장하는 촬영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성보호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다 담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나타났다. JTBC도 비교적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형식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는데 법률보다 아동·청소년 촬영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안전책임자 상주의무화, 상급책임자 보고 의무화, 자택촬영의 경우 지침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제작진 상주와 보호자 동반의 의미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MBN의 가이드라인은 방송심의규정 정도 제시하고 있어서 미비한 수준이었다. 채널A는 재난이나 범죄 취재보도에 국한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

방송사들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적 책무가 더 강조되는 지상파방송, 첫째 공영방송이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조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종편채널이 공영방송보다 형식과 체계를 더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용어도 아동과 어린이가 혼용되거나 유아의 개념이 없거나 유아, 아동, 청소년 연령이 방송사마다 다르거나 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셋째 방송사마다 편차가 대단히 크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잘 갖추고 있는 방송사와 거의 관련 내용이 없는 방송사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방송사 가이드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이 최소한 보장받는 법적 내용마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규칙, 지침 등의 내용조차 제작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3. 해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현황과 특징

1) 미국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특징

미국의 50개 주 모두 각각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노동규정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별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17개 주는 기본 일반노동법을 따르며, 일반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항은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조항을 따른다. 이외의 33개의 주에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주별 노동법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본 고에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노동 법률규정이 있는 33개의 주 중 미국 내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일반노동법률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 조항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아동·청소년 고용을 원할 시 고용주와 아동·청소년 고용인 당사자들에게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무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캘리포니아 노동표준 시행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고용 허가증이 필수이며, 뉴욕주 또한 마찬가지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에 당국의 허가를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련 노동 규제가 따로 없는 17개 주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 대한 규제나 법적 보호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고용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제한하는 연방법이 없고, 주마다 제정된 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놓인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가이드라인이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고 근무 조건이 아동·청소년의 건강, 도덕, 안전상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제작 활동 참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이 무시되거나 방해받는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부터 교육, 감독, 근무 시간, 의료 및 안전 등의 조항도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별 노동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노동법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라 권고하고 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각 주의 노동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보호되고, 주의 노동법이 약한 경우엔 배우 노조에 의해 이차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리나라, 영국, 일본은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제작사 등에서 직접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는 33개의 주에서 제시하는 규제가 매우 구체적이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17개 주 또한 노동조합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제작사 등에서 별도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주별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의 몇몇 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방송 촬영 활동 시 스튜디오 교원(Studio teacher) 고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스튜디오 교원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아동·청소년 전문가이다. 촬영

장의 부모가 아동·청소년들의 성공을 위해 촬영 시의 불합리한 조건을 참고 넘길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해주는 스튜디오 교원의 역할은 크다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이러한 스튜디오 교원제도의 도입을 참고한다면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 계정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모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소득의 15%를 신탁 계정에 적립해야 하고, 부모가 신탁 계정을 만들지 못한다면, 미국 배우 펀드(AFA)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뉴욕을 포함한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등의 주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 신탁 계좌의 개설을 요구하는 특별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고용 개시 15일 이내에 친권자나 후견인은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노동부에 보고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신탁 계좌에 총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신탁회사를 신탁자로 지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8세가 되는 해에 계좌 운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총수입 15%를 쿠건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 함을 법률상에 의무로 하고 있다. 추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의 신탁 계좌 개설 관련 조항을 참고하고 신탁 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국내 인기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는 약 3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 수익만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최고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보람 양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과거 수익 관리, 부모와의 수익 분배 관련한 쟁점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유튜브가 주 미디어 플랫폼이 되었고,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져 누구나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 있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은 현재 민법 제925조⁹⁸⁾, 민법 제 916조⁹⁹⁾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친권자의 재산관리 부여와 관련된 조항일 뿐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설령 착취를 당한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미국의 신탁 계좌 개설 특별법을 참고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득을 보호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공통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중에서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보호 관찰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보호자와 반드시 제작현장에 함께여야 하고, 보호자는 촬영 시간 내내 이들을 시야에 두고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뉴욕주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제작 활동 시에는 보호자가 상시 촬영장에 동반하여 이들의 안전과 행동을 관찰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두 주 모두 공통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라면, 3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출연자의 나이가 생후 6주에서 6달 사이라면, 10명 이하의 출연자당 한 명의 담당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제작현장에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사는 해당 주의 허가를 공인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이며, 간호사 고용은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오전 5시 이전과 오전 12시 30분 이후에는 호출 및 촬영 활동을 불가했으며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촬영 현장에 머물 수 있고 최대 20분까지만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6개월 미만 아동의 고용 활동 시간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촬영 활동 외 나머지 시간은 아동 출연자를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해야 함을 법안에 명시함을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휴식 시간까지 꼼꼼히 배려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 번에 30초 이상 100피트 이상의 촛불 강도의 빛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촬영장 내 조명 강도에 있어서까지 세세한 부분을 제재하고 있음이 특징적이었다.

이처럼 미국은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의 아동·청소년 출연자까지 고려한 법안이 존재할 만큼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 98) 민법 제925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99) 민법 제916조: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연령별로, 그리고 촬영 환경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제작현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영국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특징

18세기 산업혁명을 일찍 경험한 영국엔 임금이 비싼 숙련된 성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여성과 아동을 고용했는데, 이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택했던 어린이들이 장시간 일하느라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사회 계층간 빈곤이 악순환되었고, 아동청소년 노동과 교육에 관한 법률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개정되고 발전되었다.

영국에서 노동법(Labour Law 또는 Employment Law)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20년대 이후로, 공장법 체계는 노동법 성립 이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법 체계를 통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도한 국가이다. 그러나 계약법적 전통을 계승한 영국의 법적 불간섭주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관계 규율 원칙은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근로시간에 관한 법률들은 산업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근로시간 규제, 또는 여성, 아동 및 연소자와 같이 인적 속성에 따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 현재는 1998년 근로시간시행령의 틀 속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의 근로시간 규율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수립되어 오지 못했던 역사적 흐름들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원칙들이 수립되어 있는 현재에도,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에 관한 변경 등에 관해서도 권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과 달리 기업 내 절차를 중시하는 개별적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영국의 근로시간 규율에서 보편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위원회를 통한 근로시간의 간접적인 제한 외에도, 전후 영국에서는 공장법 이후 나

타났던 산업별 접근법과 여성 및 아동의 특별한 보호 방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과 연소자에 관해서는 연령 보호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그 속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1933년 아동과 연소자에 관한 법률(Children and Young Person Acts 1933)이 그에 해당한다. 이 법률은 총 4차례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소자와 아동에 관한 보육과 복지 서비스, 고용과 근로관계에서의 원칙, 소송상의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일반법 형태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연예오락 산업에 종사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의 지도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아역 배우 등의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아동의 교육이 방해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항목이 있다. 영국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보호자나 후견인이 허가를 받는 절차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고용주인 어린이·청소년이 참가하는 공연의 제작 책임자, 이벤트 조직 책임자, 어린이·청소년 모델의 고용자가 공연 개시 21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청소년의 거주지 지방교육당국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공연이나 대가가 지불되는 운동경기, 모델업무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 그루밍 행위를 처음으로 처벌한 나라이다. 2003년 성범죄 법을 제정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적 그루밍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들들도 그루밍에 관련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와 방송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타율규제를 대표하는 오프콤의 규제는 첫째 방송 규정의 ‘18세 이하 보호’규정과 제작 지침이 있다. 내용을 보면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때에는 출연자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와 품위를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이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걱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엔 제한시청시간대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마약, 흡연, 용제, 알코올, 폭력, 공격적 언어, 성적인 부분, 나체, 엑소시즘 등)에 대해서도 강력

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 18세 미만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복지(emotional welfare)와 존엄성(dignity)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과 프로그램 참여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distress)이나 불안(anxiety)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 마지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품(Prizes)은 대상 청중과 참가자 모두의 연령대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항만을 담고 있다. 영국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오프콤의 규제가 타율적이라면, 공영방송 BBC의 관련 규정은 대표적 자율규제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방송 방송사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BBC의 경우 우선 아동 인권, 복지, 교육 등 관련 법안을 모두 고려해 만든 ‘아동 보호 및 보호 정책’이 2019년 개정되어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는데, 9장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규정은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구체적 이슈와 상황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BBC의 아동 보호 정책의 핵심은 첫째, BBC는 오프콤의 <방송규정>과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에 참여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작 정책은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둘째, 어린이가 유해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BBC는 <아동보호 및 보호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자는 강력한 조치와 위험 상황 조치와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합의되어야 하며, 기록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상황은 직접 목격했거나 듣게 된 경우 사실 인지가 있었는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알지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혹과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를 직접 상대하는 누구라도 우려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아동 보호팀에게 직접 또는 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 그룹팅 또는 아동과 관련된 온라인 보호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BBC 어린이 보호 책임자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BBC는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을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시켜 자율규제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9절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조항 중 ‘온라인 아동 안전’은 최근 추가된 내용으로 영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청소년의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이용, 온라인 그룹팅 같은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 보호(Safeguarding the Welfar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규정 중 온라인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상호작용(Guidance: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진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다.

결국 영국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자율과 타율규제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규제의 대상은 분명하고 방향은 포괄적이다. 제작현장 및 관련한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에서, 방송에 의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를 위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자율과 타율규제 모두 느슨하게 접근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BBC 모두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규제의 경우엔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일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특징

이상으로 일본의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과 방송업계 및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적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규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은 방송법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아니라 노동기준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동기준법은 한국과 같이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최저 연령, 노동계약 체결 및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1980년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표현자’로 취급하는 “예능 토탈트 통달”을 공표하여 노동기준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005년에는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이 오후 9시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극계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라이언 킹’과 같이 인기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첫째 상연시간이 휴식을 포함하여 2시간 50분에 이르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30분에 개시하면 종료시간이 오후 9시를 초과하게 되어 중요한 역할을 연기하는 아역이 커튼콜에 나올 수 없어 관객뿐만 아니라 아역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점, 둘째 평일의 공연개시 시간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은 방문할 수 없는 시간에 공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 후의 관람이 곤란한 점, 셋째 오후 9시 이후에 아역을 성인으로 대체하더라도 공연의 완성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⁰⁰⁾.

한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 문제는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이라는 관점도 필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라는 관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노동 제한시간을 오후 8시 또는 오후 9시로 구분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는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예능 토틀런트 통달”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청소년은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소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⁰¹⁾.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송업계와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업계의 아동·청소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위성방송사업자 WOWOW는 2017년 4월 여자 아역배우의 심야시간 장시간 촬영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새로운 「WOWOW 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사외의 프로그램 관계자에게도 공유할 것을 공표한 이후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등 소극적·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JMAA와 오너먼트 프로덕션, 그리고 Free Wave는 모두 출연일반규칙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구속시간, 안

100) (社)日本演劇興行協會 (2007), 演劇子役の出演可能時間の延長について(要望), 김경환 (2015). 일본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기준 및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동향, pp.68-76

101) 2014.11.12. Kotto Dori Law Office 칼럼(<https://www.kottolaw.com/column/000893.html>)

전규칙, 성보호에 관한 규정을 공통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더해 JMAA와 오너먼트 프로덕션은 국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동의, 학습권 보장, 장가복수 출연, 방송내용 관련에 관한 규정들도 마련하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

본 연구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 실태, 법제 분석, 해외 사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보았다. 현재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 법제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해외에서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국내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가이드라인에 최소한 산재해 있는 법률 속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조항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 보호 내용을 제작진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방송사마다 편의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면 제작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최소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반드시 프로그램 제작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회사, 독립제작사, 보호자, 성인 출연자 등 공동의 책무로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침해는 반드시 제작진에 의해 침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만 규정을 준수한다고 달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모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을 위한 사전조치(캐스팅과 사전동의) - 제작과정 - 제작 후 등 시차적 흐름에 맞게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제작진들은 아

동·청소년 출연자와 함께 일할 때 순차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쉽고 활용하는 데도 용이하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함께 제작할 때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가이드라인에서 연령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방송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등의 대상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써 현장에서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동, 청소년 등 연령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예능관찰 프로그램 등 국내 제작상황을 고려하건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유아의 연령을 제시하고 특별 보호 조항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섯째 제작촬영 전 사전조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근로관련 준수사항, 사전설명과 동의, 계약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는다. 출연에 앞서 사전동의나 설명의 의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허락과 보호자의 동의를 모두 받도록 하되 동의를 받더라도 제작진이 전문성을 가지고 출연 이후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근로관련이나 보수 지급은 해외사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인식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근로기준, 보수 등을 제시한다. 다양한 출연 형식이 있기에 모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근로자성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제작진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계약과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여섯째 제작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작·촬영시간 제한, 인권보호,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이다. 제작·촬영시간 제한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영유아 등의 제작·촬영시간이 현행 법률에서는 부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촬영시간은 제작비와 직결되는 만큼 방송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자율 기준을 마련하도록 참고기준을 제시한다.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언어표현 등도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관련 법규와 방송사들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일곱째 아동·청소년 출연은 극 출연과 인터뷰 출연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제작진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특수성이 있다. 극 출연의 경우 범죄 장면 등 부적절한 장면 묘

사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상황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은 재연이나 극 상황이지만 이를 현실상황으로 받아들이거나 충격적인 장면 촬영 이후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통이 성인에 비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출연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출연 이후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인 제작진들의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 미숙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때도 성인과 달리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여덟째 제작진의 사후관리로 사생활보호, 사이버괴롭힘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필요가 있다. 사생활보호와 안전은 제작과정에서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방송 이후에도 제작진이 유의해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괴롭힘도 영국 BBC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에서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방송 출연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사이버괴롭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작진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3가지 용도로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업인들의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분량이 너무 많아도 제작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반면 너무 간단하게 제시될 경우 실효성이 낮거나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①가이드라인 ②가이드라인 해설서 ③체크리스트 3가지 버전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첫째 가이드라인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는다. 둘째 가이드라인 해설서는 가이드라인의 등장하는 용어설명, 근거법률과 구체적인 기준, 해외사례 및 참고기준 등을 제시한다. 셋째 체크리스트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제작진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함께 일을 할 때는 제작진 구성원 모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활용성을 높인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앞선 논의를 토대로 ①가이드라인 ②가이드라인 해설서 ③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방송사마다 자기 채널의 성격과 정체성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현장에서도 준수되기를 기대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는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매체수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작현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예술인, 인터뷰 대상자, 방청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방송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 2호, 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콘텐츠사업자를 말한다.

2. 제작진이란 기획, 연출, 작가, 촬영, 음악, 미술 등 프로그램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작촬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를,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출연자란 저작권법 제2조 4호의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또는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가 고용한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프리랜서와 제작·기획사(소속 직원과 계약자 포함), 성인 출연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모두 적용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기획, 섭외, 촬영, 후반 작업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사전, 사후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스튜디오, 외부촬영지 등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현장이라면 어디에서든 준수되어야 한다.

④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촬영뿐만 아니라 언제든 방송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 제작촬영 현장에서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방송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무이다. 따라서 방송사나 제작자의 이해관계나 수익성에 더 가치

를 두지 않는다.

② 우리가 대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자이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이다. 아동청소년이 재능계발과 자기개발을 위해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직업적 전문인이기 보다는 아동청소년으로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③ 제작과정, 사전과 사후에 이르기까지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방송사, 부모(보호자), 연예기획사(교육원), 성인 출연자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

제2장 제작·촬영을 위한 사전조치

제5조 아동청소년 출연과 캐스팅

①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나 방송 제작·촬영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서 예외로 적용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5세 미만이라도 법령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춰 방송 제작·촬영이 가능하다.

② 아동청소년의 출연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사전설명과 동의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방송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③ 방송 제작·촬영 동의에 있어 아동청소년은 미숙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부모도 이해주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나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이더라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방송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 계약과 보수지급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연령 증명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촬영·제작 조건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⑤ 아동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제3장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제8조(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① 15세 미만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15세 이상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15세 이상 출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야간촬영(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은 금지된다. 단 15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다음날이 학교 휴일에 한해 출연자와 친권자(후견인 포함) 모두의 동의를 받아 야간촬영이 가능하다. 15세 이상 출연자인 경우에는 학교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출연자와 친권자(후견인 포함) 모두의 동의를 받아 야간촬영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작·촬영시간 제한은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2(영유아 출연자 특별조항)

①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의 경우 이동, 대기, 촬영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③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의 경우 일상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제작·촬영 장소, 대기실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배려한다.

제9조(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보통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고 진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이다. 학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작·촬영하는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⑤ 아동청소년이 제작·촬영 도중 쉬거나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탈의실의 경우 이성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동시에 들어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성관련 보호 등)

① 아동청소년은 성적 권리가 있는 한 인격체임을 이해하고 성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방송 제작의 전 과정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적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아동청소년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광고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금지된다.

제11조(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① 건강과 안전 등 위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상, 분장, 마이크 착용 등 제작에 필요한 경우 출연자에게 미리 알리고, 가능한 동성 제작진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동기부여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언어표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칭찬이라 하더라도 외모나 신체를 평가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평가는 성실함, 태도, 집중력 등 그들의 자질과 가능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연이나 극 출연)

① 성폭행 등 범죄 장면을 연출 할 때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역을 시키지 않으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공포나 불안 등을 느끼지 않도록 극 연출의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신분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아동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등은 심의규정으로 금지된다.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잘못된 흡연·음주 문화가 일상적인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제13조(인터뷰출연)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한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②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③ 아동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아니되며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일부 내용만을 선택하여 방송하지 않는다.

④ 범죄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 인터뷰 동의를 얻었더라도 필요이상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공포, 불안 등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다.

제14조(방청)

①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을 방청인으로 동원할 수 없다.

② 아동청소년 방청객의 연령은 가급적 프로그램 등급 연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사생활보호 등)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필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사적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범죄 등 사건사고를 촬영보도할 때 피해자, 가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더라도 신원의 노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심사숙고하여 판단한다.

④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 화면을 통해 학교, 거주지 등 장소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6조(안전과 보호)

① 방송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

② 아동청소년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솔자나 안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제작촬영에 참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사이버불링,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①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작진은 사전동의, 성관련, 안전 등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설명서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예술인, 인터뷰 대상자, 방청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방송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 2호, 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콘텐츠사업자를 말한다.

2. 제작진이란 기획, 연출, 작가, 촬영, 음악, 미술 등 프로그램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작촬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를,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근거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 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8),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법률 및 규제 설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만 19세' '19세' 등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일관성을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4.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거법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3호

5. 출연자란 저작권법 제2조 4호의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또는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가 고용한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프리랜서와 제작·기획사(소속 직원과 계약자 포함), 성인 출연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모두 적용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기획, 섭외, 촬영, 후반 작업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사전, 사후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스튜디오, 외부촬영지 등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현장이라면 어디에서든 준수되어야 한다.

④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촬영뿐만 아니라 언제든 방송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 제작촬영 현장에서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방송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무이다. 따라서 방송사나 제작자의 이해관계나 수익성에 더 가치를 두지 않는다.

② 우리가 대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출연자이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이다. 아동청소년이 재능계발과 자기개발을 위해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직업적 전문인이기 보다는 아동청소년으로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③ 제작과정, 사전과 사후에 이르기까지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만

의 문제가 아니며 방송사, 부모(보호자), 연예기획사(교육원), 성인 출연자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

제2장 제작·촬영을 위한 사전조치

제5조 아동청소년 출연과 캐스팅

①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나 방송 제작·촬영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서 예외로 적용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5세 미만이라도 법령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춰 방송 제작·촬영이 가능하다.

② 아동청소년의 출연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1항) 근거법: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 법률 및 규제 설명: 15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등이 있는 경우 방송 제작·촬영이 가능하다.

제6조 사전설명과 동의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방송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③ 방송 제작·촬영 동의에 있어 아동청소년은 미숙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부모도 이해주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나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이더라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방송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제1항) 근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제1항

* 법률 및 규제 설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에는 연예기획업자에 국

한되기는 하였지만 출연자에게 사전설명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연예기획업자가 사전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용어설명 : ‘보호자 동의’란 부모, 후견인, 법정대리인, 교사, 연예기획업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양측 부모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양육권자나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제7조 계약과 보수지급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연령 증명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촬영·제작 조건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⑤ 아동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제1항, 제2항) 근거법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 법률 및 규제 설명: 연소자 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등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 서면계약서 등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친권자란 부모(또는 부모의 한쪽), 양부모 등을 말한다.

미성년자 후견인이란 부모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가정법원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등이 있다.

* (제3항, 제4항) 근거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에 슬용역 제공) 제1항,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제2항

** 법률 및 규제 설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예기획업자는 청소년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 계약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제41조(과태료)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제5항) 근거법: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법률 및 규제 설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청소년이 독자적으로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부모, 연예기획사 등 보수청구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계약서가 있더라도 청소년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제8조(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① 15세 미만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15세 이상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15세 이상 출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야간촬영(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은 금지된다. 단 15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다음날이 학교 휴일에 한해 출연자와 친권자(후견인 포함) 모두의 동의를 받아 야간촬영이 가능하다. 15세 이상 출연자인 경우에는 학교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출연자와 친권자(후견인 포함) 모두의 동의를 받아 야간촬영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작·촬영시간 제한은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 근거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110조(벌칙)

** 용어설명 : ‘친권자’란 부모(또는 부모의 한쪽), 양부모 등을 말한다.

미성년자 ‘후견인’이란 부모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가정법원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등이 있다.

*** 법률 및 규제 설명 : 아동청소년 출연자(13세 이상~18세 미만) 근로시간 및 야간촬영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2(영유아 출연자 특별조항)

①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의 경우 이동, 대기, 촬영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③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의 경우 일상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제작·촬영 장소, 대기실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배려한다.

* 국내외 영유아 제작시간 사례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가이드라인

연령구분	근무시간
6세 미만	6시간 근무 가능(식사시간 제외, 학습시간 포함)
6세-9세	8시간 근무 가능
9세-16세	9시간 근무 가능
16세-18세	10시간 근무 가능

일본 JMAA 연소자아동의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령구분	(촬영지) 구속시간
영아(1세 미만)	2시간 정도
유아(6세 미만)	3시간 정도
아동(초등학교 저학년)	4시간 정도
아동(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생)	6시간 정도

국내 A방송사 권장사항

연령구분	제작촬영 시간
5세 미만	2시간 이내(공연 시 5시간 가능)
5세-9세	3시간 이내(공연 시 7시간 30분 가능)
9세 이상	4시간 이내(공연 시 9시간 30분 가능)

제9조(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보통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고 진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이다. 학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제작·촬영하는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⑤ 아동청소년이 제작·촬영 도중 쉬거나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탈의실의 경우 이성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동시에 들어가게 해서는 아니 된다.

* 근거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1항
** 법률 및 규제 설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성관련 보호 등)

① 아동청소년은 성적 권리가 있는 한 인격체임을 이해하고 성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방송 제작의 전 과정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적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아동청소년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광고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금지된다.

* (제1항) 근거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금지행위) 제1항
** 용어설명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9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항) 근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금지행위),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항

** 법률 및 규제 설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출행위와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4항) 근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금지행위) 제2항

** 용어설명 :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물건(음란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유해업소(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화상대화 영업 등)는 법령 및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 및 규제 설명 : 아동청소년 광고출연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4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① 건강과 안전 등 위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상, 분장, 마이크 착용 등 제작에 필요한 경우 출연자에게 미리 알리고, 가능한 동성 제작진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동기부여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언어표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칭찬이라 하더라도 외모나 신체를 평가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평가는 성실함, 태도, 집중력 등 그들의 자질과 가능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연이나 극 출연)

① 성폭행 등 범죄 장면을 연출 할 때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역을 시키지 않으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공포나 불안 등을 느끼지 않도록 극 연출의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신분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아동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등은 심의규정으로 금지된다.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잘못된 흡연·음주 문화가 일상적인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 법적 근거 :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3항, 제4항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잘못된 흡연·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인터뷰출연)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한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②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③ 아동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아니되며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일부 내용만을 선택하여 방송하지 않는다.

④ 범죄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 인터뷰 동의를 얻었더라도 필요이상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공포, 불안 등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다.

제14조(방청)

①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을 방청인으로 동원할 수 없다.

② 아동청소년 방청객의 연령은 가급적 프로그램 등급 연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

* (제1항) 법적 근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2항

제15조(사생활보호 등)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필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사적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범죄 등 사건사고를 촬영보도할 때 피해자, 가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더라도 신원의 노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심사숙고하여 판단한다.

④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 화면을 통해 학교, 거주지 등 장소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근거법 : 방송심의규정 제22조(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

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용어설명

사적 정보: 사적 정보는 반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단편적인 정보가 모여 온라인에서 이차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16조(안전과 보호)

① 방송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

② 아동청소년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솔자나 안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제작촬영에 참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사이버불링,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용어설명 :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란 '자사 홈페이지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문제가 된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법무팀 등 사내 담당부서와 상의함을 의미합니다. 자사 홈페이지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법적 보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사전에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사생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 ①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작진은 사전동의, 성관련, 안전 등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체크리스트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우리는 모두 아동청소년인 때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는 국가, 사회, 개인 공동의 책무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방송 제작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진이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았나요?
인터넷 주소록 링크(방송사 또는 방통위)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인터넷 주소록 링크(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약집 또는 각 방송사 성희롱예방 지침)
3. 아동청소년의 출연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동의절차를 적절하게 갖추었나요?
4. 법적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 시간을 알고 있나요?

5.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제작촬영 현장과 휴식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었나요?
6. 프로그램 제작진 중에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문제를 상의할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7. 방송사 내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성원 (2019.12.18.) EBS '보니하니'가 쏘아올린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37>.
- 곽현자 (2015). 영국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규정 및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 동향, 29-44.
- 김경환 (2015). 일본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기준 및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 동향 68-78.
- 김동윤 (2015).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권 2호, 13-37.
- 김동윤 (2016).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와 아동권리 침해.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권 1호, 29-51.
- 김동윤 (2019). 텔레비전 뉴스보도와 아동권리 침해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방송뉴스 제작 가이드라인 제안. 연구방법논총, 4권 2호, 65-100.
- 김서현, (2019.12.12). EBS 잠정 중단 결정에도 "보니하니"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라" 비판 여론. 여성신문, URL: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63/>.
- 김윤지 (2016, 9, 20), "[청소년 배우]②"구체적·적용 엄격"...해외 사례 어떻게 다른가", 이데일리,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12782088&mediaCodeNo=258>.
- 김정섭 (2015).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 년 시행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1호, 86-94.
- 김현식, 양정호 (2007). 방송 출연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인권, 노동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7권 1호, 71-93.
- 남궁준, 김근주, 구미영 (2019). 영국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남기연 (2015).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대중문화

- 예술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6권 4호, 59-85.
- 노도현 (2020.01.04.). “아동·청소년 연예인, 상품 아닌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041827001#csidxb32eb9dea2d6e408f6e2c115ef28692
- 노승용 (2006).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 2006년 9월호(통권 299호), 53-62.
- 박경준 (2008). 리얼 타임 델파이 기법: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국토>, 통권 317호, 53-62.
- 박석철(2009),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 박석철 (2015). 미국의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 법제 뉴욕주 노동법 중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법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동향, 19-28.
- 박예람 (2020. 01. 13). ‘쪽잠’ ‘야간촬영’ 어른 못지않은 아동·청소년 연기자 노동실태, PD저널. URL: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8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영국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 사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이슈 in 포커스: 방송과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방송통신 심의 동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방송과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a). 어린이·청소년 출연 TV 프로그램 내용 분석.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b). TV프로그램출연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방송제작 가이드.
- 송영주 (2015). 프랑스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관련 법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동향, 57-67.
- 심영섭 (2015). 독일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법제와 현황, 방송통신심의동향, 45-56.
- 유선희 (2020. 01. 19), “[편집국에서] 방송계는 모르는 샤프롱 ”,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4984.html#csidx28f40539a3cd5c89c627bc2f6f0a9a1>.

BBC 뉴스 코리아 (2020, 5, 29). “유튜버: 인기 유튜버 부부가 자폐 아들 과잉 고백 후 비난을 받고 있다”, BBC, URL: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2847511>.

이유주 (2016. 06. 30). 아동연예인의 인권, 어디서 보호받나요?, 베이비뉴스, URL: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41>.

이종성 (2016).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조은별, 이선영, 신종호, 홍윤정 (2015). 융합교육 핵심요인과 기대효과에 대한 델파이 분석. 영재교육연구, 25권 1호, 37-58.

최영진 (2018). 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과제, 법학연구, 26권 2호, 227-250.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여성 스포츠 관련 언론보도 분석연구.

한영학 (2012). <일본 언론법 연구>, 서울: 도서출판 한울.

해외 문헌

BBC 2019. <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Policy>, URL: <https://www.bbc.com/aboutthebbc/reports/policies/childprotection>.

BBC <Work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the BBC>, URL: https://www.bbc.com/aboutthebbc/insidethebbc/howwework/policiesandguidelines/childprotection/pdf/bbc_guide_to_work_with_children.pdf.

BBC <Editorial Guidelines> Guidance: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children-young-people-working>.

BBC <Editorial Guidelines> Guidance: Working with vulnerable contributors or contributors at risk of vulnerability.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vulnerable-contributors#workingwithvulnerablecontributors>.

BBC Editorial Guidelines, in particular Section 9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Editorial Policy Guidance on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

BBC. 2019. Editorial Values and Standards. Guidelines/Guidance.

BBC News, 2020.3.27. '아동 성 학대 영상 속 소년을 쫓은 나의 추적'<https://www.bbc.com/korean/news-52059861>.

Child Entertainment Laws As of January 1, 2020, Retrieved from <https://www.dol.gov/agencies/whd/state/child-labor/entertainment>.

David Robb(2014, 9, 21), “Con Men Lied, Faked IDs To “Teach” Kids Working On Hollywood Film Sets“, DEADLINE, Retrieved form <https://deadline.com/2014/09/con-men-teaching-kids-film-sets-faked-ids-834640/>.

David Robb(2014, 9, 28), “Hollywood’s Phony-Diploma Mills Help Underage Actors Labor In Film Biz Underground” DEADLINE, Retrieved form <https://deadline.com/2014/09/fake-diplomas-child-actors-film-television-841606/>.

David Robb(2014, 10, 20), “Oh, Baby: Lax Labor Laws (Or None At All) Leave Working Infants On Sets Vulnerable”, DEADLINE, Retrieved form <https://deadline.com/2014/10/baby-actors-not-protected-by-lax-labor-laws-850318/>.

Dawn C. Chmielewski. (2012.2.8). Child sexual abuse cases in Hollywood attract attention.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12-jan-08-la-fi-ct-hollywood-molesters-20120109-story.html>.

Department of Labor(New york state), Child Performer Permitted Working Hours, Retrieved from <https://labor.ny.gov/formsdocs/wp/LS559.pdf>.

Department of Labor(New york state), Child Performer Educational Requireme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s://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secure/child/cp_academics2.shtm#0.

Department of Labor(New york state), Child performers, Retrieved from <https://labor.ny.gov/legal/laws/pdf/child-performer-regulations/part186-child-performer.pdf>.

Elizabeth Chuck(2019, 3 22), “Child abuse charges against YouTube channel's mom underscore lack of oversight for kids“, NBC, Retrieved form <https://www.nbcnews.com/news/us-news/child-abuse-charges-against-youtube-channel-s-mom-underscore-lack-n985526>.

Employment law handbook, California Child Labor Laws - Entertainment Industry, Retrieved from, <https://www.employmentlawhandbook.com/wage-and-hour-laws/state-wage-and-hour-laws/california/child-labor-laws/entertainment-industry/>.

Guidelines For Child Actors, Retrieved 2018, 3, 31 AM staff form <https://actingmagazine.com/2018/03/31/guidelines-for-child-actors/>.

Julia Courtenay(2018, 1, 26), "HOW TO WORK WITH CHILD ACTORS ON SET" Retrieved from <https://infocusfilmschool.com/how-to-work-with-child-actors/>.

Melissa(2014, 10, 30), "CHILD ACTORS AND COOGAN'S BILL", Today I Found Out Retrieved from <http://www.todayifoundout.com/index.php/2014/10/child-actors-origin-coogans-bill/>.

Ofcom. 2015. Guidance on Rule 1.28 and 1.29 : The involvement of people under eighteen in programmes.

Ofcom. 2018. Children and parents: Media use and attitudes report.

Ofcom. 2019. Children's content review.

OTT, M. C. (2009). CHILD ACTOR ETHICS: CHILDREN IN PLAYS WITH ADULT THEM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State of California(2013), CHILD LABOR LAWS[Electronic version],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dlse/childlaborlawpamphlet.pdf>.

State of California, Studio Teachers: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dlse/Studio_teachers_cert.html.

State of California, Article 1. Motion Picture Industries, Retrieved from, <https://www.dir.ca.gov/t8/ch6sb2a1.html>.

Studiobinder. (2019.4.29.). The Hollywood Trenches: 10 Rules for Working With Child Actors. studiobinder. <https://www.studiobinder.com/blog/child-actor-labor-laws/>.

The Guardian, 2012.12.23. The Jimmy Savile child abuse scandal breaks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2/dec/23/jimmy-savile-child-abuse-scandal>.

What is a Studio Teacher?, Retrieved from <https://tophollywoodactingcoach.com/2015/09/what-is-a-studio-teacher/>.

厚生労働省 第37回労働政策審議会労働条件分科会 (2004), 演劇子役の就労可能時間の延長について.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6), 諸外国における年少労働者の深夜業の実態についての研究, 労働政策研究報告書No.62.

(社)日本演劇興行協会 (2007), 演劇子役の出演可能時間の延長について(要望).

(社)日本民間放送連盟 (2009), 民放連 放送基準解説書2009, コーケン出版.

梅田康宏・中川達也 (2016), よくわかるテレビ番組制作の法律相談 第2版, 日本加除出版.

梅田康宏・中川達也 (2016), よくわかるテレビ番組制作の法律相談 第2版, 日本加除出版.

WOWOW(2017), 番組制作時に生じた問題の再発防止策について.

홈페이지

공익사단법인 일본연극홍행협회(www.enkokyo.or.jp)

니혼TV(<https://www.ntv.co.jp>)

칸사이TV(<https://www.ktv.jp>)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https://www.bpo.gr.jp>)

일반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https://j-ba.or.jp>)

일반사단법인 일본모델에이전시협회(<https://www.j-m-a-a.com>)

일본방송협회(www.nhk.or.jp)

오너먼트 프로모션(<http://ornament-pro.com>)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

후지TV(www.fujitv.co.jp)

Free Wave(<https://f-w.co.jp>)

NHK(<https://www.nhk.or.jp>)

TBS(<https://www.tbsholdings.co.jp>)

TV아사히(<https://company.tv-asahi.co.jp>)

TV도쿄(<https://www.tv-tokyo.co.jp>)

WOWOW(<https://corporate.wowow.co.jp>)

§11755. Studio Teacher; Definition and Certification. URL:
<https://www.dir.ca.gov/t8/175.html>.

California Child Abuse Laws, Retrieved from, 11.26.2019 <https://statelaws.findlaw.com/california-law/california-child-abuse-laws.html>.

California Studio Teacher Cert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study.com/articles/california-studio-teacher-certification.html>.

California Work Permit, Retrieved from,
<http://www.bizparentz.org/gettingstarted/caworkpermit.html>.

Child Protectiv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cps/faqs.asp>.

Entertainment Industry Employment, Retrieved from, <https://www.dol.gov/general/topic/youthlabor/entertainmentemployment>.

How Sex Offender Registration Works in California, Retrieved from, 8.10.2020
<https://www.shouselaw.com/ca/defense/sex-offender-registration/>.

Protecting Young Performers, Retrieved from, <https://www.sagaftra.org/protecting-young-performers>.

SECTION 50 – THE PRODUCERS SCREEN ACTORS GUILD CODIFIED BASIC AGREEMENT:, Retrieved from, https://www.sagaftra.org/files/minors_8.pdf<https://www.dir.ca.gov/t8/11755.html>.

Sex Offender Registration Consequences, Retrieved from, <https://www.nycourts.gov/courthelp/Criminal/sexOffenderConsequences.shtml>.

[부록]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에서 제시 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내용¹⁰²⁾

A. Preamble

(1) The Producers and Union, recognizing the special situation that arises when minor children are employed, have formulated the following provisions in addition to those contained in other Sections of this Agreement to ensure that:

- (a)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performance is to be produced is proper for the minor;
- (b)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are not detrimental to the health, morals and safety of the minor; and
- (c) The minor's education will not be neglected or hampered by his or her participation in such performance.

(2) Engagement Upon employment of any minor, Producer shall notify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cluding the name of the Producer, place and duration of location work, if any, and special abilities required. Upon the employment of any minor in any areas outside of California, Producer shall notify the Union of such employment and the area where such employment will take place.

B. It is recognized that when minors are employed in the State of California or taken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pursuant to a contractual arrangement made in the State of California, the applicable California laws and regulations shall regulate such employment. When minors are hired and employed within states other than California, the Producer shall be required to determine and comply with the prevailing law governing and defining minors. In addition to these legal requirements for minors not employed in the State of

102) SECTION 50 – THE PRODUCERS SCREEN ACTORS GUILD CODIFIED BASIC AGREEMENT:, Retrieved from, https://www.sagaftra.org/files/minors_8.pdf

California or not taken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pursuant to a contractual arrangement made in the State of California, the Producer and the Union agree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Section 50 herein for the employment of minors:

C. Definition of Minor

The term "minor," as used herein, means any performer under the age of eighteen (18) years, except that it shall not include any such performer if: (1) the performer has satisfied the compulsory education laws of the state governing the performer's employment; (2) the performer is married; (3) the performer is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or (4) the performer is legally emancipated, in which case it is agreed that both the Producer and the minor shall comply fully with the legal terms of the minor's emancipation.

D. Education

(1) (a) If a minor is guaranteed three (3) or more consecutive days of employment, Producer agrees to employ a teacher, from the first day of such employment, whenever the minor is engaged on any day during which the primary or secondary school regularly attended by the minor is in session.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Producer's production schedule for a given production plans for scenes to be photographed with the minor on three (3) or more consecutive days. When the minor is employed in scenes planned on the production schedules for only two (2) consecutive days and it is subsequently determined that additional calls will be necessary, Producer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vide a teacher on the third consecutive day of such employment or, at the latest, on the fourth consecutive day of such employment and thereafter. (b) On any day a minor is employed but is not otherwise entitled to have a teacher, the minor shall nevertheless be taught if the primary or secondary school such minor regularly attends is in session

and Producer has employed a teacher to instruct another performer engaged on the same production.

(c) If Producer employs a minor for post-production work, no teacher need be provided if the minor's call for such work is after the minor's regular school has been dismissed for the day. (d) Producer shall provide schooling as required by this Agreement during Producer's workweek for the production. (2) Such teacher shall have proper teaching credentials appropriate to the level of education required (i.e., primary or secondary level) from Washington D.C. or any state within the United States, but need not be credentialed by or a resident of the state wherein the minor's employment occurs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law.(3) The teacher's remuneration shall be paid by Producer. (4) Producer shall provide a ratio of not more than ten (10) minors per teacher, except that up to twenty (20) minors may be taught per teacher if the minors are in not more than two (2) grade levels.

(5) A teacher may not serve more than one (1) production in any one (1) day, except in an emergency and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D.(1)(c) above. (6) If the minor's regular instruction is primarily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teaching in that language will be provided whenever feasible. (7) However, on any day that the minor is not required to report to the set, the minor may attend his or her regular school, but Producer shall not count more than three (3) hours of the hours attended per day at the minor's regular school as school time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If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does not choose to have the minor attend regular school on such day, Producer may elect to either teach the minor on the set or in the minor's home or in the home of the teacher employed by Producer, but only if there are no other minors present in the home who are not also being taught by the teacher. (8) Producer agrees to provide a school facility, such as a schoolhouse, classroom, trailer schoolhouse or other schooling area, which closely approximates the basic requirements for classrooms, especially with

respect to adequate lighting, heating, desks and chairs. Stationary buses or cars are not adequate school facilities unless used exclusively for the minors during instruction. A moving car or bus shall never be used as a school facility; minors must not be taught while being transported to or from local locations. (9) Producer shall provide schooling equipment and supplies. However,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must, if permitted by the minor's regular school, secure school assignments and the minor's school books for use at the place of employment. (10) No one shall be allowed in an area being utilized by Producer as a school facility except the teacher and those minors being taught.

(11) The teacher shall determine the required number of hours to be devoted to instruction during a day, but the minor must be taught an average of at least three (3) hours per day, no period of less than twenty (20) minutes duration being acceptable as school time. The maximum number of hours that may be set aside for the minor's instruction in any one (1) day shall be as follows: for kindergarten, four (4) hours; for grades one (1) through six (6), five (5) hours; and for grades seven (7) through twelve (12), six (6) hours. (12) Producer shall require the teacher to prepare a written report for each minor covering attendance, grades, etc. These reports shall be given to the minor's parents or guardian to deliver to the minor's regular school at the end of each assignment or at such intervals as required by such school.

E. Supervision

(1) On days when the minor's regular school is in session, Producer must require the minor to report to the teacher immediately upon arrival at the place of employment. When school is in session, the teacher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and supervision of the minor. (2) Presence of the teacher does not relieve parents, however, of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their own children. A parent or guardian must be present at all times while a minor is working, and shall have the right, subject to filming

requirements, to be within sight and sound of the minor, except as restricted herein by subsection D.(10). (3) When a parent is working at the minor's place of employment but not at the scene of employment, either the other parent or a guardian must be present with the minor. (4) A guardian, as that term is used in this Section, must be at least eighteen (18) years of age, have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minor's parent(s) to act as a guardian, and show sufficient maturity to be approved by Producer (and teacher, if teacher is present). (5) No minor may be sent to wardrobe, make-up, hairdressing, or employed in any manner unless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a teacher, parent or guardian. (6) If Producer engages any minor under the age of fourteen (14), Producer must designate one (1) individual on each set to coordinate all matters relating to the welfare of the minor and shall notify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and teacher, when one is present, of the name of such individual. (7) Parents and guardians are not permitted to bring other minors not engaged by Producer to the place of employment without Producer's specific permission.

F. Working Hours

(1) Minors less than six (6) years of age are permitted at the place of employment for six (6) hours (excluding meal periods, but including school time, if any). (2) Minor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six (6)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nine (9) years may be permitted at the place of employment for eight (8) hours (excluding meal periods, but including school time). (3) Minor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nine (9)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sixteen (16) years may be permitted at the place of employment for nine (9) hours (excluding meal periods, but including school time). (4) Minor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sixteen (16)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18) years may be permitted at the place of employment for ten (10) hours (excluding meal periods, but including school time). (5) The work day for a minor shall begin no earlier than 5:00a.m. and shall end no later than 10:00 p.m. on evenings

proceeding school days. On evenings preceding non-school days, the minor's work day shall end no later than 12:30 a.m. on the morning of the non-school day. (6) If a minor is at location, the minor must leave location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following the end of his or her working day, and may not be held for transportation. (7) Interviews and fittings for children who are attending school shall be held outside of school hours. Such interviews and fittings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9:00 p.m. At least two (2) adults shall be present at all times during a fitting. (8) A minor shall not work more than six (6) consecutive days. However, for this purpose, a day of school only or travel only shall not be counted as one of said consecutive days.

(9) Producer shall set the first call at the beginning of the minor's employment and dismissal on the last day of the minor's employment so as to ensure that the minor will have a twelve (12) hour rest period prior to and at the end of the employment. For example, if a minor's last day of employment is Wednesday, and the minor will be attending school at 8:30 a.m. on Thursday, the minor must be dismissed by 8:30 p.m. on Wednesday.

G. Dressing Rooms

No dressing rooms shall be occupied simultaneously by a minor and an adult performer or by minors of the opposite sex.

H. Play Area

A safe and secure place for minors to rest and play must be provided by Producer.

I. Medical Care and Safety

(1)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must provide Producer a certificate signed by a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within the state wherein the minor resides or is employed, stating that the minor has been examined within six (6) months prior to the date he or she was engaged by Producer and has been found to be physically fit.

(2) Prior to a minor's first call, Producer must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minor's parent or legal guardian for medical care in the case of an emergency. However, if the parent or legal guardian refuses to provide such consent because of religious convictions, Producer must at least obtain written consent for external emergency aid, provided that the obtaining of such consent is not contrary to the aforementioned religious convictions.

(3) No minor shall be required to work in a situation which places the child in clear and present danger to life or limb. If a minor believes he/she would be in such danger, the parent or guardian may have the teacher and/or stunt coordinator, if either or both are present, discuss the situation with the minor. If the minor persists in his/her belief, regardless of its validity, the minor shall not be required to perform in such situation. (4) When a minor is asked to perform physical, athletic or acrobatic activity of an extraordinary nature, the minor's parent or guardian shall first be advised of the activity and shall represent that the minor is fully capable of performing the activity. Producer will comply with reasonable requests for equipment that may be needed for safety reasons.

J. Child Labor Laws

(1) A summary of the applicable state child labor laws governing the employment of the minor shall be kept in the Producer's production office if such summary is readily available. (2)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which is inconsistent and less restrictive than any child labor law or regulation in applicable state or other jurisdictions shall be deemed modified to comply with

K. Inconsistent Terms.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prevail over any inconsistent and less restrictive terms contained in any other Sections of this Agreement which would otherwise be applicable to the employment of the minor, but such terms shall be ineffective only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without invalidating the remainder of such Sections.

L. Arbitration

Any dispute between performer and Producer with respect to any provision contained in this Section shall be arbitrable, regardless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id or guaranteed to the performer. Any such dispute between the Union and Producers shall likewise be arbitrable. The procedures for such arbitrations shall be those contained in Section 9 hereof.

M. Overnight Location

Expenses When state law or this Agreement requires that a parent or guardian of a minor be present while such minor is working and such minor is employed on an overnight location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Producer will, in conjunction with its negotiation for the minor's services, also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expenses incurred by the parent or guardian for transportation, lodging and meals that may be required for the assignment and such expenses must be approved in advance. In the case of air transportation, Producer will endeavor to provide for the parent or guardian the same class of transportation, on the same flight as the minor, if reasonably available.

In the case of lodging, Producer shall endeavor to provide a room for the parent or guardian in the same facility and adjacent to the minor's room, if reasonably available,

provided that a minor under eleven (11) years old may be required to share his/her room with his/her parent or guardian, and a minor eleven (11) years to sixteen (16) years old may be required to share his/her room with a parent of the same sex.

N. Time Cards

On production time reports or time cards submitted to the Union, Producer shall designate minors with a "K" next to the minor's name.

[부록] BBC 제작가이드라인(BBC Editorial Guidelines Section 9, 2020)

9절.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¹⁰³⁾

9.1 Introduction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important to the BBC. They contribute and interact with us in many different ways - as contributors, performers, presenters, through our interactive and user-generated content, via all our services. We should serve them with high-quality, distinctive and duly impartial output and services which inform, educate and entertain. Ensuring the content they consume is appropriate is considered throughout the Editorial Guidelines and, specifically, in Section 5 Harm and Offence. This section is concerned with how we deal with under-18s who contribute to and interact with our content, whether or not it is aimed at them, or routinely includes them as contributors¹. Children and young people have a right to speak out and to participate, as enshr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ut we must safeguard the welfare of those who contribute to our content, wherever in the world we operate and irrespective of any consent that might have been given by a parent or other adult acting in loco parentis. We are also subject to the law regarding children and the BBC's Child Protection Policy.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of the Editorial Guidelines and unless stated otherwise, a child is someone under the age of 16 years. Young people are those aged 16 and 17.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are not legal definitions. We must take due care over the physical and emotional welfare and the dignity of under-18s who take part or are otherwise involved in our editorial content, irrespective of any consent given by them or by a parent, guardian or other person acting in loco parentis. Their welfare must take priority over any editorial requirement.

103)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children-young-people> (접속일 2020.12.8.)

Due care towards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take part or are otherwise involved in our editorial content is the level of care that is appropriate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We must judge this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editorial content and the nature and degree of the children's and young people's involvement, along with other relevant factors including age, sex, gender, maturity, cultural, ethnic and religious background, personal circumstances, previous life experiences and capacity to make judgements about their participation and its likely consequences. We should not assume that every under-18 will respond in the same way when participating in our content.

We must ensure that under-18s are not caused unnecessary distress or anxiety by their involvement in our output. Their involvement must be editorially justified, consents should be obtained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erson and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and content, and support should be given to them where necessary.

9.2 Mandatory Referrals

(Mandatory Referrals are part of the BBC's editorial management system. They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process to ensure compliance and must be observed.)

9.2.1 In the course of our work if we suspect a person under 18 may be at risk, or we are alerted to a child welfare issue, the situation must be referred promptly to the divisional Working with Children Adviser²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o the commissioning editor. If we are concerned about an adult, including a member of staff, working with a child the situation must be referred promptly to the BBC Safeguarding Lead³ or Head of Investigations⁴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o the commissioning editor. (See 9.3.2)

9.2.2 If a child is in immediate danger or requires medical attention dial emergency services, (999 in the UK), and ask for the appropriate emergency service. The BBC Safeguarding Lead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he commissioning editor,

should be informed urgently. (See 9.3.3)

9.2.3 Any online safeguarding concerns, whether related to online grooming or child abuse images, must be referred to the Head of Safeguarding, Policy and Compliance⁵ immediately. (See 9.3.4)

9.2.4 Any proposal not to pre-moderate online spaces directed to under-18s must be referred to

Editorial Policy. (See 9.3.10)

9.2.5 Any proposal to reveal an under-18's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without their consent must be referred to a senior editorial figure,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o the commissioning editor, who should consult Editorial Policy, 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and Information Rights.

9.2.6 Any proposal to continue with the contribution of a child or young person after a refusal of parental consent, or in the absence of it, must be referred to a senior editorial figure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o the commissioning editor. Editorial Policy should also be consulted.

9.3 Guidelines

Safeguarding the Welfar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9.3.1 We should apply the principles of the BBC Child Protection Policy in our dealing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9.3.2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have a right to protection from harm and abuse. In the course of our work if we suspect a person under 18 may be at risk, or we are alerted

to a child welfare issue, the situation must be referred promptly to the divisional Working with Children Adviser⁶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o the commissioning editor. If we are concerned about an adult, including a member of staff, working with a child the situation must be referred promptly to the BBC Safeguarding Lead⁷ or Head of Investigations⁸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o the commissioning editor.

9.3.3 If a child is in immediate danger or requires medical attention dial emergency services, (999 in the UK), and ask for the appropriate emergency service. The BBC Safeguarding Lead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he commissioning editor, should be informed urgently.

9.3.4 Any online safeguarding concerns, whether related to online grooming or child abuse images, must be referred to the Head of Safeguarding, Policy and Compliance⁹ immediately. See Guidance online: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

9.3.5 The information we disclose about children and young people must not put them at risk of harm. If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we should not disclose an under-18's location, we must not do so inadvertently by a jigsaw effect, ie revealing several pieces of information in words or images or voice that can be pieced together to make it easy to identify where the person may be found. Avoiding the jigsaw effect should take account of information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See Section 6 Fairness to Contributors and Consent: 6.3.26–6.3.30

9.3.6 Protect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 is a shared responsibility for the BBC, parents/guardians

and the under-18 concerned. See Guidance online: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

9.3.7 Children and young people have a right to a voice but we must not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online spaces when they are younger than the minimum age requirement of the site.

9.3.8 When children access BBC online services we may first need to obtain parental consent for some activities, such as commenting or voting. There may be additional data protection considerations where we are collecting the personal data of children. For further advice, consult the Data Protection Handbook¹⁰ and take advice from Information Rights.

9.3.9 When online content is likely to appeal to a high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we should offer links to relevant advice to help them understand and minimise the possible risks they face online. Safety information should be prominent, accessible and clear. See Section 17 Competitions, Votes and Interactivity: 17.3.45–17.3.56 See Guidance online: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

9.3.10 Online spaces directed to under-18s should normally be pre-moderated. Any proposal to use any other form of moderation for under-18s must be referred to Editorial Policy who will consider whether the proposed form of moderation would offer an appropriate level of child protection. We should not link to unmoderated spaces for an audience of under-18s.

9.3.11 Personal Information

We should not request more personal information from children and young people than is necessary. We must store and dispose of any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BBC data protection policy¹¹. Any proposal to reveal an under-18's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without their consent must be referred to a senior editorial figure,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o the commissioning editor, who should consult Editorial Policy, 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and Information Rights. Approval will normally only be given:

- for safeguarding and child protection reasons or
- where a public interest¹² outweighs the expectations of privacy or
- where there is a legal requirement to provide the information. See Section 7 Privacy:

7.3.47–7.3.52

For any requests from third parties for release of untransmitted content, see Re-use, Reversioning

and Permanent Availability. See Section 13 Re-use, Reversioning and Permanent Availability Informed Consen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9.3.12 When featuring under-18s in our output we should normally ensure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and we should respect any refusal to take part. Information should be delivered in a way they can understand and should include any likely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other details necessary for obtaining informed consent. See Section 6 Fairness to Contributors and Consent: 6.3.1–6.3.10 and Section 7 Privacy: 7.1

9.3.13 Children may find it difficult to contradict an adult's suggestion to participate so it i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child that it is acceptable to agree or disagree when asked to participate.

9.3.14 Parental Consent

Parental consent means the informed consent of a parent, legal guardian, or other person aged 18 or over acting in loco parentis, including a head teacher. In addition to establishing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of the child or young person, we should normally seek parental consent before interviewing anyone under the age of 16, or otherwise involving them in our output, wherever in the world we are working. An exception may be when giving a chance for under-16s to speak on non-sensitive subjects where it is not controversial for them to hold and express their views and it is not

practicable to get parental consent. However, the younger and/or more vulnerable the child and the more sensitive the subject matter, the more likely it is that parental consent is essential. Parental consent should normally be obtained if children are asked for views on matters likely to be beyond their capacity to answer properly. See Section 6 Fairness to Contributors and Consent: 6.3.1–6.3.10 and Section 9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9.1

9.3.15 We should exercise due care in deciding whether an under-18 is able to indicate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our content. If a young person is 16 or 17 it may still be appropriate to seek parental consent in some cas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young person and the nature of the programme and contribution, including when the content is sensitive or where the contributor could be considered vulnerable. It may also be appropriate to seek parental consent for performers aged 16 and 17 if they are being asked to perform or to be present in scenes featuring potentially harmful or offensive content. Where parental consent is required and parents are estranged or another person or the local authority has parent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or young person we should normally obtain the consent of the parent, person or local authority who the child or young person resides with and who has parental responsibilit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subject matter. We should consider the extent of the other parent's involvement with the under-18 and, where we are not seeking their consent, listen to any reasonable objections they may have.

9.3.16 Any proposal to continue with the contribution of a child or young person after a refusal of parental consent, or in the absence of it, must be referred to a senior editorial figure 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to the commissioning editor. Approval will normally only be given:

- if this is justified in the public interest¹³ or
- when giving the under-18 freedom of expression and
- if it is in their interest to participate. Editorial Policy should also be consulted.

9.3.17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often eager to contribute to our output, but many lack the judgement necessary to assess the longer-term impact it could have on their lives. Parents may also not understand the full implications of their child taking part. We must assess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an under-18 to contribute to our output, irrespective of parental consent or the individual's assent. We must not proceed if to do so would be harmful to their welfare or would otherwise not meet the standards of the Editorial Guidelines. See Section 9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9.3.21-9.3.22

9.3.18 As part of our due care requirements, in some circumstances it may be appropriate to check the individual's social, family, health and educational circumstances and/or to seek advice from an expert on the likely impact of participation on the individual.

9.3.19 When under-18s submit user-generated content or when we ask them fo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we must select the standard of proof of parental consent that is appropriate, taking into account the sensitiv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age of the individual. See Guidance online: Interact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

9.3.20 When we invite children to interact with us using phone, text or other technology that costs money, we must prompt them to seek permission from the bill payer. The Impact of a Contribution

9.3.21 Even when we have secured parental consent we must consider the impact and possible consequences of any content which involves a child or young person, at all stages of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the period after transmission and any availability online, and must put appropriate measures in place where necessary. This applies both when we have approached the under-18 to contribute and when they have

approached us, including with user-generated content. We should consider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social media on the under-18s and advise them and their parents/guardians accordingly. Procedures, risk assessments and contingencies for the impact of participating on an individual's emotional and mental well-being and welfare may be appropriate in some circumstances. It may also be appropriate for records of these and other documents, including details of checks, correspondence and concerns to be kept as long as they are relevant. In some circumstances it may be appropriate throughout the production to retain an expert whose advice has been sought prior to participation, as part of our due care requirements. In scripted outpu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editorial content, it may be appropriate to create a redacted script for a child or young person, and for them not to be present at read-throughs and on set during the recording of material that would be inappropriate for them to see or hear. See Guidance online: Work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9.3.22 We normally aim to work with children in the presence of those responsible for their supervision, although circumstances may vary. When sensitive issues are being discussed with an under-18, it is often advisable to have someone there who is familiar to them and who can help safeguard their interests. It may be appropriate for other expert support to be available for them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9.3.23 Children and young people should be given a voice but we must also be alert to occasions when they exaggerate, try to please or report gossip or hearsay as fact. Criminal or anti-social behaviour should not go unchallenged. See Section 8 Report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8.3.14-8.3.20

9.3.24 When considering whether or not to identify under-18s involved in anti-social or criminal behaviour, we should weigh up the consequences of identification, their age, and the seriousness of their behaviour against the public interest¹⁴ in identification and our

freedom of speech. Programme Legal Advice should normally be consulted. However, we should not normally identify under-18s when featuring such behaviour to illustrate a practice. See Section 8 Report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8.3.31–8.3.32 and Section 6 Fairness to Contributors and Consent: 6.3.3 There may also be legal reasons for not identifying an under-18, including someone involved in court proceedings. See Section 8 Report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8.3.13 and Section 18 The Law: 18.4.3 Under-18s whose parents are engaged in anti-social or criminal activity should only be identified if the welfare of the child will not be harmed and if it is editorially justified. See Section 7 Privacy: 7.3.35–7.3.38 Licensing of Child Performers

9.3.25 In law, performances by under-16s (and some 16-year-olds still in full-time education) should normally be licensed by the relevant local authority in England, Scotland or Wales or by the relevant education authority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ly, local laws should normally be complied with. Children taking part in a performance must also, at all times during the engagement, be in the care of a chaperone. BBC Child Protection Policy is that professional licensed chaperones must be used whenever possible. Advice is available from 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JMAA 「연소자·아동의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ガイドライン主旨

「年少者・児童の出演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は子供モデル・タレントの需要の増加と低年齢化に対応して、子供たちの保護と健全に育むマネジメントを目的に作成しております。

肖像財産権（パブリシティ権）についての理解と企業間の取引におけるルール、注意点をまとめた「ガイドライン」と同様、マネジメントや制作に関わる皆様方の共通認識としてください。

子役は、映画・テレビ・伝統芸能など、メディア・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に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存在であり、多くの子供たちが将来を夢見て演技やダンスなどのレッスンに励んでいます。

乳幼児、小学生はもちろんですが、意思決定能力が十分に備わっているものと考えがちな中高生であっても、未成年者であることと社会経験の乏しい子供であるということを念頭に置いて下さい。また、子供たちには成長の過程でタレントやモデル以外の道も選択肢に加わります。幼くして活躍し脚光を浴びた子供でも、普通の社会生活が送れるよう義務教育を受け進学できるように育むことが大人達の責務であると考えます。

アイドルの低年齢化、子供タレントの活躍によりタレントやモデルを目指す子供たちのすそ野は広がっています。社会の関心も高いことから、ひとたび、子供の出演者が事故や事件に巻き込まれた場合には、使用者や養成機関、マネジメント会社が様々な角度から責任を問われることが想定されます。

当協会は、企業として、大人として、法律や条令に反することなく子供たちの夢の実現をサポートし、健全に育むことをマネジメントの基本姿勢としていただくよう関係各位にお願いいたします。

※ 本ガイドラインの他、出演者の所属する事務所の規約に従ってください。

広告出演等

安全管理

- ◎ 乳幼児・児童（特に12歳未満）は、原則オーディション・現場に保護者が付き添います。出演者本人はもとより付き添う者も含め、現場での安全管理に配慮してください。
- ◎ 現場の状況に応じて、付き添う者も傷害保険等の補償対象としてください。
- ◎ オーディションや撮影においては、保護者等による送迎、食事時間及び睡眠時間の確保に配慮ください。

乳幼児（0歳から小学校入学前まで）

- ◎ 生後1年に満たない乳児の場合は、移動・待機・撮影や収録などの本番に要する時間が身体の負担にならないようにし、帯同する保護者の体調にも配慮してください。
- ◎ 乳幼児は、日常の生活パターンを考慮した香盤スケジュールにさせていただき、必要に応じて、仮眠（お昼寝）や休憩ができる控室を準備してください。

児童（0歳から中学生）

- ◎ 義務教育の過程にある児童（小学生・中学生）は修学を優先してください。
- ◎ 特別な事情により早朝、夜間に撮影等をする場合は、修学に支障をきたすことのない曜日にしてください。
- ◎ 猥褻なイメージを喚起する撮影設定の映像、画像への出演をお断りする場合があります。映画、ドラマの演技シーンについては制作会社、出演者所属事務所双方が慎重に協議の上決定してください。
- ◎ 児童の健全育成のため、公序良俗に反する表現（暴力・性描写・いじめ・差別・飲酒・喫煙など）がある出演はお断りする場合がございます。映画・ドラマの演出上必要な場合は、心身の負担にならないように特段の配慮をお願いいたします。

出演条件への配慮

① 高速時間について

- ◎ ロケ地への移動、待機・休憩・本番を総合し、拘束時間に配慮してください。
- ◎ 撮影や収録現場における拘束時間は、年齢と個々の耐久力（身体的・精神的）を考慮し、下記の時間を参考にスケジュールを作成してください。

乳児（1歳未満） 2時間程度

幼児（6歳未満） 3時間程度

児童（小学校低学年） 4時間程度

児童（小学生高学年～中学生） 6時間程度

◎ 義務教育中の児童については修学時間を優先してください。

② 時間帯について

◎ 撮影や収録現場の集合（開始）時刻は7：00以降、解散（終了）時刻は20：00以前を原則としてください。やむをえない事情により上記時間外の集合時刻、終了時刻となる場合、交通手段等の手配、宿泊の手配、またその実費の請求を申し受けます。

* 集合（開始）時刻は、出演者の交通機関の所要時間を考慮してください。

③ 待機場所の環境について

◎ 撮影や収録現場、舞台出演現場の子どもたちが待機する控室等は健全な環境（喫煙場所、騒音、危険を伴う機材等の近くは避けてください）に配慮してください。

長期・複数回に渡る出演

演劇、映画等の長期・複数回に渡る出演等については、労働基準法上の許可が必要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その場合、制作会社、興行等の運営会社など現場担当会社が使用者として、許可の申請をする必要が生じる可能性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個人情報の保護

◎ 緊急時用の取得した年少者やその保護者の個人情報は目的外で使用されないよう管理してください。

2019年7月1日改訂

● 저 자 소 개 ●

윤 성 옥

-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 광운대 신문방송학 박사
- 현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권 영 성

- 캘리포니아주립대 라디오, TV, 영화학과 졸업
- Academy of Art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 영 희

- 덕성여대 사회학과 졸업
- 경희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송 종 현

-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사
- 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천 명 재

-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학사
- 일본 조치대 신문학전공 석사
- 일본 조치대 신문학전공 박사
-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책임

최 은 경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영국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V Journalism 석사
- 영국 Loughborough University,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박사
- 현 전남과학대학교 이스포츠과 미디어 전공 교수

방통용합정책연구 KCC-2020-23

이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2020년 12월 31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